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 | |
|----------|-----|
| 의안 번호 | 378 |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 1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 2023년도 예산안 개요¹⁾

1. 예산안 편성방향

-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언론보도('22.11. 1)를 통하여 '2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3대 투자 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예산안은 ①약자와의 동행(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원), ②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원), ③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원)에 집중하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의 '23년도 예산안은 47조 2,052억 2,700만원이나 중복계상 되는 회계간 전·출입(5조 7,145억 400만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41조 4,907억 2,400만원이며
 - 순계예산중 자치구 지원(6조 7,735억 4,600만원), 교육청 지원(3조 9,660억 6,000만원), 채무상환(1조 2,386억 3,800만원), 기금전출금(2,881억 9400만원), 반환금(4,369억 2,600만원)을 제외한 실질행규모는 28조 7,873억 5,900만원임

 - 실질행규모중 ①사회복지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2차례의 추경을 통해 증액된 '22년도 최종예산(15조 8,338억원)보다 1.4%(2,237억원) 증가한 16조 575억원, ②도로·교통분야는 '22년도 최종예산(3조 1,900억원)보다 △19.1%(△6,090억원) 감소한 2조 5,809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③환경분야는 '22년도 최종예산(2조 3,004억원)보다 △5.1%(△1,179억원) 감소한 2조 1,825억원을 편성요청하였고, ④도시안전 분야는 '22년도 최종예산(1조 5,329억)보다 11.7% 증가한 1조 7,126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2. 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시의 '23년도 예산안은 47조 2,052억 2,700만원이나 금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할 경우에는 △9.6%, △5조 180억 9,600만원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 기금운용계획안은 4조 9,759억 8,3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최종운용계획(3조 5,020억 6,100만원)보다 42.1%, 1조 4,739억 2,100만원 증액계획 하여 제출한 것임

〈표 1-1〉 2023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백만원, %)

| 구 | 분 | 2023년도 (예산안) | 2022년도 (최종예산) | 증 | 감 | 증 | 감 | 률 |
|---|------|-----------------|------------------|------------|---|---|---|-------|
| | 예산 | 47,205,227 | 52,223,324 | △5,018,096 | | | | △9.6 |
| | 일반회계 | 33,524,517 | 37,987,877 | △4,463,360 | | | | △11.7 |
| | 특별회계 | 13,680,710 | 14,235,447 | △554,736 | | | | △3.9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도 예산(안)」 p.13

| 구 | 분 | 2023년도 (계획안) | 2022년도 (최종계획) | 증 | 감 | 증 | 감 | 률 |
|---|--------------------|-----------------|------------------|-----------|---|---|---|------|
| 기 | 금 (17개 기금 25계정) | 4,975,983 | 3,502,061 | 1,473,921 | | | | 42.1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예산안 개요

(1) 2023년도 예산안 규모

- '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47조 2,052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일반회계는 33조 5,245억 1,700만원,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13조 6,807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음

〈표 1-2〉 2023년도 예산안 회계별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 분 | 2023년도 (예산안) | 2022년도 (최종예산) | 증 감 | 증 감 륜 |
|---|-----------------|-----------------|------------------|------------|-------|
| 계 | | 47,205,227 | 52,223,324 | △5,018,096 | △9.6 |
| 일 | 반 회 계 | 33,524,517 | 37,987,877 | △4,463,360 | △11.7 |
| 특 | 별 회 계 | 13,680,710 | 14,235,447 | △554,736 | △3.9 |
|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1,816,400 | 1,754,767 | 61,632 | 3.5 |
| |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 930,000 | 817,380 | 112,619 | 13.8 |
|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886,400 | 937,386 | △50,986 | △5.4 |
| | 기 타 특 별 회 계 | 11,864,310 | 12,480,679 | △616,369 | △4.9 |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1,972,025 | 2,145,323 | △173,298 | △8.1 |
| |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 1,651,619 | 2,207,225 | △555,605 | △25.2 |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305,764 | 265,501 | 40,263 | 15.2 |
| |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 2,979,377 | 2,982,493 | △3,116 | △0.1 |
|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 1,833,727 | 1,956,554 | △122,827 | △6.3 |
| |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 168,548 | 162,616 | 5,932 | 3.6 |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29,386 | 29,214 | 172 | 0.6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1,912,895 | 1,752,274 | 160,620 | 9.2 |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35,791 | 33,704 | 2,087 | 6.2 |
| | 소 방 특 별 회 계 | 975,173 | 945,771 | 29,402 | 3.1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도 예산(안)」 p.13

(2)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조 5,245억 1,7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37조 9,878억 7,700만원)보다 △11.7%, △4조 4,633억 6,0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임
- **지방세 수입**은 24조 8,817억 8,4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23조 955억 7400만원)보다 7.7%, 1조 7,862억 1,0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하고, **세외수입**은 1조 2,997억 9,7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1조 8,882억 7,100만원)보다 △31.2%, △5,884억 7,300만원 감액 편성요청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22년도 최종예산(2,636억 1,100만원)보다 △23.4%, △617억 8,200만원이 감액된 2,018억 2,800만원으로 편성요청하였고, **보조금**은 6조 3,307억 4,7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6조 4,611억 6,800만원)보다 △2.0%, △1,304억 2,100만원 감액 편성요청한 것이며 **지방채**의 경우, '23년도에도 발행계획이 없어 세입예산에 편성요청 하지 않음

〈표 1-3〉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3년도 (예산안) | 2022년도 (최종예산) | 증 감 | 증 감 률 |
|----------------|-----------------|------------------|------------|-------|
| 총 계 | 33,524,517 | 37,987,877 | △4,463,360 | △11.7 |
| 지방세 수입 | 24,881,784 | 23,095,574 | 1,786,210 | 7.7 |
| 세외수입 | 1,299,797 | 1,888,271 | △588,473 | △31.2 |
| 지방교부세 | 201,828 | 263,611 | △61,782 | △23.4 |
| 보조금 | 6,330,747 | 6,461,168 | △130,421 | △2.0 |
| 지방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810,359 | 6,279,251 | △5,468,892 | △87.1 |

2) 특별회계

-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10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은 '22년도 최종예산(14조 2,354억 4,700만원)보다 △3.9%, △5,547억 3,600만원 감액된 13조 6,807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세외수입**은 2조 9,209억 9,5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2조 6,447억 5,000만원)보다 10.4%, 2,762억 4,500만원 증액 편성요청 되었음
- **보조금**은 2조 985억 8,4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2조 2,934억 2,800만원)보다 △8.5%, △1,948억 4,4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이며
- **지방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1조 2,772억 5,200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850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3,95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357억 9,600만원)에서 각각 지방채를 발행하여 '22년도 최종예산(1조 5,069억 4,900만원)보다 19.0%, 2,860억 9,900만원 증액 편성된 1조 7,930억 4,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조 8,680억 8,4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7조 7,889억 4,000만원)보다 △11.8%, 9,208억 5,6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1-4〉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 분 | 2023년도 (예산안) | 2022년도 (최종예산) | 증 감 | 증 감 률 |
|---|---------------|-----------------|------------------|----------|--------|
| 총 | 계 | 13,680,710 | 14,235,447 | △554,736 | △3.9 |
| | 세 외 수 입 | 2,920,995 | 2,644,750 | 276,245 | 10.4 |
| | 보 조 금 | 2,098,584 | 2,293,428 | △194,844 | △8.5 |
| | 지 방 채 | 1,793,048 | 1,506,949 | 286,099 | 19.0 |
| | 지 방 교 부 세 | 0 | 1,380 | △1,380 | △100.0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6,868,084 | 7,788,940 | △920,856 | △11.8 |

(3) 세출예산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 '23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47조 2,052억 2,700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22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11.7\%$, $\Delta 4$ 조 4,633억 6,100만원 감액된 33조 5,245억 1,7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 특별회계는 '22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3.9\%$, $\Delta 5,547$ 억 3,600만원 감액된 13조 6,807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음

○ 회계간 전출입은 5조 7,145억 400만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조 6,678억 9,900만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64억 500만원 전출되며,

○ **법정의무경비**는 12조 7,033억 6,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자치구 지원은 6조 7,735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6조 7,254억 5,800만원과 특별회계 480억 8,800만원,
- 교육청 지원 3조 9,660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조 9,640억 7,200만원과 특별회계 19억 8,800만원,
- 채무상환 1조 2,386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9억 8,600만원과 특별회계 1조 2,126억 5,200만원,
- 반환금 등 4,369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35억 5,100만원과 특별회계 233억 7,500만원,
- 기금전출금 2,881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881억 9,400만원 전액을 편성한 것임

○ 회계간 전·출입과 타기관 지원 및 채무상환을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7,873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조 4,393억 5,600만원, 특별회계 12조 3,480억 300만원임

〈표 1-5〉 2023년도 총계·순계·실집행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3년도 (예산안) | 2022년도 (최종예산) | 증 감 | 증 감 륜 |
|---------|-----------------|------------------|------------|-------|
| 총 계 규 모 | 47,205,227 | 52,223,324 | △5,018,096 | △9.6 |
| 일 반 회 계 | 33,524,517 | 37,987,878 | △4,463,361 | △11.7 |
| 특 별 회 계 | 13,680,710 | 14,235,447 | △554,736 | △3.9 |

회 계 간
전 출·입
차 감

회 계 간 전 출·입 : 5조 7,145억 400만원 (기금전출 제외)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5조 6,678억 9,900만원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464억 500만원

| | | | | |
|---------|------------|------------|------------|-------|
| 순 계 규 모 | 41,490,724 | 46,120,798 | △4,630,074 | △10.0 |
| 일 반 회 계 | 27,856,618 | 31,928,856 | △4,072,238 | △12.8 |
| 특 별 회 계 | 13,634,106 | 14,191,942 | △557,836 | △3.9 |

법 의 경 차
정 무 비 감

법 정 의 무 경 비 : 12조 7,033억 6,500만원
 일 반 회 계 11조 4,172억 6,200만원 특 별 회 계 1조 2,861억 300만원
 - 자치구 지원 6조 7,254억 5,800만원 -자치구 지원 480억 8,800만원
 - 교육청 지원 3조 9,640억 7,200만원 교육청 지원 19억 8,800만원
 - 채 무 상 환 259억 8,600만원 -채 무 상 환 1조 2,126억 5,200만원
 - 기금전출금 2,881억 9,400만원 -기 금 전 출 금 - -
 - 반 환 금 등 4,135억 5,100만원 -반 환 금 등 233억 7,500만원

| | | | | |
|-----------|------------|------------|----------|------|
| 실 집 행 규 모 | 28,787,359 | 29,747,690 | △960,331 | △3.2 |
| 일 반 회 계 | 16,439,356 | 17,032,576 | △593,220 | △3.5 |
| 특 별 회 계 | 12,348,003 | 12,715,114 | △367,111 | △2.9 |

2) 성질별 자원 배분

- '23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47조 2,052억 2,700만원)중 회계간 전출입 5조 7,145억 400만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41조 4,907억 2,400만원임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교육청, 자치구 지원 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25조 8,589억 1,900만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26조 3,907억 5,300만원) 대비 △2.0%, △5,318억 3,4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임
 - 부문별 사업비 자원배분은 사회복지 16조 575억 4,400만원(34.0%), 도로·교통 2조 5,809억 5,800만원(5.5%), 환경 2조 1,825억 1,500만원(4.6%), 도시안전 1조 7,126억 4,100만원(3.6%), 산업경제 9,708억 9,200만원(2.1%), 문화관광 8,102억 9,300만원(1.7%),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3,592억 6,500만원(0.8%) 등임

 - 법정 의무경비는 12조 7,033억 6,500만원으로 자치구 지원 6조 7,735억 4,600만원, 교육청 지원 3조 9,660억 6,000만원, 채무상환 1조 2,386억 3,800만원, 반환금 등 4,369억 2,600만원, 기금전출금 2,881억 9,4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제출된 것임

〈표 1-6〉 총계기준 2023년도 예산안(부문별)

(단위 : 백만원, %)

| 구 | 분 | 2023년도 (본예산) | | 2022년도 (최종예산) | | 증 | 감 | 증 감 륜 |
|-------------------|---|-----------------|-------|------------------|-------|------------|---|-------|
| | | 예산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 | |
| 계 | | 47,205,227 | 100.0 | 52,223,324 | 100.0 | △5,018,096 | | △9.6 |
| 행정 운영 경비 | | 2,126,892 | 4.5 | 2,015,664 | 3.9 | 111,228 | | 5.5 |
| 재무 활동 | | 8,479,854 | 18.0 | 11,386,851 | 21.8 | △2,906,997 | | △25.5 |
| 교육 청 지원 | | 6,773,547 | 14.3 | 7,741,100 | 14.8 | △967,553 | | △12.5 |
| 자치 구 지원 | | 3,966,016 | 8.4 | 4,688,957 | 9.0 | △722,941 | | △15.4 |
| 사업 비 | | 25,858,919 | 54.8 | 26,390,753 | 50.5 | △531,834 | | △2.0 |
| 사회 복지 | | 16,057,544 | 34.0 | 15,833,821 | 30.3 | 223,723 | | 1.4 |
| 환경 | | 2,182,515 | 4.6 | 2,300,417 | 4.4 | △117,902 | | △5.1 |
| 도로 · 교통 | | 2,580,958 | 5.5 | 3,190,024 | 6.1 | △609,066 | | △19.1 |
| 도시 계획 및 주택 정 비 | | 359,265 | 0.8 | 428,649 | 0.8 | △69,384 | | △16.2 |
| 산업 경제 | | 970,892 | 2.1 | 1,097,770 | 2.1 | △126,878 | | △11.6 |
| 도시 안전 | | 1,712,641 | 3.6 | 1,532,905 | 2.9 | 179,736 | | 11.7 |
| 문화 관광 | | 810,293 | 1.7 | 839,360 | 1.6 | △29,067 | | △3.5 |
| 일반 행정 | | 1,000,072 | 2.1 | 999,003 | 1.9 | 1,069 | | 0.1 |
| 예비비 | | 184,739 | 0.4 | 168,804 | 0.3 | 15,935 | | 9.4 |

〈표 1-7〉 총계기준 2023년도 예산안(성질별)

(단위 : 백만원, %)

| 구 | 분 | 2023년도 (본예산) | | 2022년도 (최종예산) | | 증 | 감 | 증 감 률 |
|---|----------|-----------------|-------|------------------|-------|------------|---|--------|
| | | 예산안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 | |
| 총 | 계 | 47,205,227 | 100 | 52,223,324 | 100 | △5,018,096 | | △9.6 |
| | 인 건 비 | 1,680,182 | 3.56% | 1,637,671 | 3.14% | 42,510 | | 2.6 |
| | 물 건 비 | 1,515,913 | 3.21 | 1,450,933 | 2.78 | 64,980 | | 4.4 |
| | 경 상 이 전 | 24,771,793 | 52.4 | 26,252,546 | 50.2 | △1,480,752 | | △5.64 |
| | 자 본 지 출 | 6,099,787 | 12.9 | 6,193,848 | 11.8 | △94,061 | | △1.5 |
| | 용자 및 출자 | 663,249 | 1.4 | 572,825 | 1.1 | 90,424 | | 15.79 |
| | 보 전 재 원 | 1,031,453 | 2.19 | 1,058,308 | 2.0 | △26,854 | | △2.5 |
| | 내 부 거 래 | 11,165,586 | 23.6 | 14,730,032 | 28.2 | △3,564,446 | | △24.2 |
| | 예비비 및 기타 | 277,259 | 0.59 | 327,157 | 0.63 | △49,897 | | △15.25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년도 예산(안)」 p.21~22

4.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서울시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관련 법령 및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17개 기금, 25개 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 서울시가 '23년도에 운용할 17개 기금(25개정)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4조 9,759억 8,300만원으로 '22년도(3조 5,020억 6,100만원)보다 42.1%, 1조 4,739억 2,100만원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1-8〉 2023년도 기금운용(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도(안) | 2022년도 ^{주1)} | 증감 | 증감률 |
|--------------------|-----------|-----------------------|-----------|------|
| 17개 기금 (25개 계정) | 4,975,983 | 3,502,061 | 1,473,921 | 42.1 |

주1) 당초계획 기준

- 17개 기금의 '23년도말 조성액은 6조 7,138억 600만원으로 계획된 바, '22년도말 조성액(6조 6,654억 800만원)보다 0.7%, 483억 9,700만원 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표 1-9〉 2023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 기금명 | 2022년도말 조성액 (A) | 2023년도 | | 2023년도말 조성액 (B) | 증 감 (C=B-A) | 증감률 (D=C/A) |
|------------------------|-----------------------|-----------|-----------|-----------------------|----------------|----------------|
| | | 수 입 | 지 출 | | | |
| 합 계 | 6,665,408 | 2,138,320 | 2,089,922 | 6,713,806 | 48,397 | 0.7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5,717,589 | 1,308,875 | 1,356,720 | 5,669,745 | △47,844 | △0.8 |
| 통합계정 | 3,479,015 | 1,222,328 | 132,920 | 4,568,423 | 1,089,408 | 31.3 |
| 재정안정화계정 | 2,238,574 | 86,547 | 1,223,800 | 1,101,322 | △1,137,252 | △50.8 |
| 중소기업육성기금 | 115,953 | 343,680 | 376,025 | 83,607 | △32,345 | △27.9 |
| 음자계정 | 70,767 | 301,880 | 316,860 | 55,787 | △14,980 | △21.2 |
| 투자계정 | 45,186 | 41,800 | 59,165 | 27,820 | △17,365 | △38.4 |
| 식품진흥기금 | 42,674 | 3,734 | 4,073 | 42,335 | 338 | 0.8 |
| 기후변화기금 | 81,910 | 12,683 | 22,846 | 71,747 | △10,162 | △12.4 |
| 사회투자기금 | 24,722 | 12,110 | 5,480 | 31,352 | 6,630 | 26.8 |
| 도로굴착복구기금 | 17,311 | 35,440 | 33,951 | 18,800 | 1,489 | 8.6 |
| 성평등기금 | 23,576 | 1,096 | 1,000 | 23,673 | 96 | 0.4 |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 11,363 | 30,460 | 27,143 | 14,680 | 3,317 | 29.2 |
| 사회복지기금 | 43,805 | 41,932 | 46,024 | 39,712 | 877 | 2.0 |
| 노인복지계정 | 12,367 | 861 | 308 | 12,920 | 552 | 4.5 |
| 장애인복지계정 | 20,983 | 3,153 | 7,441 | 16,695 | △4,287 | △20.4 |
| 자활계정 | 8,259 | 1,201 | 875 | 8,584 | 325 | 3.9 |
| 주거지원계정 | 2,196 | 36,717 | 37,400 | 1,513 | △682 | △31.1 |
| 체육진흥기금 | 54,243 | 10,257 | 10,334 | 54,167 | △76 | △0.1 |
| 재난관리기금 | 392,139 | 271,138 | 177,535 | 48,5741 | 93,602 | 23.9 |
| 재난계정 | 351,884 | 213,342 | 120,910 | 444,316 | 92,432 | 26.3 |
| 구호계정 | 40,255 | 57,796 | 56,625 | 41,425 | 1,170 | 2.9 |
| 남북교류협력기금 | 25,639 | 498 | 3,478 | 22,659 | △2,979 | △11.6 |
| 대외협력기금 | 7,524 | 2,651 | 4,680 | 5,494 | △2,028 | △27.0 |
| 국내협력계정 | 2,995 | 1,060 | 2,972 | 1,082 | △1,912 | △63.8 |
| 국제협력계정 | 4,529 | 1,591 | 1,708 | 4,412 | △116 | △2.6 |
| 도시재생기금 | 44,952 | 22,934 | 1,006 | 66,881 | 21,928 | 48.8 |
| 관광진흥기금 | 5,653 | 2,272 | 1,614 | 6,311 | 658 | 11.6 |
|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 519 | 2,020 | 1,614 | 925 | 406 | 78.2 |
| 서울관광플라자계정 | 5,134 | 252 | 0 | 5,386 | 252 | 4.9 |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 6,699 | 18,550 | 18,007 | 7,242 | 543 | 8.1 |
| 하수도사업회전기금 | 49,646 | 20,000 | 0 | 69,646 | 20,000 | 40.3 |

※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10~12를 재구성

Ⅱ .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인바, 예산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됨
- '23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제3조 채무부담행위 관련 사항, 제4조 공채 발행 및 차입금 관련 사항, 제5조 명시이월 사업 관련 사항, 제6조 계속비 사업 관련 사항,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관련 사항, 제8조 예산의 이용에 대한 사항, 제9조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예산총칙중 **일시차입한도**는 '22년도와 동일한 6,000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 일시차입금은 관련 법령에 대한 예외로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된 사례는 없음
 - '23년도 회계별 일시차입한도는 6,000억원으로 일반회계 5,000억원, 특별회계 1,000억원을 설정한 것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일시차입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제출하였음

○ **채무부담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제도로써 예산편성시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융통하는 보조적 수단임

- 다만, 상환액은 상환계획연도의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장래의 예산편성 시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나 '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는 채무부담행위를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됨

○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3년도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특별회계는 ①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2,772억 5,200만원, ②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50억원, ③주택사업특별회계 3,950억원, ④도시개발특별회계 357억 9,600만원을 편성한 바, 총 1조 7,930억 4,800만원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22년도 최종예산(1조 5,069억 4,900만원)보다 19.0%, 2,860억 9,9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발행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연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지난 7월, '23년도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을 1조 7,022억 1,300만원으로 산정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한도액(9,972억 5,200만원)은 ①도시철도공채 발행액(7,772억 5,200만원)과 ②'23년 차환채 발행액(2,200억원)이 해당되는 바,

- '23년도 지방채 발행 총 한도는 기본한도액(1조 7,022억 1,300만원)과 별도한도액(9,972억 5,200만원)을 합한 2조 6,994억 6,500만원이며 예산총칙 중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1조 7,930억 4,800만원으로 총 한도액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 2023년도 지방채 편성액 및 발행한도액 관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 | 분 | 지 방 채 |
|--------------------------------|---------------------------|-------|----------------|
| 지 방 채 발행규모 | 총 발행규모 | | ① 1,793,048 |
| | 일 | 반 회 계 | - |
| | 특 | 별 회 계 | 1,793,048 |
| | 기 | 금 | - |
| 지 방 채 발 행 한 도 액 | 총 한도액 | | ② 2,699,465 |
| | 기 본 한 도 액 | | 1,702,213 |
| | 별 도 한 도 액 | | 997,252 |
| | 지 역 개 발 채 권 발 행 액 | | - |
| | 도 시 철 도 공 채 발 행 액 | | 777,252 |
| | ' 2 3 년 차 환 채 발 행 액 | | 220,000 |
| | 지 역 일 자 리 사 업 (투 자 사 업) | | - |
| |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 | - |
| 한도초과 발행액 | | | ③=①-② △904,417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8171 ('22.11. 4) 일부 재구성

○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고,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33조 5,245억원)의 0.41%, 1,393억원, 목적예비비는 200억원을 편성하여 예산총칙에 명시한 바,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규모는 1,593억원임
- '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2년도 본예산(1,508억원) 대비 5.6%, 85억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된 '22년 1~3분기까지의 예비비 지출액(229억 9,400만원) 등을 고려할 때 '23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적정규모로 사료됨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제도로써 최근 수년간 예산의 이용이 실제 발생된 사례는 없음

- '23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8조에 명시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 3개 사유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음으로써 해당 사유 발생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1) 세입예산의 특징

- '23년도 예산안은 '22년도 최종예산(52조 2,233억 2,400만원)보다 △ 9.6%, △5조 180억 9,600만원 감액된 47조 2,052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22년도 최종예산(37조 9,878억 7,700만원)보다 △11.7%, △4조 4,633억 6,000만원이 감액된 33조 5,245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2년도 최종예산(14조 2,354억 4,700만원)보다 △3.9%, △5,547억 3,600만원이 감액된 13조 6,807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2〉 2023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3년도 (예산안) | 2022년도 (최종예산) | 증 감 | 증 감 륜 |
|---------|-----------------|------------------|------------|-------|
| 합 계 | 47,205,227 | 52,223,324 | △5,018,096 | △9.6 |
| 일 반 회 계 | 33,524,517 | 37,987,877 | △4,463,360 | △11.7 |
| 특 별 회 계 | 13,680,710 | 14,235,447 | △554,736 | △3.9 |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p.13

- 세입예산은 세출수요증가, 물가의 자연상승 등의 요인으로 매년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나 지난 '21년도에 이어 '22년도의 경우에도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두 번의 추경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6조 4,428억 4,500만원)이 초과 발생되어 회계연도중 이를 세입예산에 경정한 바 있어 당초예산보다 최종예산 규모가 확대된 특수성이 있어 '23년도 편성규모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

(2) 세입 예산과목에 대한 검토

□ '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33조 5,245억 1,7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37조 9,878억 7,700만원)보다 △11.7%, △4조 4,633억 6,0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임

〈표 2-3〉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도 (예산안) | 2022년도 (최종예산) | 증 감 | 증 감 륜 |
|---------------|-----------------|------------------|------------|-------|
| 총 계 | 33,524,517 | 37,987,877 | △4,463,360 | △11.7 |
| 지방세수입 | 24,881,784 | 23,095,574 | 1,786,210 | 7.7 |
| 보통세 | 22,519,132 | 20,708,171 | 1,810,961 | 8.7 |
| 취득세 | 5,221,862 | 6,204,612 | △982,750 | △15.8 |
| 주민세 | 672,385 | 616,633 | 55,752 | 9.0 |
| 재산세 | 4,163,279 | 3,827,592 | 335,687 | 8.8 |
| 자동차세 | 1,052,439 | 1,216,532 | △164,093 | △13.5 |
| 레저세 | 106,133 | 29,891 | 76,242 | 255.1 |
| 담배소비세 | 582,205 | 571,531 | 10,674 | 1.9 |
| 지방소비세 | 2,786,892 | 2,189,240 | 597,652 | 27.3 |
| 지방소득세 | 7,933,937 | 6,052,140 | 1,881,797 | 31.1 |
| 목적세 | 2,148,952 | 2,177,403 | △28,451 | △1.3 |
| 지역자원시설세 | 334,004 | 309,683 | 24,321 | 7.9 |
| 지방교육세 | 1,814,948 | 1,867,720 | △52,772 | △2.8 |
| 지난년도수입 | 213,700 | 210,000 | 3,700 | 1.8 |
| 세외수입 | 1,299,797 | 1,888,271 | △588,474 | △31.2 |
| 경상적세외수입 | 843,884 | 1,423,889 | △580,005 | △40.7 |
| 재산임대수입 | 166,384 | 154,234 | 12,150 | 7.9 |
| 사용료수입 | 152,012 | 142,832 | 9,180 | 6.4 |
| 수수료수입 | 38,799 | 44,616 | △5,817 | △13.0 |
| 사업수입 | 352,546 | 949,551 | △597,005 | △62.9 |
| 징수교부금수입 | 11,394 | 11,383 | 11 | 0.1 |
| 이자수입 | 122,746 | 121,271 | 1,475 | 1.2 |
| 임시적세외수입 | 448,277 | 456,496 | △8,219 | △1.8 |
| 재산매각수입 | 32,227 | 52,835 | △20,608 | △39.0 |
| 자치단체간부담금 | 13,770 | 14,599 | △829 | △5.7 |
| 보조금반환수입 | 224,406 | 178,922 | 45,484 | 25.4 |
| 기타수입 | 147,374 | 180,852 | △33,478 | △18.5 |
| 지난연도수입 | 30,498 | 29,288 | 1,210 | 4.1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7,635 | 7,884 | △249 | △3.2 |
| 과징금 | 691 | 317 | 374 | 118.0 |
| 변상금 | 4,458 | 3,371 | 1,087 | 32.2 |
| 과태료 | 2,361 | 4,062 | △1,701 | △41.9 |
| 부담금 | 124 | 133 | △9 | △6.8 |
| 지방교부세 | 201,828 | 263,611 | △61,783 | △23.4 |
| 보통교부세 | 172,604 | 220,579 | △47,975 | △21.7 |
| 특별교부세 | - | - | - | - |
| 소방안전교부세 | 29,224 | 32,181 | △2,957 | △9.2 |
| 보조금 | 6,330,747 | 6,461,168 | △130,421 | △2.0 |
| 지방내부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810,359 | 6,279,251 | △5,468,892 | △87.1 |
| 보전수입 등 | 57,802 | 5,958,127 | △5,900,325 | △99.0 |
| 내부거래 | 752,556 | 321,124 | 431,432 | 134.4 |

-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경우, '22년도 최종예산(23조 955억 7,400만원)보다 7.7%, 1조 7,862억 1,000만원 증액된 24조 8,817억 8,400만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22년도 최종예산(1조 8,882억 7,100만원)보다 △31.2%, 5,884억 7,400만원 감액된 1조 2,99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22년도 최종예산(2,636억 1,100만원)보다 △23.4%, △617억 8,300만원 감액된 2,018억 2,800만원, **보조금**은 '22년도 최종예산(6조 4,611억 6,800만원)보다 △2.0%, △1,304억 2,100만원 감액된 6조 3,30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채**의 경우, '23년도에도 일반회계중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지 않음에 따라 '22년도 최종예산과 동일하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년도 최종예산(6조 2,792억 5,100만원)보다 △87.1%, △5조 4,688억 9,200만원 감액된 8,103억 5,9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제출함

1)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편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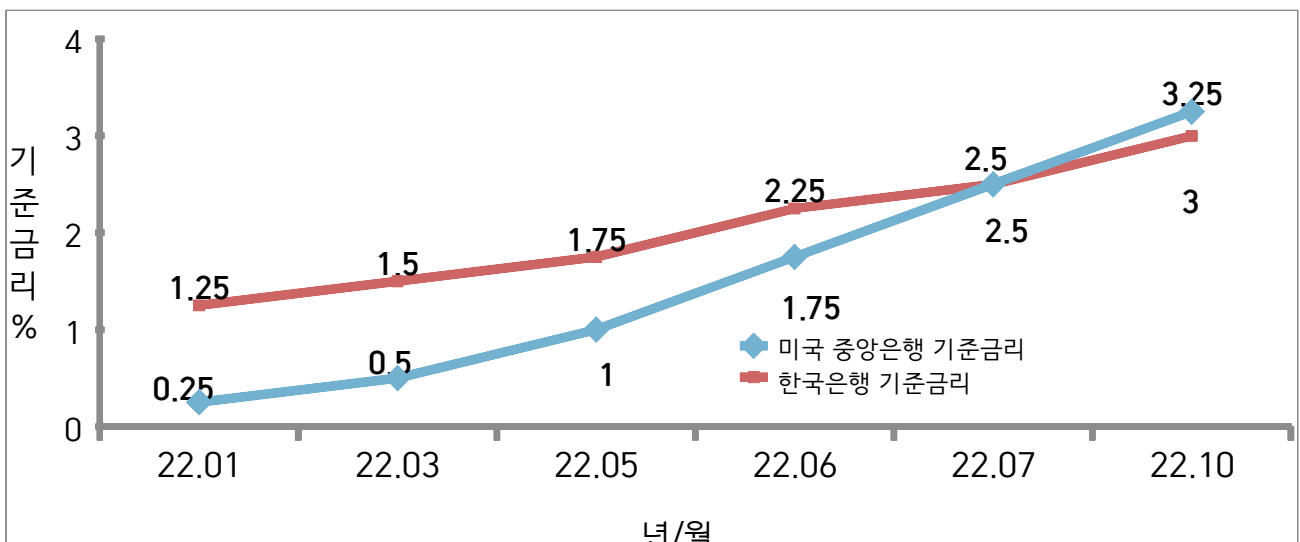
- 세입재원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지방세 수입**의 세입예산액은 '22년도 최종예산(23조 955억 7400만원)보다 7.7%, 1조 7,862억 1,000만원 증액된 24조 8,817억 8,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등을 인용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나,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이 지속되면서 여행, 숙박, 음식, 스포츠 등의 소비 수요가 점차 증가 하고 있어 둔화와 성장요인 상존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둔화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

한 결과 한국은행도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인상(2.5%→3.0%)한 바 있어 향후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잠재되어 부동산 거래 둔화 또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기반한 취득세수와 소득·소비에 기초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세수전망에도 둔화요인이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취득세**는 '22년도 최종예산(6조 2,046억 1,200만원)보다 △15.8%, △9,827억 5,000만원 감액된 5조 2,218억 6,2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동 세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대출 금리변동, 부동산시장 경기변화 등에 의하여 세수의 증감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원임

- 미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22년 1월 0.25%에서 '22년 9월 3.25%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2년 1월 1.25%에서 '22년 10월, 3%로 인상한 사례가 있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율 상승과 연동된 부동산 거래가 둔화로 연결되고 있어 회계연도 중 취득세 세입의 신장성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4〉 미국 중앙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 자료근거 : 2022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2년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 또한 금리인상으로 가계별 대출 부담이 증가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물가상승마저 예상되고 있어

부동산 구매 여력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초 세수 추계보다 감수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표 2-5〉 2023년도 취득세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 2023년도 추계 ^{주1)} (A) | 2022년도 ^{주2)} | | 예산대비 | | 전망대비 | |
|------------------------------------|-----------------------|-----------|-------------|---------------|-------------|---------------|
| | 예산 (B) | 전망 (C) | 금액 (A-B) | 비율 (A-B/B) | 금액 (A-C) | 비율 (A-C/C) |
| 5,221,862 | 6,204,612 | 5,890,364 | △982,750 | △15.8 | △668,502 | △11.3 |

주1) 2023년도 세입 예산안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22년도 최종예산(6조 521억 4,000만원)보다 31.1%, 1조 8,817억 9,700만원 증액된 7조 9,339억 3,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소득세**는 '23년도 시세 추계액의 32%를 점유하는 세목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①종합소득분과 ②법인소득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③특별징수분, 부동산 매도에 과세하는 ④양도소득분으로 구성됨

- 기획재정부의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3년도 국세수입은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는 감소하나, 임금상승(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2022년도 대비 5.0% 인상)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세는 2022년도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에 따라 금년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 바,

- 국세와 과표를 공유하는 세목으로 내년도 국세의 경우에는 '23년도 예산에 '22년도 본예산 대비 법인세(40.0%)와 종합소득세(24.5%)를 증액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서울 시도 '22년도 대비 ②법인소득분(56.8%)과 ①종합소득분(16.0%)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동 세목의

경우, 경기둔화 요인이 세수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③특별징수분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용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세입증가로 귀결된 것으로 예상되는 바, '23년도에는 '22년도(2조 9,058억 3,400만원)보다 25.7%, 3,469억 300만원 증가된 3조 6,521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④양도소득분의 경우에는 '17년도부터 지속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세부담이 증가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부동산 매도추세가 둔화되어 '23년도에는 '22년도 실제수납액(1조 625억 5,900만원)보다 감소된 7,407억 7,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6〉 2023년도 지방소득세 세입내용별 증·감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목명 | 2023년도 예산안 ^{주1)} | 2022년도 예산서 (최종예산) ^{주2)} | 증·감 | 증감률 |
|--------|---------------------------|-------------------------------------|-----------|------|
| 계 | 7,933,937 | 6,052,140 | 1,881,797 | 31.1 |
| ①종합소득분 | 909,933 | 784,387 | 125,546 | 16.0 |
| ②양도소득분 | 740,773 | 683,755 | 57,018 | 8.3 |
| ③법인소득분 | 2,631,051 | 1,678,164 | 952,887 | 56.8 |
| ④특별징수분 | 3,652,180 | 2,905,834 | 746,346 | 25.7 |

주1) 2023년도 세입 예산안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 지방소득세가 물가상승에 따른 개인소득의 자연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세수 증가요인이 작용될 수 있고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 '20년도(0.5%), '21년도(2.5%), '22년도 1~10월 평균(5.0%)으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회계연도 개시이후 실제 경제여건에 따라 세수에도 유동성이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는 2023년도 경제성장률을 2.1% 수준으로 보고 있어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고, 최근 수년간 당초 전망한 경제성장률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동 세목에 대한 보수적인 추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지방소득세는 소득 규모에 따라 납부세액이 결정되기에 경제성장, 임금상승 등 경기변동에 따른 유동성이 잠재된 세목으로, 최저임금 상승 및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에 따라 세수가 증가될 여지가 있으나 물가상승 대비 소득인상률이 둔화 될 경우 세수 감소 요인도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2-7〉 지방소득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 2020년도 ^{주1)} | 2021년도 ^{주1)} | '22년도 전망 ^{주2)} | '23년도 추계 ^{주3)} |
|-----|-----------------------|-----------------------|-------------------------|-------------------------|
| 예산액 | 5,433,080 | 5,196,430 | 6,052,140 | 7,933,937 |
| 징수액 | 6,107,644 | 7,427,344 | 8,378,593 | |
| 결산율 | 112.4 | 144.9 | 138.4 | |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주3) 2023년도 세입예산안

○ **재산세**는 '22년도 최종예산(3조 8,275억 9,200만원)보다 8.8%, 3,356억 8,700만원 증액된 4조 1,632억 7,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재산세는 ①재산세의 50%를 자치구간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세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는 **특별시분 재산세**(1조 9,470억 3,400만원)와 ② 「지방세법」 등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2조 2,162억 4,500만원)로 구성됨

〈표 2-8〉 특별시분 재산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년도 ^{주1)} | '21년도 ^{주1)} | '22년도 전망 | '23년도 추계 ^{주3)} |
|-----|----------------------|----------------------|-----------|-------------------------|
| 예산액 | 1,414,625 | 1,634,326 | 1,818,860 | 1,947,034 |
| 징수액 | 1,522,721 | 1,718,520 | 1,865,216 | |
| 결산율 | 107.6 | 103.4 | 102.5 | |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주3) 2023년도 세입예산안

-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경우, 징수액 전액이 도시개발특별회계(70%),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10%, 재촉계정 10%), 교통사업특별회계(10%)로 각각 전출되는 재원임

〈표 2-9〉 도시지역분 재산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년도 ^{주1)} | '21년도 ^{주1)} | '22년도 전망 | '23년도 추계 ^{주3)} |
|-----|----------------------|----------------------|-----------|-------------------------|
| 예산액 | 1,584,374 | 1,760,231 | 2,008,732 | 2,216,245 |
| 징수액 | 1,681,240 | 1,927,548 | 2,009,267 | |
| 결산율 | 106.1 | 105.3 | 100.0 | |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주3) 2023년도 세입예산안

- 동 세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매년 증가되는 세원으로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 하더라도 2022년도 서울시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여전히 100이상으로 평균 매매가격을 상회하고 있어 2023년도의 경우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가 전망됨

〈표 2-10〉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서울지역)

(단위 : %)

| 구분 | '22년 1월 | '22년 2월 | '22년 3월 | '22년 4월 | '22년 5월 | '22년 6월 | '22년 7월 | '22년 8월 | '22년 9월 |
|---------------------------|---------|---------|---------|---------|---------|---------|---------|---------|---------|
| 매매가격 지수 ^{주1)} | 103.6 | 103.6 | 103.6 | 103.6 | 103.7 | 103.7 | 103.6 | 103.3 | 102.8 |
| 변동률 | 0.04 | △0.04 | △0.01 | 0.04 | 0.04 | 0.00 | △0.09 | △0.24 | △0.47 |

※ 자료근거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월간매매가격지수

주1) 주택매매가격지수 : 주택시장의 평균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 100을 기준으로 가격증감 측정

- 다만, 당초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높이기로 계획한 바 있으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에 대한 여론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등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추가 조절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지난 '13년도에는 부동산 거래둔화로 인해 공시지가 등이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 세입예산(1조 8,431억 1,300만원)중 △0.9% △179억 1,400만원을 '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한 사례가 있어 점증적인 세수 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하여도 일부 위험요인은 내재되어 있는 세목으로 사료됨

○ **지방소비세**는 '22년도 최종예산(2조 1,892억 4,000만원)보다 27.3%, 5,976억 5,200만원 증액된 2조 7,868억 9,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액의 납입관리자(전라북도지사)가 23.7%를 시·도별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는 세목임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예산에 소비지출 보전분 비율(5%)과 서울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①**소비지출 보전분**, 부가가치세 예산에 취득세 등 보전분 비율(6%)과 서울시 안분율을 적용하는 ②**취득세 등 보전분**, 전환사업 등 보전분 비율(14.3%)과 서울시 안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③**전환사업 등 보전분**으로 구성됨

〈표 2-11〉 지방소비세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소비지출분 (5%) | 취득세보전분 (6%) | 전환사업 등 보전분 (14.3%) |
|-----------------------|-----------|---------------|----------------|-----------------------|
| 2023년도 ^{주1)} | 2,786,892 | 711,741 | 930,014 | 1,145,137 |
| 2022년도 ^{주2)} | 2,189,240 | 611,256 | 752,477 | 825,507 |

주1) 2023년도 세입예산안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2단계는 지방소비세에 대해 '23년도에는 1.6%p 인상할 계획인 바, '22년도의 지방소비세율은 23.7%이나, '23년도부터는 세율 인상분 1.6%가 반영된 25.3%의 지방소비세율을 적용하여 세입 예산을 추계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세목은 국제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정부의 '23년도 예산안중 부가가치세는 '22년도(76조 540억원)보다 7조 1,495억원 (9.4%) 증액된 83조 2,035억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이나,

- 서울시의 '23년도 **지방소비세**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 2.1%, 민간소비 2.6% 증가 등 내년도 경제여건이 완만하게 호전될 것으로 예측한 정부 예산안에 근거하여 추계한 것으로, 세수의 증가에 따라 자치구 진출, 교육청 지원 등도 연동되어 증가될 수 밖에 없어 증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물가상승, 코로나 재확산 등 내년도 국내여건 변화에 따라 세수 또한 증·감될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가 통제될 때까지 유동성이 높은 세목으로 사료됨

〈표 2-12〉 최근 5개년 서울시 적용 지방소비세 안분율

(단위 : %)

| 구 분 | '19년도 ^{주1)} | '20년도 ^{주1)} | '21년도 ^{주1)} | '22년도 ^{주2)} | '23년도 ^{주3)} |
|---------------------|----------------------|----------------------|----------------------|----------------------|----------------------|
| 소비지출분 (5% 및 잔여분) | 13.646 | 12.867 | 12.980 | 12.996 | 12.780 |
| 취득세 보전분(6%) | 26.633 | 24.487 | 23.390 | 23.749 | 22.788 |
| 전환사업 보전분 | 해당없음 (*20년부터 적용) | 267억원 | 267억원 | 790억원 | 1,549억원 |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주3) 2023년도 세입예산안

○ **자동차세**는 '22년도 최종예산(1조 2,165억 3,200만원)보다 △13.5%, △1,640억 9,300만원 감액된 1조 524억 3,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3〉 2023년도 자동차세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3년도 추계 ^{주1)} (A) | 2022년도 ^{주2)} | | 예산대비 | | 전망대비 | |
|-------|------------------------------------|-----------------------|-----------|-------------|---------------|-------------|---------------|
| | | 예산 (B) | 전망 (C) | 금액 (A-B) | 비율 (A-B/B) | 금액 (A-C) | 비율 (A-C/C) |
| 소 계 | 1,052,439 | 1,216,532 | 1,064,110 | △164,093 | △13.5 | △11,671 | △1.1 |
| 소 유 분 | 642,485 | 616,400 | 635,998 | 26,085 | 4.2 | 6,487 | 1.0 |
| 주 행 분 | 409,954 | 600,132 | 428,112 | △190,178 | △31.7 | △18,158 | △4.2 |

주1) 2023년도 세입예산안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둔감한 세목으로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과세적 성격인 **소유분 자동차세**와 도로·교통관리,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부담 성격의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성됨
- 다만, **소유분 자동차세**(6,424억 8,500만원)의 경우, SUV나 고가차량 판매 확대 등으로 세수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과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선납액 제도에 대한 이용 증가로 일부 세입 감소요인도 상존하고 있고,
- 고효율 저배기량 차량,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등록대수도 증가하고 있어 현행 배기량에 따른 과세는 장기적으로 소유분 자동차세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4〉 소유분 자동차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년도 ^{주1)} | '21년도 ^{주1)} | '22년도 전망 ^{주2)} | '23년도 추계 ^{주3)} |
|-----|----------------------|----------------------|-------------------------|-------------------------|
| 예산액 | 632,191 | 615,065 | 616,400 | 642,485 |
| 징수액 | 610,123 | 624,140 | 635,998 | |
| 결산율 | 96.51 | 101.5 | 103.2 | |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주3) 2023년도 세입예산안

- **주행분 자동차세**(4,099억 5,400만원)의 경우에는 '22년도(6,001억 3,200만원)보다 △31.7%, △1,901억 7,800만원 감액 편성된 바, 유류세 인하, 국제유가 인상, 친환경 자동차 보급 증가로 세수감소 요인이 누적되고 있어 장기적인 세수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국제유가 인상에 대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한 유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5〉 주행분 자동차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년도 ^{주1)} | '21년도 ^{주1)} | '22년도 전망 ^{주2)} | '23년도 추계 ^{주3)} |
|-----|----------------------|----------------------|-------------------------|-------------------------|
| 예산액 | 632,191 | 615,065 | 616,400 | 642,485 |
| 징수액 | 610,123 | 624,140 | 635,998 | |
| 결산율 | 96.51 | 101.5 | 103.2 | |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주3) 2023년도 세입예산안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의 승마(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를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목으로 '22년도 예산(298억 9,100만원)보다 255.1%, 762억 4,200만원 증액된 1,061억 3,300만원을 편성한 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경기 재개로 세입 회복을 전망한 것으로 사료됨

〈표 2-16〉 레저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19년도 ^{주1)} | '20년도 ^{주1)} | '21년도 ^{주1)} | '22년도 전망 ^{주2)} | '23년도 추계 ^{주3)} |
|-----|----------------------|----------------------|----------------------|-------------------------|-------------------------|
| 예산액 | 131,021 | 124,873 | 42,702 | 29,891 | 106,133 |
| 징수액 | 128,189 | 22,924 | 4,439 | 100,296 | |
| 결산율 | 97.8 | 18.4 | 10.4 | 335.5 | |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33727 ('22.10.28) “2023년도 세입 추계(안)”

주3) 2023년도 세입예산안

- 서울시의 '23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을 고려하여 '22년도 최종예산(23조 955억 7400만원)보다 7.7%, 1조 7,862억 1,000만원 증액된 24조 8,817억 8,400만원으로 시세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규모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여건이 급격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계가 있어 물가상승에 의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시세수입의 실제수납액 변동성 또한 발생 가능한 변수라는 점에서 회계연도 개시 후 월별 수납현황에 따라 추가적인 증·감 조정도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세외수입**은 '22년도 최종예산(1조 8,882억 7,100만원)보다 △31.2%, △5,884억 7,400만원 감액된 1조 2,997억 9,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22년도 최종예산(1조 4,238억 8,900만원)보다 △40.7%, △5,800억 500만원 감액된 8,438억 8,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이 감액 편성된 것임

-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542억 3,400만원)보다 7.9%, 121억 5,000만원 증액한 1,663억 8,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동 세목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 8월,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1,639억 3,100만원)보다 △96억 9,600만원을 감액 조정한 사례가 있어 회계연도중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등에 따라 세입예산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용료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428억 3,200만원) 대비 6.4%, 91억 7,900만원 증액한 1,520억 1,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도로사용료(893억 2,700만원), 하천사용료(66억 2,200만원), 입장료수입(140억 5,100만원), 주차요금수입(83억 4,100만원), 기타사용료(336억 6,900만원)로 구성됨
- 아울러 지난 8월,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도로점용료 △155억 4,600만원을 감액한 사례가 있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회계연도중 일부 증·감 조정이 발생 가능한 세입과목으로 판단됨
- **수수료수입**의 경우, '22년도 최종예산(446억 1,600만원)대비 △13.0% △58억 1,700만원 감액한 387억 9,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이 '22년도보다 △58억 2,600만원 감액된 것이나 '23년도의 경우에도 회계연도중 코로나19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이 교부될 가능성이 있어 결산시점에는 수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수입**은 '22년도 최종예산(9,495억 5,100만원)보다 △62.9%, △5,970억 500만원 감액된 3,525억 4,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1,896억원), SH공사 이익 배당금(200억원)이 주요 수입 내역으로 확인됨
- 다만,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의 경우, 지난 '20년도 본예산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 매각되지 않고 있어 해당 용지가 매각 수입에 있어 허수 수단으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자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212억 7,100만원)보다 1.2%, 14억 7,500만원 증액한 1,227억 4,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일반회계 기타 이자수입이 '22년도(92억 7,900만원)보다 23억 1,700만원 증액된 115억 9,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이자수입의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회계연도중 추가적인 이자수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임시적 세외수입**은 '22년도 최종예산(4,564억 9,600만원)보다 △1.8%, △82억 1,900만원 감액된 4,482억 7,7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서울시 공유재산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대금인 **재산매각수입**은 '22년도 최종예산(528억 3,500만원)보다 △39.0%, △206억 800만원 감액된 322억 2,7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제출됨

○ '21년도부터 분리·신설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2년도 최종예산(78억 8,400만원)보다 △3.2%, △2억 4,900만원 감액된 76억 3,500만원이 편성요청한 것임

○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이후 소상공인의 공공시설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매년 추경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세외수입**을 감액조정 한 사례가 있음

-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도 있으나 백신접종 완료자가 증가하고 있고, 거리두기 또한 완화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세수가 확보 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중 세원관리, 변동요인 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어 있고, 부동산교부세의 대상을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경우에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만 교부되고 있음

- '23년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2,636억 1,100만원)보다 △23.4%, △617억 8,300만원 감액된 2,018억 2,8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보통교부세**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시에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중 매년도 시·도별 안분비율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 '23년도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최종예산(2,205억 7,900만원)보다 △21.7%, △479억 7,500만원 감액된 1,726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행정안전부가 금년 12월 중 보통교부세 확정 교부액을 통보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22년도 최초 교부액과 동일한 1,726억 4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임
 - 아울러 '22년도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최초 교부액(1,726억 400만원)을 교부 받고, 추가로 정부 추경분(326억 3,000만원), '21년 정산분(153억 4,600만원)을 교부받아 최종예산은 2,205억 8,000만원으로 확인되어 '23년도 보통교부세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로 교부될 것으로 사료됨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도 최종예산(321억 8,100만원)보다 △9.2%, △29억 5,700만원 감액된 29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된 바,
 - 보통교부세의 편성사례처럼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내시규모가 통보되지 않아 '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도 '22년도 예산에 준하여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2)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따라 ①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과 ②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직 인건비분의 합계로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금년 12월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액이 통보될 예정임

-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내시규모가 통보되지 않고 정부예산 확정후 소방안전교부세 내시액 등이 통보되고 있어
- 회계연도 개시이후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 통보·교부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세입추계의 정밀성과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별교부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재난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하는 것임

- '22년도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는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지 않았으나 이후 간주처리를 통해 108억 5,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집행된 사례가 있어 '23년도의 경우에도 세입예산안중 특별교부세 수입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연도중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됨

□ **보조금(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정조정 제도임

○ '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22년도 최종예산(6조 4,611억 6,800만원)보다 △2.0%, △1,304억 2,100만원이 감액된 6조 3,307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 등으로 금년도 최종예산(6조 1,392억 5,500만원)보다 △2.2%, △1,374억 6,900만원 감액된 6조 1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금년도 최종예산(391억 5,400만원)보다 193.7%, 758억 5,000만원 증액된 1,15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정부 **기금**의 경우, 166개 사업에 금년도 최종예산(2,827억 5,800만원)보다 △24.3%, △688억 200만원 감액된 2,139억 5,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음

□ **지방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 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해 발행할 수 있는 세입과목으로 '23년도에도 일반회계 중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지 않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의 보전수입과 회계간 전입금, 예탁 및 예수 등의 내부거래가 발생할 경우, 별도 계상하는 세입과목으로 8,103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23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보전수입등**은 578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554억 6,7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7억 4,700만원을 편성한 바,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현재 시점에는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 결산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조치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3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내부거래**는 7,525억 5,600만원으로 전입금 2,722억 5,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2) 특별회계 세입재원별 편성현황

- '2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3조 6,807억 1,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9.0%를 차지하며, 금년도 최종예산(14조 2,354억 4,700만원)보다 △3.9%, △5,547억 3,600만원 감액편성된 것임
- '23년도의 경우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17〉 2023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 0 2 3 | 2 0 2 2 | 증 감 | |
|------------------|-------------------|-------------------|------------|--------|
| | 예 산 안 구성비 | 최 종 예 산 구성비 | 증 감 액 | 증감률 |
| 총 계 | 47,205,227 100.0% | 52,223,324 100.0% | △5,018,096 | △9.6% |
| 일 반 회 계 | 33,524,517 71.0 | 37,987,877 72.7 | △4,463,360 | △11.7% |
| 특 별 회 계 | 13,680,710 29.0 | 14,235,447 27.3 | △554,736 | △3.9% |
| 공 기업 특 별 회 계 | 1,816,400 3.8 | 1,754,767 3.4 | 61,632 | 3.5% |
|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 930,000 2.0 | 817,380 1.6 | 112,619 | 13.8% |
| 공기업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 886,400 1.9 | 937,386 1.8 | △50,986 | △5.4% |
| 기 타 특 별 회 계 | 11,864,310 25.1 | 12,480,679 23.9 | △616,369 | △4.9% |

※ 자료근거 : 2023년도 세입예산안

-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12조 4,806억 7,900만원)보다 △4.9%, △6,163억 6,900만원 감액된 11조 8,64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

〈표 2-18〉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 0 2 3 | 2 0 2 2 | 증 감 | |
|---------------|-----------------|-----------------|----------|--------|
| | 예 산 안 구성비 | 최 종 예 산 구성비 | 증 감 액 | 증 감 륜 |
| 계 | 11,864,310 100% | 12,480,679 100% | △616,369 | △4.9%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1,972,025 16.6% | 2,145,323 17.2% | △173,298 | △8.1% |
| 교통사업특별회계 | 1,651,619 13.9% | 2,207,225 17.7% | △555,605 | △25.2%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305,764 2.6% | 265,501 2.1% | 40,263 | 15.2% |
| 주택사업특별회계 | 2,979,377 25.1% | 2,982,493 23.9% | △3,116 | △0.1% |
| 도시개발특별회계 | 1,833,727 15.5% | 1,956,554 15.7% | △122,827 | △6.3% |
| 균형발전특별회계 | 168,548 1.4% | 162,616 1.3% | 5,932 | 3.6%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29,386 0.2% | 29,214 0.2% | 172 | 0.6%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1,912,895 16.1% | 1,752,274 14.0% | 160,620 | 9.2%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35,791 0.3% | 33,704 0.3% | 2,087 | 6.2% |
| 소 방 특 별 회 계 | 975,173 8.2% | 945,771 7.6% | 29,402 | 3.1% |

※ 자료근거 : 2023년도 세입예산안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1,453억 2,300만원)보다 △8.1%, △1,732억 9,800만원 감액된 1조 9,720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바,

- 세입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이 금년도보다 338억 8,600만원 증액편성되고, 지방채도 금년도보다 1,425억 7,7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4,970억 9,400만원)은 △2,225억 1,000만원 감액편성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2,072억 2,500만원)보다 △25.1%, △5,556억 500만원 감액된 1조 6,516억 1,9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 전입금을 금년도보다 △3,614억 9,100만원 감액편성하고, 국고보조금도 금년도보다 △1,125억 2,100만원 감액 편성하는 등의 사유로 세입예산이 감액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655억 100만원)보다 15.1%, 402억 6,300만원 증액된 3,057억 6,4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임시적 제외수입이 금년도보다 △378억 9,800만원 감액편성 되었으나, 일반회계 일반전입금이 1,076억 9,600만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9,824억 9,300만원)보다 △0.1%, △31억 1,600만원 감액된 2조 9,793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바,
 - 제외수입은 금년도보다 692억 4,8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나, 보조금이 금년도보다 △1,351억 6,400만원 감액편성 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9,565억 5,400만원)보다 △6.2%, △1,228억 2,700만원 감액된 1조 8,337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626억 1,600만원)보다 3.6%, 59억 3,200만원 증액된 1,685억 4,8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92억 1,400만원)보다 0.6%, 1억 7,200만원 증액된 293억 8,6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7,522억 7,400만원)보다 9.1%, 1,606억 2,000만원 증액된 1조 9,128억 9,5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337억 400만원)보다 6.2%, 20억 8,700만원 증액된 357억 9,1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소방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9,457억 7,100만원)보다 3.1%, 294억 200만원 증액된 9,751억 7,3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9〉 회계간 전출·입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2023년도 (예산안) | 2022년도 (최종예산) | 증감 | 증 감 사 유 |
|---------|---------------|-----------------|------------------|----------|---|
| 전출회계 | 전입회계 | | | | |
| 일반 → 특별 | | 5,667,899 | 6,059,022 | △391,123 | |
| 일반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 497,095 | 719,605 | △222,510 | ▸ 도시철도 부족재원 전출 |
| | 교 통 사 업 | 849,394 | 1,207,865 | △358,471 | |
| | (주차장관리계정) | 221,625 | 219,441 | 2,184 | ▸ 지방세 세입증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 |
| | (교통관리계정) | 265,649 | 333,114 | △67,465 | ▸ 주행세 세입 중 유가보조금 보전분 감소 |
| | (교통관리계정) | 362,120 | 655,310 | △293,190 |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재원부족분 전출 |
| | 광역교통시설 | 127,584 | 19,888 | 107,696 | |
| | 주 택 사 업 | 610,249 | 676,260 | △66,011 | |
| |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 221,625 | 219,441 | 2,184 | ▸ 지방세 세입증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도정계정) |
| | (재정비축진사업계정) | 221,625 | 219,441 | 2,184 | ▸ 지방세 세입증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재촉계정) |
| | 국민주택사업계정 일반지원 | 167,000 | 237,378 | △70,378 | ▸ 임대주택건설 등 국민주택사업계정 재원 부족분 지원 |
| | 도 시 개 발 | 1,551,372 | 1,536,086 | 15,286 | ▸ 지방세 세입증 재산세 도시지역분(70%) 증추계에 따른 전출금 증액 |
| | 소 방 방 | 939,891 | 893,165 | 46,726 | |
| | (지역자원시설세계정) | 332,731 | 312,487 | 20,244 | ▸ 지방세 세입증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증액 (소방분 100%) |
| | (소방안전교부세계정) | 24,439 | 26,592 | △2,153 | ▸ 소방안전교부세 75%(법정전출) |
| | (소방안전일반지원) | 582,721 | 554,087 | 28,634 | ▸ 소방특별회계 재원 부족분 지원 |
| | 의 료 급 여 기 금 | 952,626 | 867,986 | 84,640 | ▸ 법정시비부담금(국비50%, 시비50%) 증가 |
| | 균 형 발 전 | 128,491 | 93,236 | 35,255 | ▸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중 지방채 규모 감소에 따른 전출금 증가 |
| | 공기업하수도사업 | 7,194 | 5,730 | 1,464 | ▸ 다자녀가구·한부모가족 하수도 요금 감면분 증액 |
| | 수 도 사 업 | 4,003 | 39,201 | △35,198 | ▸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분 감소 |

※ 자료근거 : 2023년도 세입예산안

〈표 2-20〉 회계간 전출·입 현황 (특별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2023년도 (예산안) | 2022년도 (최종예산) | 증감 | 증 감 사 유 |
|----------|----------|-----------------|------------------|-------|-----------------------|
| 전출회계 | 전입회계 | | | | |
| 특별 → 특별 | | 46,605 | 43,505 | 3,100 | |
| 공기업하수도사업 | 수 도 사 업 | 22,000 | 21,200 | 800 |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증가 |
| 공기업하수도사업 | 한강수질개선 | 200 | 212 | △12 | ▸ 지출잔액 발생 |
| 한강수질개선 | 수 도 사 업 | 4,054 | 4,318 | △264 | ▸ 정수비용 지원금 감소 |
| 한강수질개선 | 공기업하수도사업 | 20,351 | 17,775 | 2,576 |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증가 |

※ 자료근거 : 2023년도 세입예산안

〈표 2-21〉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세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 0 2 3 | | 2 0 2 2 | | 증 감 | |
|----------------------------|-----------|-------|------------|-------|----------|--------|
| | 예 산 안 | 구 성 비 | 최 종 예 산 | 구 성 비 | 증 감 액 | 증 감 륜 |
| 계 | 9,766,872 | 100.0 | 10,189,422 | 100.0 | △422,550 | △4.1 |
| 자 체 수 입 | 1,228,707 | 12.6 | 1,077,198 | 10.6 | 151,509 | 14.1 |
| 경상적세외수입 | 649,681 | | 565,468 | | 84,213 | 14.9 |
| 임시적세외수입 | 94,349 | | 126,817 | | △32,468 | △25.6 |
| 지방행정제재금 · 부 과 금 | 484,677 | | 384,913 | | 99,764 | 25.9 |
|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 6,745,117 | 69.1 | 7,604,595 | 74.6 | △859,478 | △11.3 |
| 보 전 수 입 등 | 378,286 | | 605,041 | | △226,755 | △37.5 |
| 순세계잉여금 | 350,375 | | 573,476 | | △223,101 | △38.9 |
| 전년도이월금 | 7,034 | | 7,166 | | △132 | △1.8 |
| 용자금원금수입 | 18,849 | | 24,399 | | △5,550 | △22.7 |
| 보조금등반환금 | 2,028 | | 0 | | 2,028 | 순증 |
| 내 부 거 래 | 6,366,831 | | 6,999,554 | | △632,723 | △9.0 |
| 전 입 금 | 5,656,902 | | 6,167,323 | | △510,421 | △8.3 |
| 예탁금및예수금 | 709,929 | | 832,231 | | △122,302 | △14.7 |
| 지 방 교 부 세 (특 별 교 부 세) | 0 | 0.0 | 680 | 0.01 | △680 | △100.0 |
| 공 채 및 차 입 금 | 1,793,048 | 18.4 | 1,506,949 | 14.8 | 286,099 | 19.0 |
| 국 고 보 조 금 등 | 0 | 0.0 | 0 | 0.0 | 0 | 0.0 |

※ 자료근거 : 2023년도 세입예산안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14.1% 증액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11.3%)는 감액편성한 것이나 공채 및 차입금 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9% 증액편성된 것임
- 세입예산중 지방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5,069억 4,900만원)보다 2,860억 9,900만원 증액된 1조 7,930억 4,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표 2-22〉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채^{주1)}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 특 별 회 계 | 2 0 2 3 (예 산 안) | 2 0 2 2 (최 종 예 산) | 증 감 | 증 감 륜 |
|---------------------------|----------------------|------------------------|----------|--------|
| 계 | 1,793,048 | 1,506,949 | 286,099 | 19.0%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1,277,252 | 1,134,675 | 142,577 | 12.6% |
| 매 출 공 채 | 777,252 | 810,675 | △33,422 | △4.1% |
| 모 집 공 채 | 500,000 | 324,000 | 176,000 | 54.3%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모 집 공 채) | 85,000 | 121,000 | △36,000 | △29.8% |
| 주택사업특별회계 (모 집 공 채) | 395,000 | 70,000 | 325,000 | 464.3% |
| 도시개발특별회계 | 35,796 | 181,274 | △145,478 | △80.3% |
| 정 부 자 금 채 | 25,796 | 20,274 | 5,522 | 27.2% |
| 모 집 공 채 | 10,000 | 161,000 | △151,000 | △93.8% |

주1) 세입과목중 “지방채”로 매출공채, 모집공채,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포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할 때 매입하는 채권비용으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도시철도매출공채 7,772억 5,200만원과 동북선 경전철 건설(1,000억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1,500억원), 9호선 4단계 건설(400억원)을 위한 모집공채 2,900억원을 차입하고,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2,100억원의 지방채를 차환할 예정으로 금년도(1조 1,346억 7,500만원)보다 1,425억 7,700만원 증액된 1조 2,772억 5,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GTX등 광역철도 건설비를 부담하고자 지방채 850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210억원)보다 △360억원 감액된 850억원을 편성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재개발·재건축 매입임대 사업과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수행하고자 일반 매입임대(800억원), 신혼부부 매입임대(450억원), 청년 매입임대(300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1,800억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600억원)을 위한 모집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700억원)보다 3,250억원 증액된 3,950억원을 편성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0억원의 지방채를 차환하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257억 9,600만원을 정부자금채로 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812억 7,400만원)보다 △1,454억 7,800만원 감액된 357억9,6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최종예산(2조 2,912억 5,400만원)보다 △1,938억 1,900만원 감액된 2조 974억 3,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23〉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등^{주1)}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 특별회계 | 2023 (예산안) | 2022 (최종예산) | 증감 | 증감률 |
|---------------|---------------|----------------|----------|-------|
| 계 | 2,097,435 | 2,291,254 | △193,819 | △8.5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151,060 | 117,173 | 33,886 | 28.9 |
| 교통사업특별회계 | 36,665 | 183,086 | △146,421 | △80.0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10,662 | 17,517 | △6,855 | △39.1 |
| 주택사업특별회계 | 771,413 | 906,578 | △135,164 | △14.9 |
| 도시개발특별회계 | 127,713 | 128,602 | △888 | △0.7 |
| 균형발전특별회계 | 11,160 | 33,167 | △22,007 | △66.4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952,626 | 867,985 | 84,640 | 9.8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 - | - | -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32,382 | 30,151 | 2,231 | 7.4 |
| 소방특별회계 | 3,754 | 6,995 | △3,241 | △46.3 |

주1)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등”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포함

-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과목으로 편성요청되어 있는 바, 결산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인잔액(세입-세출)에서 이월금 및 국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24〉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특 별 회 계 ^{주1)} | 2023 예산안 편성 (순세계잉여금) | 2022 결산상잉여금 (예상액) | 결산상 잉여금 잔액 |
|---------------------------------|-------------------------|----------------------|------------|
| 합 계 | 372,740 | 372,740 | - |
| 교통사업특별회계 | 78,349 | 78,349 | -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9,313 | 9,313 | - |
| 주택사업특별회계 | 157,636 | 157,636 | - |
| 도시개발특별회계 | 74,789 | 74,789 |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4,135 | 4,135 | -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871 | 871 | - |
| 소방특별회계 | 25,282 | 25,282 | - |
| 수도사업특별회계 | 22,365 | 22,365 | - |

※ 자료근거 : 2023년도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1) 주요 법정사항 검토

1)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제출된 바,
 - '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94개 사업, 3조 8,923억원이며, 일반회계(267개)와 기타 특별회계(22개)의 예산사업으로 3조 8,910억 7,900만원, 기금사업(5개)으로 12억 2,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예산을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2조 2,963억 1,700만원(128개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7,888억 8,400만원(119개 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8,071억 500만원(47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25〉 성인지예산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구 분 | 사업 개수 | 2023년도 | 2022년도 | 증 감 | 증감률 |
|---------|-------|-----------|-----------|---------|--------|
| 총 계 | 294 | 3,892,306 | 3,828,226 | 64,080 | 1.67 |
| 예 산 | 289 | 3,891,079 | 3,825,980 | 65,099 | 1.70 |
| 일 반 회 계 | 267 | 3,608,344 | 3,528,283 | 80,062 | 2.27 |
| 특 별 회 계 | 22 | 282,735 | 297,697 | △14,963 | △5.03 |
| 기 금 | 5 | 1,227 | 2,247 | △1,020 | △45.38 |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 p.7 재구성

- 성인지예산에 대한 조직별 편성 현황의 경우, 39개 실·본부·국에 294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 여성가족정책실 84개 사업(1조 7,101억 8,000만원), 복지정책실 42개 사업(1조 3,214억 900만원), 경제정책실 22개 사업(2,581억 9,600만원), 주택정책실 6개 사업(1,558억 8,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88.5%, 3조 4,456억 6,700만원이 여성가족정책실을 포함한 4개 실·본부·국에 집중되고 있는 바,
 - 예산편성 시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본부·국별로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26〉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대상사업 | 2023년도 | | 2022년도 | | 증 감 | 증 감 륜 |
|----|---|-----------|-------|-----------|-------|----------|--------|
| | | 예산액 | 구성비 | 예산액 | 구성비 | | |
| 계 | 294개 사업 | 3,892,306 | 100.0 | 3,828,226 | 100.0 | 64,080 | 1.67 |
| 필수 | 양 성 평 등 정 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주1)} | 807,105 | 20.7 | 912,540 | 23.8 | △105,435 | △11.55 |
| | 성별영향평가사업 ^{주2)} | 788,884 | 20.3 | 616,166 | 16.1 | 172,718 | 28.03 |
|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주3)} | 2,296,317 | 59.0 | 2,299,520 | 60.1 | △3,203 | 0.14 |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 p.8 재구성

주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180)

주2) 성별영향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 2018년 이전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들도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표시

주3)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표 2-27〉 실·본부·국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3년도 | | | 2022년도 | | 증감 | 증감률 |
|-------------|------------|------------------|------------|------------------|------------|---------------|-------------|
| | 사업수 | 예산안 | 구성비 | 본예산 | 구성비 | | |
| 총 계 | 294 | 3,892,306 | 100 | 3,828,226 | 100 | 64,080 | 1.67 |
| 대 변 인 | - | - | 0.000 | 136 | 0.004 | △136 | 순감 |
| 홍 보 기 획 관 | 3 | 6,029 | 0.15 | 7,563 | 0.20 | △1,534 | △20.29 |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 | - | 0.00 | 407 | 0.01 | △407 | 순감 |
| 여성가족정책실 | 84 | 1,710,180 | 43.94 | 1,887,644 | 49.31 | △177,464 | △9.40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18 | 52,487 | 1.35 | 41,676 | 1.09 | 10,812 | 25.94 |
| 비 상 기 획 관 | 2 | 265 | 0.007 | 115 | 0.00 | 150 | 129.95 |
| 디 지 털 정 책 관 | 4 | 2,291 | 0.06 | 2,947 | 0.08 | △657 | △22.28 |
| 민생사법경찰단 | - | - | 0.00 | 29 | 0.001 | △29 | 순감 |
| 미래청년기획단 | 9 | 81,402 | 2.091 | 78,665 | 2.055 | 2,737 | 3.48 |
| 기 획 조 정 실 | 1 | 596 | 0.02 | 85,398 | 2.23 | △84,802 | △99.30 |
| 소 방 재 난 본 부 | 5 | 2,679 | 0.07 | 2,089 | 0.05 | 591 | 28.28 |
| 경 제 정 책 실 | 22 | 258,196 | 6.63 | 187,338 | 4.89 | 70,858 | 37.82 |
| 복 지 정 책 실 | 42 | 1,321,409 | 33.95 | 1,041,195 | 27.20 | 280,214 | 26.91 |
| 도 시 교 통 실 | 6 | 88,832 | 2.28 | 81,042 | 2.12 | 7,790 | 9.61 |
| 기 후 환 경 본 부 | 4 | 7,684 | 0.20 | 7,493 | 0.20 | 190 | 2.54 |
| 문 화 본 부 | 12 | 20,607 | 0.53 | 11,771 | 0.31 | 8,837 | 75.07 |
| 관 광 체 육 국 | 7 | 41,096 | 1.06 | 51,789 | 1.35 | △10,693 | △20.65 |
| 평 생 교 육 국 | 8 | 55,460 | 1.42 | 47,713 | 1.25 | 7,746 | 16.24 |
| 시 민 건 강 국 | 22 | 61,616 | 1.583 | 67,080 | 2 | △5,465 | △8.15 |
| 행 정 국 | 10 | 7,388 | 0.19 | 18,900 | 0.49 | △11,512 | △60.91 |
| 재 무 국 | - | - | 0.00 | 19 | 0.00 | △19 | 순감 |
| 미래공간기획관 | 2 | 2,191 | 0.06 | 2,850 | 0.07 | △659 | △23.12 |
| 디 자 인 정 책 관 | 1 | 3,468 | 0.09 | 4,052 | 0.11 | △584 | △14.40 |
| 기술심사담당관 | 1 | 46 | 0.00 | 64 | 0.00 | △18 | △28.43 |
| 안 전 총 괄 실 | 2 | 1,132 | 0.029 | 2,629 | 0.069 | △1,498 | △56.96 |
| 주 택 정 책 실 | 6 | 155,882 | 4.00 | 187,103 | 4.89 | △31,221 | △16.69 |
| 도 시 계 획 국 | 1 | 120 | 0.00 | 153 | 0.00 | △33 | △21.47 |
| 균 형 발 전 본 부 | 3 | 1,157 | 0.03 | 3,878 | 0.10 | △2,720 | △70.16 |
| 푸른도시여가국 | 3 | 1,395 | 0.04 | 940 | 0.02 | 455 | 48.37 |
| 물 순 환 안 전 국 | 1 | 339 | 0.01 | 534 | 0.01 | △195 | △36.54 |
| 인 재 개 발 원 | - | - | 0.00 | 122 | 0.00 | △122 | 순감 |
| 도시기반시설본부 | - | - | 0.00 | 14 | 0.00 | △14 | 순감 |
| 한 강 사 업 본 부 | 2 | 6,696 | 0.17 | 1,293 | 0.03 | 5,402 | 417.71 |
| 서울역사박물관 | 2 | 617 | 0.0159 | 603 | 0 | 14 | 2.30 |
| 시 립 미 술 관 | 2 | 261 | 0.01 | 242 | 0.01 | 20 | 8.19 |
| 의 회 사 무 처 | - | - | 0.00 | 1,871 | 0.05 | △1,871 | 순감 |
| 감 사 위 원 회 | 5 | 591 | 0.02 | 812 | 0.02 | △221 | △27.22 |
| 시민참여위원회 | 2 | 78 | 0.00 | 59 | 0 | 20 | 33.64 |
| 자치경찰위원회 | 2 | 117 | 0.00 | - | 0.00 | 117 | 순증 |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 p.10 재구성

2)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난 '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음
- 성과계획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는 바, '23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9개 실·본부·국에 대해 39개 전략목표, 225개 정책사업목표, 537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임
- '22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41개 실·본부·국에 대해 41개 전략목표, 222개 정책사업목표, 522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3년도에는 정책사업 및 성과계획 지표를 세분화함에 따라 정책사업목표와 지표 수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표 2-28〉 실·본부·국별 성과계획 총괄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실·본부·국 | 성과계획 | | | | 예산액 | | |
|---------------|-----------|--------|-----|-----------|------------|------------|-----------|
|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 단위 사업수 | 2023년도 | 2022년도 | 증감 |
| | | 개수 | 지표수 | | | | |
| 계 | 39 | 225 | 430 | 537 | 45,388,828 | 42,535,553 | 2,853,275 |
| 대 변 인 | 1 | 1 | 2 | 2 | 1,660 | 1,523 | 138 |
| 홍 보 기 획 관 | 1 | 6 | 13 | 12 | 83,854 | 93,222 | △9,368 |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1 | 2 | 3 | 3 | 2,656 | 407 | 2,249 |
| 여성가족정책실 | 1 | 7 | 13 | 20 | 3,088,722 | 2,931,787 | 156,935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1 | 9 | 12 | 21 | 324,103 | 454,052 | △129,948 |
| 비 상 기 획 관 | 1 | 1 | 2 | 6 | 2,861 | 2,998 | △137 |
| 디 지 털 정 책 관 | 1 | 8 | 15 | 19 | 146,605 | 133,793 | 12,813 |
| 민생사법경찰단 | 1 | 1 | 3 | 1 | 1,103 | 1,090 | 13 |
| 미래청년기획단 | 1 | 1 | 2 | 3 | 111,969 | 104,257 | 7,712 |
| 기 획 조 정 실 | 1 | 10 | 18 | 20 | 1,048,164 | 909,809 | 138,355 |
| 소 방 재 난 본 부 | 1 | 9 | 23 | 19 | 1,915,065 | 1,812,405 | 102,659 |
| 경 제 정 책 실 | 1 | 11 | 22 | 25 | 679,654 | 619,518 | 60,136 |
| 복 지 정 책 실 | 1 | 8 | 13 | 25 | 9,946,784 | 8,984,793 | 961,991 |
| 도 시 교 통 실 | 1 | 10 | 19 | 22 | 3,786,994 | 3,017,775 | 769,219 |
| 기 후 환 경 본 부 | 1 | 8 | 12 | 23 | 518,145 | 464,303 | 53,842 |
| 문 화 본 부 | 1 | 10 | 13 | 34 | 573,337 | 573,630 | △293 |
| 관 광 체 육 국 | 1 | 5 | 9 | 18 | 239,027 | 238,780 | 247 |
| 평 생 교 육 국 | 1 | 6 | 9 | 14 | 4,460,417 | 4,438,654 | 21,763 |
| 시 민 건 강 국 | 1 | 12 | 30 | 26 | 627,336 | 701,536 | △74,200 |
| 행 정 국 | 1 | 9 | 14 | 14 | 4,491,413 | 4,172,062 | 319,351 |
| 재 무 국 | 1 | 6 | 12 | 12 | 3,418,182 | 3,196,030 | 222,153 |
| 미래공간기획관 | 1 | 3 | 6 | 4 | 14,534 | 22,614 | △8,080 |
| 디 자 인 정 책 관 | 1 | 3 | 5 | 5 | 60,646 | 42,678 | 17,968 |
| 기술심사담당관 | 1 | 2 | 4 | 4 | 2,157 | 1,924 | 233 |
| 안 전 총 괄 실 | 1 | 10 | 15 | 29 | 1,268,517 | 1,339,499 | △70,983 |
| 주 택 정 책 실 | 1 | 12 | 24 | 32 | 4,382,267 | 4,114,909 | 267,358 |
| 도 시 계 획 국 | 1 | 6 | 6 | 9 | 20,091 | 13,266 | 6,825 |
| 균 형 발 전 본 부 | 1 | 10 | 17 | 18 | 1,669,317 | 1,532,684 | 136,633 |
| 푸 른 도 시 여 가 국 | 1 | 13 | 18 | 35 | 470,362 | 518,811 | △48,449 |
| 물 순 환 안 전 국 | 1 | 3 | 5 | 8 | 211,084 | 159,646 | 51,438 |
| 인 재 개 발 원 | 1 | 1 | 3 | 4 | 16,794 | 14,019 | 2,775 |
| 도시기반시설본부 | 1 | 5 | 10 | 6 | 1,594,638 | 1,724,927 | △130,288 |
| 한 강 사 업 본 부 | 1 | 2 | 6 | 10 | 119,180 | 107,610 | 11,570 |
| 서울역사박물관 | 1 | 1 | 3 | 5 | 15,000 | 14,821 | 180 |
| 시 립 미 술 관 | 1 | 1 | 6 | 4 | 19,605 | 14,780 | 4,825 |
| 의 회 사 무 처 | 1 | 3 | 24 | 9 | 32,973 | 38,173 | △5,200 |
| 감 사 위 원 회 | 1 | 6 | 11 | 8 | 2,336 | 2,887 | △551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 | 1 | 2 | 3 | 509 | 496 | 13 |
| 자 치 경 찰 위 원 회 | 1 | 3 | 6 | 5 | 20,764 | 19,387 | 1,377 |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성과계획서 p.149 재구성

3) 참여예산

- 참여예산 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지방예산 편성 등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3년도 예산부터 시행되고 있음

〈표 2-29〉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 유형

| 구분 | 시민참여예산 | 청년자율예산 |
|------|--------------------|-----------------------|
| 대상사업 | 신규사업 | 신규·계속사업 |
| 참여방식 | 신규사업 제안(공모) | 참여자 숙의를 통한 신규사업 제안 |
| 사업기간 | 단년도 사업 | 단년도·다년도 사업 |
| 운영부서 | 재정담당관 | 미래청년기획단 |
| 집행부서 | 실·본부·국 | 미래청년기획단, 실·본부·국 |
| 정책대상 |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사업 | 시 전반 모든 정책분야 사업 |

-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23년도 예산안부터 **시민속의예산**은 시민참여예산에서 제외하였으며, 기존의 **시민제안형예산**중 '지역 단위 사업'은 자치구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광역단위 사업'은 광역단위 기획제안형 사업으로 단일화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확인됨

〈표 2-30〉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개선 현황

| 기 존 (2022년) | | | 개 선 안 (2023년) | | |
|-------------|----------|-----------|---------------|----------|-------------------|
| 시민속의형 | | | 시민속의형 | 미반영 | |
| 시민제안형 | 광역 단위 | 광역제안형 | 시민제안형 | 광역 단위 | 기획제안형 (서울시 운영) |
| | | 민주주의서울제안형 | | | |
| | 지역 단위 | 구단위계획형 | | 지역 단위 | 자치구 자율 운영 |
| | | 동단위계획형 |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속의예산과-22956 ('22. 7.15)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재구성

- '23년도 참여예산은 총 21개 사업, 127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업 유형별로 시민제안형 사업은 56억 600만원(9개 사업), 청년자율예산은 70억 9,400만원(12개 사업)을 편성하고, ①시정제안형 62억 5,700만원(11개 사업), ②자치구제안형 8억 3,700만원(1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2-31〉 참여예산 편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 '23년도 예산안 | | '22년도 본예산 | | 증감 | |
|------------------------|-----------|--------|-----------|-----------|-------|------------|
| | 세부사업수 | 예산액 | 세부사업수 | 예산액 | 세부사업수 | 예산액 |
| 계(①+②) | 21 | 12,700 | 344 | 1,077,866 | △323 | △1,065,166 |
| ①시민참여예산 ^{주1)} | 9 | 5,606 | 334 | 1,069,422 | △325 | △1,063,816 |
| 시민숙의형사업 | - | - | 137 | 1,044,775 | △137 | △1,044,775 |
| 시민제안형사업 | 9 | 5,606 | 197 | 24,647 | △188 | △19,041 |
| 기획제안형 (광역단위) | 9 | 5,606 | - | - | 9 | 5,606 |
| 광역제안형 | - | - | 14 | 7,962 | △14 | △7,962 |
|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 - | - | 2 | 1,010 | △2 | △1,010 |
| 구단위계획형 | - | - | 181 | 15,675 | △181 | △15,675 |
| ②청년자율예산 ^{주2)} | 12 | 7,094 | 10 | 8,444 | 2 | △1,350 |
| 시정제안형 | 11 | 6,257 | 9 | 4,750 | 2 | 1,507 |
| 자치구제안형 | 1 | 837 | 1 | 3,694 | 0 | △2,857 |

※ 자료근거 : 주1)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8215 ('22.11. 7)

주2)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30055 ('22.11. 7)

청년자율예산 명칭변경 : 시정숙의형('22)→시정제안형('23), 자치구숙의형('22)→자치구제안형('23)

4)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 서울시는 '23년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5조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하고, 102개 세부사업, 3,453억 6,237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승인을 얻는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감시권을 존중하고자 사전의결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요청되고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이 공정지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용 처리 후 예산을 편성요청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32〉 명시이월 승인요청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 분 | 사 업 수 | 2 0 2 2 년 도 예 산 액 | 명시이월 요청액 (2022→2023) | 2 0 2 3 년 도 예 산 액 |
|---|---------------------------------|-------|-------------------------|-------------------------|-------------------------|
| 총 | 계 | 102 | (X180,254) 1,066,668 | (X45,764) 345,362 | (X169,310) 1,030,885 |
| | 일 반 회 계 | 46 | (X44,162) 208,660 | (X26,343) 97,908 | (X28,149) 147,998 |
| | 특 별 회 계 | 56 | (X136,092) 858,007 | (X19,422) 247,454 | (X141,160) 882,887 |
| |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 5 | (X36,753) 246,063 | (X578) 11,981 | (X65,953) 416,494 |
| |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 10 | (X8,090) 36,180 | (X2,858) 18,242 | (X-) 24,616 |
| |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 3 | (X13,000) 105,675 | (X3,000) 11,033 | (X5,562) 109,003 |
| |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 5 | (X11,310) 59,233 | (X10,095) 36,679 | (X6,420) 30,287 |
|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 29 | (X66,909) 403,487 | (X2,891) 166,388 | (X63,195) 278,537 |
| |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 4 | (X30) 7,369 | (X-) 2,680 | (X30) 23,951 |

5)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①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②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며, ③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년도 예산제도임

-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17개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252조 3,507억원으로 계획하고, **연평균 재정 규모**를 50조 4,701억원으로 전망한 바,
 - **일반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179조 9,287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 기간 연평균 재정규모를 35조 9,857억원으로 전망하며, **특별회계**도 총 재정규모를 72조 4,221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 기간 연평균 재정규모를 14조 4,844억원으로 전망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3〉 재정규모(총계규모)^{주1)}

(단위 : 억원, %)

| 구분 | 총 재정규모 | 계획기간 | | | | | 연평균 | | |
|------|-----------|---------|---------|---------|---------|---------|---------|-------|-----|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규모 | 비중 | 증가율 |
| 계 | 2,523,507 | 472,052 | 484,476 | 504,386 | 521,403 | 541,190 | 504,701 | 100.0 | 3.5 |
| 일반회계 | 1,799,287 | 335,245 | 342,722 | 358,800 | 373,407 | 389,113 | 359,857 | 71.3 | 3.8 |
| 특별회계 | 724,221 | 136,807 | 141,754 | 145,586 | 147,997 | 152,077 | 144,844 | 28.7 | 2.7 |

※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202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2.11), p.16 재구성

○ **세입전망**의 경우, 총 규모 252조 3,507억원, 연평균 규모 50조 4,701억원으로 연평균 3.5%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바,

- **지방세수입**의 경우, 총 규모 135조 8,842억원, 연평균 규모 27조 1,768억원으로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전 세목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연평균 4.4%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며
- **세외수입**의 경우, 총 규모 21조 7,175억원, 연평균 규모 4조 3,435억원으로 연평균 0.1%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임

- **이전재원**의 경우, 총 규모는 57조 206억원, 연평균 규모는 11조 4,041 억원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4.0%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며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경우, 총 규모 37조 7,284억원, 연평균 규모 7 조 5,457억원으로 연평균 1.3%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임

〈표 2-34〉 세입전망^{주1)}

(단위 : 억원, %)

| 구분 | 총 규모 | 계획기간 | | | | | 연평균 | | |
|-------------------|-----------|---------|---------|---------|---------|---------|---------|-------|-----|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규모 | 비중 | 증가율 |
| 계 | 2,523,507 | 472,052 | 484,476 | 504,386 | 521,403 | 541,190 | 504,701 | 100.0 | 3.5 |
| 지방세수입 | 1,358,842 | 248,818 | 259,634 | 271,140 | 283,291 | 295,959 | 271,768 | 53.8 | 4.4 |
| 세 외 수입 | 217,175 | 42,208 | 44,641 | 44,970 | 43,044 | 42,312 | 43,435 | 8.6 | 0.1 |
| 이 전 재 원 | 570,206 | 104,241 | 110,708 | 115,086 | 117,990 | 122,181 | 114,041 | 22.6 | 4.0 |
| 보전수입 및 내 부 거 래 | 377,284 | 76,784 | 69,493 | 73,191 | 77,079 | 80,737 | 75,457 | 15.0 | 1.3 |

※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202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2.11), p.18 재구성

- **세출전망**의 경우, 총계규모 총 252조 3,507억원, 연평균 규모 50조 4,701억원으로 전망하고
- 회계 간 내부거래(총 30조 3,890억원, 연평균 6조 778억원)를 제외한 순계규모 총 221조 9,616억원, 연평균 규모 44조 3,923억원으로 전망하여 제출한 것임

〈표 2-35〉 세출전망^{주1)}

(단위 : 억원, %)

| 구분 | 총 규모 | 계획기간 | | | | | 연평균 | |
|-----------|-----------|---------|---------|---------|---------|---------|---------|-----|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규모 | 증가율 |
| 총 계 규 모 | 2,523,507 | 472,052 | 484,476 | 504,386 | 521,403 | 541,190 | 504,701 | 3.5 |
| 회 계 간 전 출 | 303,890 | 57,145 | 56,041 | 59,610 | 63,619 | 67,475 | 60,778 | 4.2 |
| 순 계 규 모 | 2,219,616 | 414,907 | 428,434 | 444,776 | 457,784 | 473,715 | 443,923 | 3.4 |

※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202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2.11), p.22 재구성

○ **분야별 자원배분계획**의 경우, 순계규모(221조 9,616억원) 중 행정운영경비(11조 1,734억원)와 재무활동(13조 3,011억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총 197조 4,870억원으로,

- ①**사회복지** 86조 5,248억원(39.0%), ②**자치구지원** 36조 7,336(16.5%), ③**교육청지원(법정의무)** 21조 3,969억원(9.6%), ④**도로·교통** 12조 7,790억원(5.8%), ⑤**공원·환경** 12조 3,547억원(5.6%) 등으로 배분 계획한 것임

〈표 2-36〉 분야별 자원배분계획^{주1)}

(단위 : 억원, %)

| 구분 | 계 | 연차별 투자계획 | | | | |
|-----------------------|----------------------|--------------------|--------------------|--------------------|--------------------|--------------------|
|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순계규모 | 2,219,616 (100.0) | 414,907 (100.0) | 428,434 (100.0) | 444,776 (100.0) | 457,784 (100.0) | 473,715 (100.0) |
| 사 업 비 | 1,974,870 (89) | 365,984 (88.2) | 379,635 (88.6) | 393,427 (88.5) | 408,787 (89.3) | 427,037 (90.1) |
| 사 회 복 지 | 865,248 (39) | 160,575 (38.7) | 164,445 (38.4) | 169,387 (38.1) | 179,175 (39.1) | 191,666 (40.5) |
| 도 로 · 교 통 | 127,790 (5.8) | 25,810 (6.2) | 26,026 (6.1) | 26,993 (6.1) | 24,711 (5.4) | 24,250 (5.1) |
| 공 원 · 환 경 | 123,547 (5.6) | 21,825 (5.3) | 23,974 (5.6) | 25,272 (5.7) | 25,970 (5.7) | 26,506 (5.6) |
| 도 시 안 전 관 리 | 97,511 (4.4) | 17,126 (4.1) | 18,688 (4.4) | 19,834 (4.5) | 20,876 (4.6) | 20,987 (4.4) |
| 문 화 관 광 | 44,702 (2.0) | 8,103 (2.0) | 8,674 (2.0) | 8,783 (2.0) | 9,296 (2.0) | 9,846 (2.1) |
| 산 업 경 제 | 48,315 (2.2) | 9,709 (2.3) | 9,846 (2.3) | 9,987 (2.2) | 9,483 (2.1) | 9,290 (2.0) |
| 도 시 계 획 및 주 택 정 비 | 28,217 (1.3) | 3,593 (0.9) | 5,633 (1.3) | 5,981 (1.3) | 6,821 (1.5) | 6,189 (1.3) |
| 일 반 행 정 | 51,429 (2.3) | 10,001 (2.4) | 10,051 (2.3) | 10,133 (2.3) | 10,398 (2.3) | 10,846 (2.3) |
| 자 치 구 지 원 | 367,336 (16.5) | 67,735 (16.3) | 69,970 (16.3) | 73,141 (16.4) | 76,494 (16.7) | 79,996 (16.9) |
| 교 육 청 지 원 (법 정의 무) | 213,969 (9.6) | 39,660 (9.6) | 41,085 (9.6) | 42,678 (9.6) | 44,338 (9.7) | 46,208 (9.8) |
| 예 비 비 | 6,806 (0.3) | 1,847 (0.4) | 1,243 (0.3) | 1,238 (0.3) | 1,225 (0.3) | 1,253 (0.3) |
| 행정운영경비 | 111,734 (5.0) | 21,269 (5.1) | 21,997 (5.1) | 22,436 (5.0) | 22,860 (5.0) | 23,172 (4.9) |
| 재 무 활 동 | 133,011 (6.0) | 27,654 (6.7) | 26,803 (6.3) | 28,912 (6.5) | 26,136 (5.7) | 23,506 (5.0) |

※ () 안의 수치는 전체 순계규모 대비 분야별 자원배분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3~202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2.11), p.36 재구성

- 관련 법령에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예산편성 방향 수립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 지난 '22년도 예산안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2022~2026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 「2023~202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의견수렴의 경우에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8개 분야, 총 4문항에 대해 투표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총 1,477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189명이 관련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민주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위하여 '22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민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시민 의견 표본수(1,477명)가 과소하여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 기후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시정사업에 대해 예산의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도입된 제도로
 - 지난 '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22년 7월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22년도부터 기후예산제를 3개 부서(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 125개 사업(3,725억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기후예산제)'의 경우,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이 '21년 6월에 의결되었으나
 - 관련 법령 개정안은 '21년 7월에 발의된 이후, 진전이 없어 현재 예산안·결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어
 - 서울시는 관련 조례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의무 규정에 근거하여 '23년도 기후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는 '2023년 서울시 기후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22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예산 적용대상을 전체 실·본부·국의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여 총 207개 사업(3조 1,068억 7,600만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예산사업 3조 764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기금사업으로 304억 6,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7〉 기후예산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구분 | 2023년도 제출안 | | 2022년도 본예산 | |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 | |
|--------|------------|-------------|------------|-------------|----------------|---------|
| | 사업수 |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 사업수 |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 증감액 | 증감률 |
| 총계 | 207 | 3,106,876 | 122 | 328,076 | 2,778,800 | 847.0 |
| 예산 | 199 | 3,076,412 | 122 | 328,076 | 2,748,336 | 837.7 |
| 일반회계 | 77 | 529,547 | 115 | 283,882 | 245,665 | 86.5 |
| 기타특별회계 | 122 | 2,546,864 | 7 | 44,194 | 2,502,671 | 5,663.0 |
| 기금 | 8 | 30,464 | - | - | 30,464 | 순증 |

※ 행정안전부의 기준 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제외('22년도 3개 사업, '23년도 2개 사업)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4027 ('22.11. 8)

- 기후예산을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른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감축사업 1조 4,711억 9,700만원(85개 사업), 배출사업 1조 2,515억 7,200만원(95개 사업), 혼합사업 3,841억 700만원(27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8〉 기후예산 사업별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대상사업 | 2023년도 제출안 | | | 2022년도 본예산 | | |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 | |
|------|------------|-------------|-------|------------|-------------|-------|----------------|----------|
| | 사업수 |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 구성비 | 사업수 |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 구성비 | 증감액 | 증감률 |
| 계 | 207 | 3,106,876 | 100.0 | 122 | 328,075 | 100.0 | 2,778,800 | 847.0 |
| 감축사업 | 85 | 1,471,197 | 47.3 | 120 | 326,065 | 99.4 | 1,145,132 | 351.2 |
| 배출사업 | 95 | 1,251,572 | 40.3 | 2 | 2,010 | 0.6 | 1,249,561 | 61,154.9 |
| 혼합사업 | 27 | 384,107 | 12.4 | - | - | - | 384,107 | 순증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4027 ('22.11. 8)

□ 기후예산에 대한 조직별 편성 현황의 경우, 20개 실·본부·국에 207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 도시교통실 28개 사업(8,672억 700만원), 도시기반시설본부 7개 사업(6,333억 2,200만원), 주택정책실 23개 사업(3,198억 900만원), 기후환경본부 36개 사업(3,153억 5,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기후예산제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달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체계 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이 투입되는 전 분야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기후예산서 작성 및 평가를 위한 대상·범위 확정, 성과지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량 계량방법 등 다수의 선결 사안이 있어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39〉 실·본부·국별 기후예산 편성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실·본부·국명 | 2023년도 제출안 | | | 2022년도 본예산 | | |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 | |
|-----------|------------|-------------|-------|------------|-------------|------|----------------|-------|
| | 사업수 |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 구성비 | 사업수 |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 구성비 | 증감액 | 증감률 |
| 계 | 207 | 3,106,877 | 100.0 | 122 | 328,076 | 100 | 2,778,802 | 847.0 |
| 디자인정책관 | 1 | 1,578 | 0.1 | - | - | - | 1,578 | 순증 |
| 여성가족정책실 | 7 | 59,773 | 1.9 | - | - | - | 59,773 | 순증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6 | 118,175 | 3.8 | - | - | - | 118,175 | 순증 |
| 미래청년기획단 | 1 | 15,300 | 0.5 | - | - | - | 15,300 | 순증 |
| 소방재난본부 | 3 | 43,140 | 1.4 | - | - | - | 43,140 | 순증 |
| 경제정책실 | 7 | 63,242 | 2.0 | - | - | - | 63,242 | 순증 |
| 복지정책실 | 11 | 66,004 | 2.1 | - | - | - | 66,004 | 순증 |
| 도시교통실 | 28 | 867,207 | 27.9 | - | - | - | 867,207 | 순증 |
| 문화본부 | 15 | 95,074 | 3.1 | - | - | - | 95,074 | 순증 |
| 기후환경본부 | 36 | 315,358 | 10.1 | 72 | 252,068 | 76.8 | 63,290 | 25.1 |
| 평생교육국 | 3 | 14,235 | 0.4 | - | - | - | 14,235 | 순증 |
| 관광체육국 | 4 | 17,521 | 0.6 | - | - | - | 17,521 | 순증 |
| 시민건강국 | 3 | 16,954 | 0.5 | - | - | - | 16,954 | 순증 |
| 안전총괄실 | 20 | 283,574 | 9.1 | - | - | - | 283,574 | 순증 |
| 주택정책실 | 23 | 319,809 | 10.3 | - | - | - | 319,809 | 순증 |
| 균형발전본부 | 3 | 58,112 | 1.9 | - | - | - | 58,112 | 순증 |
| 푸른도시여가국 | 24 | 85,801 | 2.8 | 42 | 62,328 | 19.0 | 23,473 | 37.7 |
| 물순환안전국 | 2 | 8,200 | 0.3 | 8 | 13,680 | 4.2 | △5,479 | △40.1 |
| 도시기반시설본부 | 7 | 633,322 | 20.4 | - | - | - | 633,322 | 순증 |
| 한강사업본부 | 3 | 24,498 | 0.8 | - | - | - | 24,498 | 순증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4027 ('22.11. 8)

7)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2023~2027)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21년 4월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①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②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③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④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만 기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 또한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 기재하고 있는 바,
 - 현행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기준 에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 수정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서울시는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3~2027 서울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3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별건 인쇄하여 제출한 바,
 - 소관부서가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만 명시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 이미 지난 '21년 4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23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국 자산관리과가 이미 지난 7월 6일,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회 자료」에 “매년 5회계연도 이상 중기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으로 적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관련 법령으로 정하여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이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2)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1)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력 (사업별설명서 p.19)

- 동 사업은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 및 사업 전반의 추진방향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2,900만원이 포함된 5,4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따르면 사무관리비 2,900만원은 약자동행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1,600만원)과 회의 운영비(1,300만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표 2-4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29 |
| | ○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 | | 16 |
| | - 본위원회 200,000원*30명*2회 | | | | 12 |
| | - 분과위원회 200,000원*5명*4회 | | | | 4 |
| | ○ 회의 운영비 및 자료 제작 등 | | | | 13 |
| | - 본위원회 운영비 및 자료제작 등 4,000,000원*2회 | | | | 8 |
| | - 분과회의 운영비 및 자료제작 등 1,300,000원*4회 | | | | 5 |

-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약자동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가 없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2,900만원)는 근거 조례가 마련된 이후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가칭)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를 '23년 2월중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先 예산 편성, 後 근거 조례 마련' 사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른바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편성사례가 될 수 있어 소요예산 승인여부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사업별설명서 p.35)

- 동 사업은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사업 추진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200만원을 포함한 1억 4,6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중 사무관리비(1억 200만원)와 포상금(3,400만원)은 '22년 8월,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신설하여 신규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사업 추진 우수기관을 포상하고자 지출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표 2-4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
| 계 | | | | 146 | | |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102 | | | | |
| | ◦ 기관별 성과관리 점검 등 | | | 58 | | | | | |
| | ◦ 자치구 및 관련 기관 협력 모델 발굴 추진 | | | 44 | | | | | |
| 포 | 상 | | | 금 | 34 | | | | |
| | ◦ 우수기관 포상 | | | 34 | | | | | |
| 시 | 책 | 추 | 진 | 업 | 무 | 추 | 진 | 비 | 10 |
| | ◦ 약자와의 동행사업 의제 발굴 | | | 10 | | | | | |

○ 그러나 포상금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②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③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④ 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⑤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이 지출계획하는 포상금의 경우, ⑤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의 성격일 수밖에 없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지난 8월,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신설하고, '23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및 목표를 “약자와의 동행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기반 마련”으로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단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련 조례가 미비되어 있어 조례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업별설명서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인 (가칭) 「서울특별시 약자 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를 '23년 2월중 제출할 예정으로 기재하고 있어 동 소요예산이 편성요청한 포상금의 경우에도 관련 조례가 의결된 이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절차가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여성가족정책실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328)

- 동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하고 진단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민간위탁금(11억 8,800만원)과 민간위탁사업비(3억 1,000만원)를 편성요청한 것임

〈표 2-4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계 | | | | 1,499 | |
| 민 | 간 | 위 | 탁 | 금 | 1,188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센터장 - 팀장급 - 매니저 - 행정인력 - 제수당 ◦ 사업비 - 찾아가는 발달지원 서비스(조기 발견 및 진단) - 가정양육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조기 발견 및 진단) - 영유아 가구 맞춤 검사·상담 서비스(야간·휴일) - 애착, 놀이 단체 치료 등 ◦ 관리운영비 - 출장여비 - 상담활용 교재교구 | | 706 | |
| | | - 자산취득비 | | 34 | |
| | | - 자문비 | | 9 | |
| | | - 교육훈련비 | | 3 | |
| | | - 관리비 | | 1 | |
| | | - 일반 수용비 | | 28 | |
| | | - 특근매식비 등 | | 14 | |
| 민 | 간 | 위 | 탁 | 사 | 310 |
| | | 업 | 비 | | 310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수선비 | | 310 | |

- 민간위탁금중 편성요청된 자산취득비(3,400만원)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구입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과목인 민간위탁사업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퇴소 이후 원스톱 일상교육 지원

(사업별설명서 p.503)

- 동 사업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편성한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서울시 거주 보호종료 전 1년 이내 200명 내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소개하고, 경제·법률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고자 민간위탁금 1억 8,1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여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으로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확인되나, 관련 조례는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위탁 금을 편성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기준에도 신규 위탁사무의 경우 예산편성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음
- 특히, 관련 조례의 ①항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2조를 통해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바,
 - 사업부서는 지난 '20년 12월, 관련 법령이 가결된 바 있고, 「서울특별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중 위·수탁사무에 포함된 사무로써 신규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일뿐 사업내용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지난 '20년 12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 '23년도 예산안중 청년자율예산으로 신규 편성요청 되는 사안까지 미리 예상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난 11월 1일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동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를 일체 표시하지 않았으나, 11월 22일 오류기재된 내역을 수정한 바, 예산안 제출이후 20여일이 경과되도록 사업 부서가 오류기재된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p.888)

- 동 사업은 1인가구와 함께 병원을 동행해주는 ‘당일 긴급대응 서비스’와 ‘퇴원 후 단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정책적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8억 1,1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

〈표 2-4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
| | 민 | 간 | 경 | 상 | 사 | 업 | 보 | 조 | 1,811 |
| |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 | | | | | | | 1,811 |

-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아울러 서울시의 기준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퇴원한 1인가구에게 단기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어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미리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23년도 예산안의 제출시점('22.11. 1)을 경과한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3) 노동 · 공정 · 상생정책관

□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사업별설명서 p.169)

- 동 사업은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하고, 명소상권 강화를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14억 6,100만원이 포함된 75억 3,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44〉 소요예산안중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1,461 |
| | ① 명소상권 강화지원 - 200,000,000원×5개소 | | | | 1,000 |
| | ② 지역상권위원회 운영 - 200,000원×11명×15회 | | | | 33 |
| | ③ 로컬브랜드 상권 사업 홍보 - 150,000,000원 | | | | 150 |
| | ④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 108,100,000원 | | | | 108 |
| | ⑤ 지역상생구역 업종제한 조정 가이드 컨설팅 용역 - 70,000,000원 | | | | 70 |
| | ⑥ 로컬크리에이터 후속 컨설팅 - 100,000,000원 | | | | 100 |

-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중 ①명소상권 강화지원명소상권 강화지원(10억원), ②지역상권위원회 운영(3,300만원), ③로컬브랜드 상권 사업 홍보(1억 5,000만원)의 경우,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료되어 사무관리비 편성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 ④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1억 800만원), ⑤지역상생구역 업종제한 조정 가이드 컨설팅 용역(7,000만원), ⑥로컬크리에이터 후속 컨설팅(1억 5,000만원)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컨설팅 용역으로 사료되는 바,

-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편성하여 지출하기 위한 예산과목에 해당되나 전문적인 컨설팅 용역까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편성 및 지출사례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로 예시하여 회신한 사례가 있어
- 동 소요예산의 사무관리비중 투자·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컨설팅 비용을 단순용역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연구용역과 밀접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무관리비가 아닌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디지털정책관

□ 서울서베이 (사업별설명서 p.89)

- 동 사업은 서울시 도시정책지표(100개 지표) 조사 및 분석, 패널기반 서울 서베이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를 **사무관리비**(21억 4,400만원)로 편성하고, 서울 통계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1억 5,100만원)도 편성요청한 것임
-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 21억 4,400만원은 민간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①서울서베이 현장조사(19억 6,000만원), ②서울서베이 설계 분석 사업(1억 8,400만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되나
-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에는 일반용역을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으로 정하고 있어 **사무관리비** 편성을 통해 전문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세출과목의 부적절한 편성사례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지난 '21년 9월, 행정안전부는 일반운영비의 경우, 지자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기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사무관리비**중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의 범위에 속해야 할 것”으로 회신하고, “무인 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로 예시하여 회신한 바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회신결과를 고려하면, 민간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추진 계획한 ①서울서베이 현장조사(19억 6,000만원), ②서울서베이 설계 분석 사업(1억 8,400만원)은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과는 용역의 내용이나 용도가 구분되어 **사무관리비**로 편성·지출하는 경상적 활동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지난 '2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일 사유로 지적된 바 있음에도 예산편성기준을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재발된 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부서에 대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계 | | | | 2,296 |
| 사 무 관 리 비 | | | | 1,96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서베이 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비 - 유인물비 - 조사경비(면접원 수당) - 자료처리비(입력, 검증 등) - 회의비 - 답례품 등 - 교통통신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 서울서베이 설계 분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비 - 유인물비 - 재료비 - 교통통신비 - 조사비 등 - 회의비 | | | | 58 |
| | | | | 164 |
| | | | | 14 |
| | | | | 668 |
| | | | | 78 |
| | | | | 4 |
| | | | | 734 |
| | | | | 14 |
| | | | | 50 |
| | | | | 51 |
| | | | | 178 |
| | | | | 184 |
| | | | | 99 |
| | | | | 53 |
| | | | | 2 |
| | | | | 2 |
| | | | | 11 |
| | | | | 15 |
| 공 공 운 영 비 | | | | 15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통계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통계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서울통계통합플랫폼 상용SW 유지관리 | | | | 151 |
| | | | | 109 |
| | | | | 42 |

□ **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사업별설명서 p.218)

- 동 사업은 스마트 불편신고 앱(AOS, IOS)과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연구용역비** 4,400만원을 포함한 1억 5,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4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계 | | | | 159 | |
| 사 | 무 | 관 | 리 | 비 | 1 |
| | ○ 평가위원 자문 수당 200,000원*8명*1회 | | | 1 | |
| 공 | 공 | 운 | 영 | 비 | 113 |
| |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유지관리 113,750,000원 | | | 113 | |
| 연 | 구 | 용 | 역 | 비 | 44 |
| |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44,000,000원 | | | 44 | |

- 관련 법령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고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연구용역비**로 편성요청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보화사업에 해당되는 바, 지난 '22년 9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적정”으로 통보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 금년도 예산안중 주택정책실 **서울주거포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및 미래청년기획단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영향평가 추진의 소요예산을 **전산개발비**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동 사업중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소요예산 4,400만원은 전산개발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47〉 최근 3년간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련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사 업 명 | 통계목 | 예산액 |
|--------|------------------------|-------|-----|
| 2021년도 |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산개발비 | 52 |
| 2022년도 | 서울 청년포탈(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 전산개발비 | 67 |
| 2023년도 |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 전산개발비 | 92 |
| 2023년도 |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운영 | 전산개발비 | 111 |
| 2023년도 | 서울주거포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산개발비 | 64 |
| 2023년도 | 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 연구용역비 | 44 |

5) 미래청년기획단

□ 서울시 청년콧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35)

- 동 사업은 사무관리비 5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 요식업 분야 창업 지원 및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임

〈표 2-4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사 | 무 | 관 | 사 | 리 | 비 | 541 |
| | ○ 임차료 5,280,000원*12개월 | | | | | 63 |
| | ○ 전문가 회의수당 등 200,000원*8명*5회 | | | | | 8 |
| | ○ 일반용역비 470,593,000원*1식 | | | | | 470 |

- 산출내역에 따르면 사무관리비중 일반용역비(4억 7,000만원)를 편성하고, 청년 요식업자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용도로 1억 7,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확인되는 바,
 - 관련 법령 등 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를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관련 절차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2-49〉 일반용역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541 |
| 일 | 반 | 용 | 역 | 비 | 470 |
| | ○ 노무비 | | | | 155 |
| | - 센터장 | | | | 63 |
| | - 프로그램 매니저 | | | | 37 |
| | - 운영관리 직원 1 | | | | 16 |
| | - 운영관리 직원 2 | | | | 7 |
| | - 공간관리 직원 | | | | 22 |
| | - 공유주방 직원 | | | | 9 |
| | ○ 경비 | | | | 214 |
| | - 보험료 | | | | 16 |
| | - 운영비 | | | | 25 |
| | - 창업교육, 지원 | | | | 170 |
| | - 홍보 | | | | 3 |
| | ○ 이윤, 부가세 등 | | | | 100 |

- 사업부서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만으로 한정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수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 안내서」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재정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 지원목적에 따라 금융, 기술, 창업, 인력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창업”의 경우에는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화, 창업공간 지원 등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 안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지원사업을 ①신설하거나 ②기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대해 사전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 청년 요식업 창업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비창업자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설” 사례에 포함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를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어 관련 협의를 완료한 이후 소요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는 “(미래청년기획단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서울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동 협의절차의 중요성을 전파하여 이행을 촉구하려면 서울시 전체 창업 관련 사업에 대한 지적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바,

- 사업부서의 의견 또한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가 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사업의 중복성 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제도시행의 취지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료되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를 필요한 모든 대상사업과 개별 사업에 대한 이행여부가 전수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기획조정실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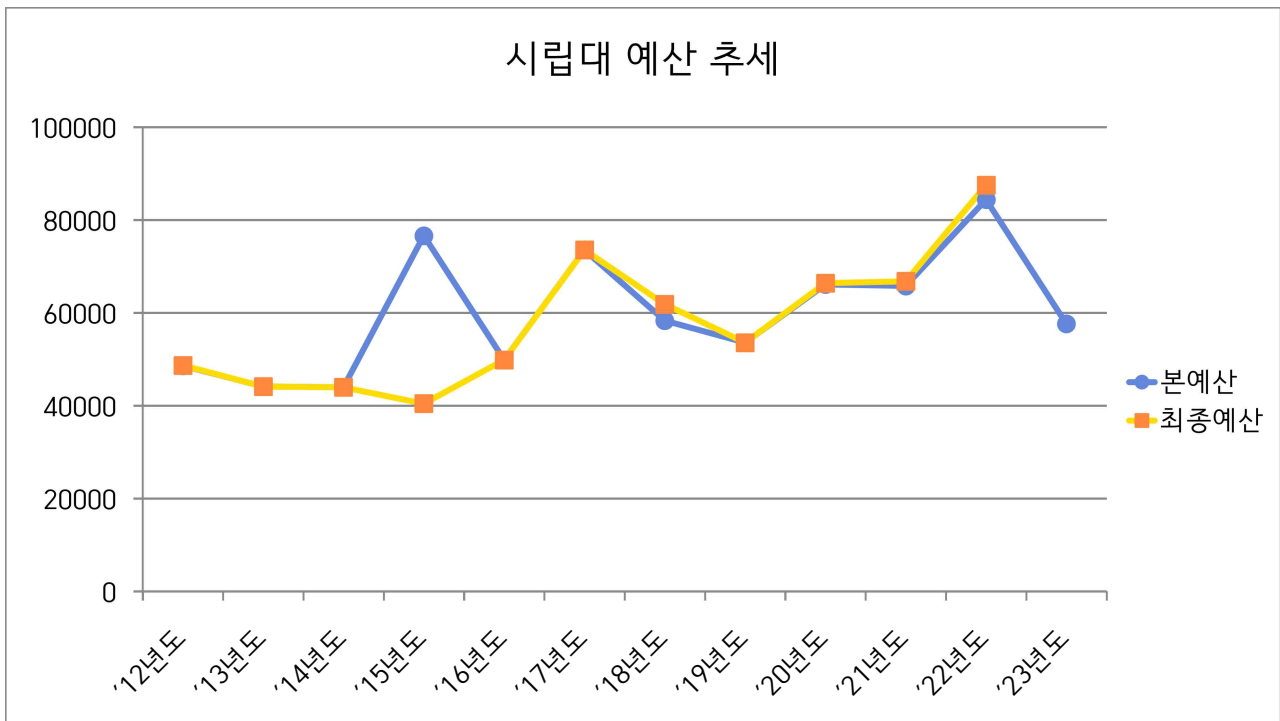
- 동 사업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공립대학운영비 576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시립대는 서울시의 사업소로서 세입·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난 '15년 3월, 관련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16년도부터 서울시는 공립대학운영비를 편성하여 시립대의 대학회계로 전출하고 있음
 - '23년도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875억 3,300만원)보다 △298억 6,800만원 감액된 576억 6,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이 금년도보다 △269억 3,600만원 감액되어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감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관련 법령은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나,
 - 지난 '12년도부터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학기당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어 등록금 수입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서울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립대학운영비를 편성하여 대학회계로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시립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매년 증감폭은 있으나, 대학회계 시행 이전부터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2회계연도의 경우, 미래융합관 건립이라는 증액요인이 있지만, 최종예산 기준 875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공립대학운영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2-50〉 시립대 지원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 본예산 | 최종예산 | 증감 | 년도 | 본예산 | 최종예산 | 증감 |
|---------------------|--------|--------|---------|------|--------|--------|-------|
| 2012 | 48,625 | 48,728 | 103 | 2018 | 58,341 | 61,887 | 3,546 |
| 2013 | 44,150 | 44,150 | 0 | 2019 | 53,616 | 53,616 | 0 |
| 2014 | 43,986 | 43,986 | 0 | 2020 | 66,133 | 66,433 | 300 |
| 2015 ^{주1)} | 76,659 | 40,463 | △36,195 | 2021 | 65,819 | 66,819 | 1,000 |
| 2016 ^{주2)} | 49,889 | 49,889 | 0 | 2022 | 84,411 | 87,533 | 3,122 |
| 2017 | 73,566 | 73,566 | 0 | 2023 | 57,655 | - | - |

※ 주1) 서울시 실·본부·국 조직의 일부인 사업소로서 세부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주2) 대학회계 시행에 따른 공립대학운영비로 단일 편성



- 더욱이 현행 관련 법령에는 국립대학(공립대학 포함)의 장은 해당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 시립대의 경우, 489억원이 투입된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시에도 발전기금 35억원만 동문화비 등의 자체재원으로 내부 시설을 조성한 바 있고, 미래융합관 등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재정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적 측면에서 서울시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추진중인 각종 제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인구변화 대응 및 도시경쟁력 제고** (사업별설명서 p.90)

- 동 사업은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영향평가 용역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①인구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구변화대응 업무 추진(8,000만원)과 ②도시경쟁력 포럼 운영 등(2,000만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1〉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100 |
| | ○ 인구변화대응 업무 추진 | | | | 80 |
| |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자문회의 등 운영 | | | | 10 |
| | - 인구영향평가 추진 | | | | 70 |
| | ○ 도시경쟁력 지수 관리 | | | | 20 |
| | - 도시경쟁력 평가자료 구입 및 분석 | | | | 10 |
| | - 도시경쟁력포럼 운영 및 정책 자문 | | | | 10 |

- **인구영향평가 추진**의 경우, 서울시 정책 시행이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7,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열거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과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써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 하여도 단순히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연구용역성 경비까지 **사무관리비**로 편성·집행하는 예산과목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동 사업내용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지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써 제출된 **사무관리비**중 관련 예산(7,0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서울시 조례는 용역 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학술용역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무관리비중 용역비용(7,000만원)을 삭감하고, 학술용역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재원을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별설명서 p.195)

- 동 사업은 '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관련 법령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자에게 답례품 등을 제공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타보상금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4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계 | | | | 184 |
| 사무관리비 | | | | 56 |
| | | ◦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제공 | | 15 |
| | |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 11 |
| | | ◦ 고향사랑기부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 | 5 |
| | |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추진 | | 25 |
| 기타보상금 | | | | 120 |
| | | ◦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제공 | | 120 |
|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 | 8 |
| | |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 8 |

- '23년도부터 시행 예정된 관련법령은 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도 지난 10월,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12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확인됨
- 다만, 관련법령은 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관련 조례안이 의결되어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칭)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기금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은 기금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답례품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한도(100분의 30)내에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이 기타보상금(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지급하고자 하나 해당 답례품이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예산은 ①조례 제정, ②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등의 절차가 이행된 이후 기금재원을 통해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이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토지자원 DB의 효율적 관리·운영 (사업별설명서 p.216)

- 동 사업은 공공토지자원 DB 운용 현황 분석 및 효과적인 정보제공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무관리비 1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53〉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100 |
| | | | ○ 공공토지자원 DB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구상 용역 | | | 100 |
| | | | - DB 운용 현황 분석 및 효과적인 제공 방안 마련 | | | 100 |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명시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등의 용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연구용역성 경비까지 사무관리비로 편성·집행하는 예산과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동 사업과 같은 연구용역의 경우, 실제로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학술용역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내용은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편이가 우선시된 ‘우회편성’ 사례로 사료되어 사무관리비로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은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결

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이행에 한계가 있는 바, 사무관리비로 편성요청된 용역비용(1억원)을 삭감하고, 학술용역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재원을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사업별설명서 p.243)

- 동 사업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을 수행하고자 6억 1,1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중 5억 4,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54〉 소요예산안중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544,400 |
| | ①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8명×6회 | | | 7,200 |
| | ②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서면 심사수당 - 100,000원×8명×6회 | | | 4,800 |
| | ③ | 만족도 조사용역 제안서 평가 심사수당 - 150,000원×10명×1회 | | | 1,500 |
| | ④ | 만족도 조사 용역 보고회 참석수당 - 150,000원×2명×3회 | | | 900 |
| | ⑤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 202,000,000원 | | | 202,000 |
| | ⑥ | 출연기관 만족도 조사용역 - 224,000,000원 | | | 224,000 |
| | ⑦ | 투자기관 재정분석 및 컨설팅 용역 - 44,000,000원 | | | 44,000 |
| | ⑧ |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용역 - 20,000,000원×3개소 | | | 60,000 |

-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중 ①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720만원), ②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서면심사수당(480만원), ③만족도 조사용역 제안서 평가 심사수당(150만원), ④만족도 조사 용역 보고회 참석수당(90만원)의 경우,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료되어 사무관리비 편성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무관리비로 편성요청한 사업내용중 ⑤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2억 200만원), ⑥출연기관 만족도 조사용역(2억 2,400만원), ⑦투자기관 재정분석 및 컨설팅 용역(4,400만원), ⑧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용역(6,000만원)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 행정안전부가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로 예시 사례를 회신한 바 있어,
- 사무관리비의 지출용도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 하여도 투자·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까지 무인경비나 전기안전관리대행 등과 유사한 범주의 용역으로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투자·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컨설팅 비용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소액에 해당되나 단순용역보다는 연구용역과 밀접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무관리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소방재난본부

□ 소방활동지원 (사업별설명서 p.64)

- 동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기본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322억 3,8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소요예산중 '배상금등'은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제소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22년 6월,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100억 7,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5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계 | | | | 32,238 |
| 사 | 무 | 관 | 리 비 | 4,025 |
| | ◦ | 비상출동대기 급식지원 | | 3,701 |
| | ◦ |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 | 14 |
| | ◦ | 소방공무원 체육행사비 | | 297 |
| | ◦ | 관사 임차료 | | 12 |
| 공 | 공 | 운 | 영 비 | 1,188 |
| | ◦ | 관사 난방료(도시가스) | | 1,188 |
| 특 | 정 | 업 | 무 경 비 | 18,135 |
| | ◦ | 방호활동비 | | 14,930 |
| | ◦ | 대민활동비 | | 39 |
| | ◦ | 경호활동비 | | 59 |
| | ◦ | 구조구급활동비 | | 2,892 |
| | ◦ | 특사경수사활동비 | | 213 |
| 배 | 상 | 금 | 등 | 10,077 |
| | ◦ |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전출, 퇴직자) | | 10,077 |

- 지난 6월 확정된 소송 결과에 따라 화해자, 미제소자 등(5,882명)에게 지급이 필요한 수당은 519억원으로 그중 301억원은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하였으며 '23년도 예산안에는 미지급 수당(퇴직 및 전출자) 100억 7,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56〉 예산안중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출과목 | 소요예산 | 2023 | 2022 | 부족분 | 비고 |
|--------|------|--------|--------|--------|-----------------------|-----------|
| | | (A) | 예산안 | 제2회 추경 | | |
| 인력운영비 | 보수 | 35,055 | - | 21,793 | 13,262 ^{주1)} | 재직자 |
| 소방활동지원 | 배상금등 | 16,806 | 10,077 | 8,282 | △1,553 ^{주2)} | 퇴직, 전출자 등 |

※ 주1) '22년도 인력운영비(보수) 집행 잔액으로 지급 예정
 주2) 소송중인 퇴직 및 전출자의 배상금 일부 편성

- 아울러 일부 소송(공동근무 수당분)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항소('22. 6. 9) 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나, 타 시·도의 유사 사례가 대법원에서 인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예산 부담(105억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표 2-57〉 소송자에 대한 수당 지급 소요액

(단위: 백만원 / 기준일: 2022.11.30)

| 구분 | 소송자 | |
|-----|-------|--------|
| | 인원 | 금액 |
| 계 | 1,248 | 10,467 |
| 재직자 | 949 | 7,961 |
| 퇴직자 | 254 | 2,302 |
| 전출자 | 45 | 204 |

8) 경제정책실

□ 사무관리비의 편익적 편성

-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89)
- 로봇 아카데미 운영 (사업별설명서 p.93)
-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109)
-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운영 (사업별설명서 p.228)
-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사업별설명서 p.403)

- 행정안전부의 기준 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드론산업 활성화**를 포함한 5개 계속사업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를 편성요청한 것임
- 그러나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과목에 해당되나, **사무관리비**는 지자체의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경비인 바,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의 범위라고 회신한 바 있어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상적 활동에 한정하여 편성·지출되어야 하는 예산과목으로 판단됨
- **드론산업 활성화**는 **사무관리비** 5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사업별설명서와 지난 '20년 12월 수립된 방침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드론 아카데미 운영업체를 공모하여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냉온수기 소독처럼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역의 범주와는 구분되는 사안으로 판단됨

- **로봇 아카데미 운영**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 7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사업별설명서에는 '23년 1월 운영업체를 공모하여 '23년 2월부터 3월까지 업체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서울 로봇 아카데미 운영 용역 추진계획」 에도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사업에 편성된 사무관리비가 단순히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2-58〉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드론 산업 활성화 | | | | 500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아카데미 운영 용역 인건비 (2,000,000원×6명×5월) ◦ 드론 아카데미 교육장비비 ◦ 드론 아카데미 강사료 (350,000원×25일×4회×2명) ◦ 드론 아카데미 행사 및 홍보비 ◦ 드론 아카데미 일반관리비 및 이윤 ◦ 드론 아카데미 제안서 평가 및 자문 수당 (200,000원×10명×1회) | | | 60 198 70 99 71 2 |
| 로봇 아카데미 운영 | | | | 700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용 로봇장비 임차 (2,000,000원×8종×8개월) ◦ 용역인건비 (3,500,000원×4명×10월) ◦ 강사비 (2,000,000원×8명×10월) ◦ 보조강사비 (600,000원×4명×10월) ◦ 교육개발비 및 재료비 ◦ 시설관리운영비 ◦ 교육환경 구축비 ◦ 회의비, 교육지원비 등 ◦ 홍보비 ◦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 제안서 평가 위원 수당, 자문 등 (200,000원×10명×2회) | | | 128 140 160 24 47 40 20 20 15 102 4 |

○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운영**의 경우, 사무관리비 7억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으로 사업별설명서에는 '23년 1월 용역사 공모 및 선정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운영계획」 에도 (주)인크루트 등의 전문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료되며

-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 7억원을 편성요청한 계속 사업이나,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사무관리비**의 직접지출이 아닌 위탁이나 대행에 유사한 형태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행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의 적정 편성사례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2-59〉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운영 | | | | 700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컨설턴트 인건비(8명) ◦ 구직자 기업탐방·직무체험 ◦ 매칭 프로그램(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 일자리박람회 현장상담실 운영 등 | | | 308 250 42 100 |
|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 | | | 700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교류패션쇼(여성복, 남성복) | | | 350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30,000,000원×2) - 무대연출 및 조성비 (100,000,000원×2) - 패션쇼 기획 운영 (30,000,000원×2) - 일반 관리비 등 (15,000,000원×2) | | | 60 200 60 30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대표 브랜드 글로벌 육성지원 | | | 350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전시관 연출 및 조성비 - B2B 세일즈 운영 - 현장 운영 관리 - 일반 관리비 등 | | | 25 180 100 30 15 |

-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의 경우에는 소요예산 16억 100만원중 **사무관리비** 13억 2,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계속사업이나,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중 “제안서 평가 회의수당”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9.6%, 13억 2,100만원이 운영기관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과목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위탁이나 대행에 가까운 사업형태로서 이른바 ‘유사 용역’에 **사무관리비**를 계속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된 편성사례인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60〉 소요예산안중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1,326 |
| | ◦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 | | | 1,321 |
| | - 인건비 | | | | 231 |
| | - 운영비 | | | | 823 |
| | ◦ 제안서 평가 회의수당 등 | | | | 5 |

- 다만, **드론산업 활성화**를 포함한 5개 세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내용을 수행하는 사업인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는 예산과목으로 행정안전부도 이미 지난 '21년 7월,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가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예시한 바,
 -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이른바 ‘유사 용역’에 대해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사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갖는 의미를 도외시하는 편성사례로 판단됨

9) 복지정책실

□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70)

- 동 사업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 유공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 | | 359 |
| | ○ 인건비 | | | 207 |
| | - (법무) 변호사 | | | 63 |
| | - (일반) 직원 | | | 144 |
| | ○ 운영비 | | | 17 |
| | - 사무기기(PC, 복합기 등) 물품구입 | | | 15 |
| | - 공과금 등 간접비용 | | | 2 |
| | ○ 사업비 | | | 135 |
| | - 전문 심리상담 사업(대상자 본인 등) | | | 54 |
| | -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 | | 20 |
| | - 오픈 클래스(강연) | | | 16 |
| | - 보훈선양 콘텐츠 제작(영상, 리플릿 등) | | | 20 |
| | - 보훈선양 토론회, 포럼, 기념식 등 개최 | | | 20 |
| | - 사례집, 안내서 발간 등 | | | 5 |

- 지난 10월 제정된 관련 조례는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를 지원하고자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동 조례 제8조는 상담센터의 운영을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상담센터 운영을 서울시 복지재단에 대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이 상담센터 운영을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로부터 대행사무를 수탁하게 될 서울시복지재단의 설립근거인 관련 법령 제4조 “재단의 사업”에는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 유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탁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현행 관련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사안의 경우, 위탁사무를 출연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관련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범위를 명시한 관련 조례에는 동 위탁사무를 수행할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자회사 규정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아닌 포괄적인 규정만 있는 상태’로 사료되는 바,
- 관련 법령에 비추어 현행 관련 조례 제4조 “재단의 사무”만으로 수탁가능한 사안인지, 조례 개정을 통해 “재단의 사무”를 구체화시킨 이후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통계목 수정이 필요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시비) (사업별설명서 p.82)
- 사회복지종사자 마음이음 지원 (사업별설명서 p.86)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중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이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시비)**은 사회복지사업보조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①인건비(4,465만원), ②운영비 및 사업비(9,000만원), ③대체인력 인건비(3억 9,600만원)를 편성하고,

○ **사회복지종사자 마음이음 지원**의 경우에는 편성요청된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원에 대해 ①심리지원 상담 및 의료비지원(1억 5,100만원), ②홍보비(300만원), ③회의비(600만원), ④전담인력 인건비(3,700만원), ⑤공공요금, 여비 등 운영비(2,239만원)를 편성한 것으로

- 운영비성 경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적정편성 되어야 할 것인 바,

○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주된 내용이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부득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운영비성 경비를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복지정책실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경우에는 '22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한 인건비, 운영비, 복지포인트 등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 실·본부·국이 통일된 예산과목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0) 도시교통실

□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추진 (사업별설명서 p.72)

-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추진은 사무관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을 검증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표 2-6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250 |
| | | | | ○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 250 | |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용역의 과업 주요 내용이 “독자적 서버구축, 분석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정산·배분 시스템 검증”이고, 지난 '20년도의 경우, 해당 용역입찰 공고 시, ‘학술, 연구용역’ 코드를 등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시한 사실이 있어 동 용역이 단순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일반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관련 법령 등은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계약의 방법, 제한사항 등을 법령으로써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부서는 해당 용역이 단순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일반용역이므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이라 하나, 입찰공고 할 때

에는 ‘학술, 연구용역’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동 사무관리비가 사실상 연구용역성 경비임을 입증하는 사례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용역비는 학술용역심의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학술용역 사전심사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안이 이미 시의회에 제출된 현시점에 비추어 사전절차 이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는 사무관리비 편성사례가 사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우회 편성한 사례로 오해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기후환경본부

□ 제로웨이스트 홍보관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430)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성동구 소재 서울새활용플라자내에 제로웨이스트 모델하우스를 조성·운영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억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240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공간 기획 및 조성(철거비 포함) - 100,000,000원×1식 ○ 체험프로그램 운영 - 30,000,000원×1식 ○ 운영 인건비(9월) - 20,500,000원×2인 ○ 홍보비 - 30,000,000원×1식 ○ 이윤, 일반운영비, 부가세 등 - 39,000,000원×1식 | | | | 100 |
| | | | | | | 30 |
| | | | | | | 41 |
| | | | | | | 30 |
| | | | | | | 39 |

- 사업별설명서에는 33㎡ 규모의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이후인 '23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이 사무관리비로 지출가능한 것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명시한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라는 점에서 제로웨이스트 홍보관 조성 및 운영하는 용역의 댓가를 지급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의 적정 편성 및 지출사례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바,
-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등의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위탁이나 대행 등의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2) 문화본부

□ 사무관리비의 편익적 편성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사업별설명서 p.72)
-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 (사업별설명서 p.77)
-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사업별설명서 p.209)

○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명시한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로써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는 예산과목임

〈표 2-6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서울생활문화센터 | 서교 | 운영 | 563 |
| | ○ 사무관리비 | | | 100 |
| | - 교통유발부담금 1회 | | | 9 |
| |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대행용역 | | | 554 |
| | 서울생활문화센터 | 신도림 | 운영 | 282 |
| | ○ 사무관리비 | | | 282 |
| | -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대행용역 | | | |
| | 노들섬 | 문화명소 | 조성사업 | 3,196 |
| | ○ 사무관리비 | | | 3,196 |
| | - 전문가 자문수당 | | | 10 |
| | - 교통유발부담금 | | | 10 |
| | - 노들섬 운영대행용역 | | | 3,046 |
| | - 노들섬 재구조화 기본구상안 3D모델링 작업 | | | 10 |
| | - 문화예술중심 디자인도시 홍보 | | | 120 |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서울생활문화센터 신도림 운영**은 기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23년도부터 “시직영(운영대행용역)”으로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를 편성요청한 것으로
 - 민간위탁 수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1년 단위로 새로운 전문운영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시직영 운영대행용역’으로 기존 위탁운영과 대행운영의 차이점이 불명확한 것으로 사료됨
 - 물론 회계적 측면에서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의 교부 및 정산 시기와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예산의 통제적 측면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위탁운영성 경비를 편성하는 것은 스스로 회계적 사각지대를 만드는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어 위탁운영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의 경우, '22년 4월, 기존 민간위탁사무에서 시직영으로 전환하고, '23년도 예산안중 **사무관리비**로 “**노들섬 운영대행용역**” 30억 4,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30억원이 넘는 대행용역이 행정안전부의 기준 이 명시한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적정규모인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출자·출연기관의 ‘조례상 고유사업’에 대해 위탁금 추가 편성**

-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사업별설명서 p.176)
- 연극창작시설 운영 (사업별설명서 p.285)
-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323)

○ 동 사업은 소요예산중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단체간 예술단 교류공연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 **연극창작시설 운영**은 성북구 소재 연극창작지원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프로그램 및 공연기획 등을 '23년 6월부터 '25년 12월까지 서울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9,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고,
-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운영**의 경우에는 '23년 6월 개관예정인 강북구 소재 동북권 예술교육센터에 대한 공연(연극, 뮤지컬) 중심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23년 5월부터 '25년 12월까지 서울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편성요청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 출연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출연금 편성이 필요한 사안인지 심도있게 심사하는 절차가 있으나, 출연기관에 출연금이 아닌 위탁운영비성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사실상 우회하는 편성사례라 할 것인 바,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부득이한 특수사례에 대해 단기간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편성요청한 **연극창작시설 운영과 동북권 예술교육센터 운영**의 경우, 해당 시설을 '23년도에 한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닌 '23년 5~6월부터 '25년 12월까지 출연기관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수 년간 장기간에 걸쳐 출연기관에 위탁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아닌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서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을 “법인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 세종문화회관의 고유사업 범위내로 사료됨에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여야 할 사업내용인지, 출연금을 증액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내용인지 보다 심도있는 논의후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향후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조례상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문화시설 분포실태 및 조성 수요조사 (사업별설명서 p.727)

- 동 사업은 문화시설 분포, 수급실태, 조성 수요 조사 등의 용역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5〉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100 |
| | ◦ | 용역비 | | | 100 |

- 행정안전부의 기준 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용역의 과업 주요 내용이 ①서울시 문화시설 현황조사, ②서울시 공공기여 현황 및 계획조사, ③문화시설 수급 실태 분석·진단 및 문화소비 행태 변화·예측, ④지역별 적정 문화시설 도출·제안으로 확인되는 바, 동 용역이 단순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일반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용역의 결과 또한 향후 서울시 문화시설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연구용역비**의 경우, 학술용역심의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학술용역 사전심사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안이 이미 시의회에 제출된 현시점에 비추어 사전절차 이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동 **사무관리비** 편성사례가 사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우회 편성한 사례로 오해되지 않도록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3) 관광체육국

□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 서울 프리미엄 관광 육성 (사업별설명서 p.79)
- 서울 도보 관광 코스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112)

○ 서울 프리미엄 관광 육성은 사무관리비 4억 3,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계속 사업으로 ①서울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확산(1억 3,600만원)과 ②프리미엄관광 네트워크 확대 및 홍보(2억 9000만원)를 계획하는 것으로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23년도에 계획한 사업내용과 '22년도에 추진된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22년도의 경우, 사무관리비(3억 3,500만원)중 영문 번역(5,000만원)을 제외하고, 대행용역비로 지출원인행위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23년도에 계획한 사업내용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를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대행용역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등과 같은 경상적 활동에 지출되어야 하는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 편성사례로 확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동일한 맥락에서 사무관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서울 도보 관광 코스 활성화 사업의 경우, ①온라인 도슨트 도보코스 개발(9,000만원), ②도보코스 체험 콘텐츠 제작(6,000만원), ③서울 뷰티로드 개발 및 홍보(1억원)를 계획한 것으로 대행용역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무관리비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과목이나, 사실상 대행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사무관리비로 편성·집행하는 것에 대해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된 편성사례인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과목의 부적절 편성

-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89)
-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별설명서 p.112)

○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은 소요예산 3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계속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억원을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의 사업별설명서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서울소재 여행업체에 대해 ①뉴노멀 관광콘텐츠 공모 추진, ②관광콘텐츠 컨설팅 지원, ③여행업체 맞춤형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사업부서 또한 동 사업의 지원 검토대상이 되는 업체현황을 “서울시 등록 종합여행업 3,724개소”로 회신하고 있는 바,
- “서울시 등록 종합여행업 3,724개소”는 민간사업체로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만일 예산안대로 예산과목을 지출계획할 경우, “서울시 등록 종합여행업 3,724개소”로 직접지원할 수 없고, 서울시의 출연기관이나 한국관광공사 등으로 교부한 이후 해당 기관이 민간여행사로 다시 교부하는 우회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현 단계에서 편성요청된 세출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보조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제출된 세출과목(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을 수정하게 되면 ‘先예산확보 後절차이행’이라는 모순이 발생되어 세출과목을 수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경우에는 ①해외 핵심여행사 공동 상품개발 및 홍보와 ②해외 관광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1,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사업별설명서에는 사업대상을 해외 핵심여행사 및 관광 유관기관(19개국 39개사)로 기재하고 있고, 사업부서 또한 동 사업의 지원 검토대상이 되는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현황을 “19개국 39개 협력 핵심여행사”로 회신한 바,
- 편성요청한 예산과목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서 해외 핵심여행사 등이 공기관일 수는 없어 서울시가 해외 핵심여행사를 직접 지원할 경우 “국외경상이전” 등으로 예산과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별설명서중 추진일정에는 '23년 2월 대행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한국관광공사나 서울관광재단 등의 공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핵심여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동 사업은 편성요청된 예산과목과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사업대상, 그리고 추진일정에 명시된 추진세부내용(대행기관 선정)이 서로 상이하야 사업내용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향후 사업별설명서중 사업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4) 평생교육국

□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

- 지방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48)
- 담배소비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51)
- 지방교육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54)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전출 (사업별설명서 p.58)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별설명서 p.61)
- 지방이양사무지원 (사업별설명서 p.65)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사업별설명서 p.67)

○ 서울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법정전출금과 관련 조례에 따른 비법정전출금을 합하여 총 3조 9,863억 4,000만원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66〉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 부 사 업 명 | '23년도 예산안 | '22년도 본 예산 | '22년도 최종예산 | 증 감 (최종예산대비) |
|--------|----------------------|--------------|---------------|---------------|-----------------|
| 합 | 계 | 3,986,340 | 3,911,817 | 4,734,223 | △747,883 |
| 법정전출금 | 소 계 | 3,958,761 | 3,859,833 | 4,682,239 | △723,478 |
| | 지방세 전출 | 1,761,108 | 1,626,814 | 2,166,628 | △405,520 |
| | 담배소비세 전출 | 261,992 | 257,188 | 281,201 | △19,209 |
| | 지방교육세 전출 | 1,926,002 | 1,966,277 | 2,224,856 | △298,854 |
| | 고등학교무상교육경비 부담금 전출 | 7,629 | 7,516 | 7,516 | 112 |
| | 지방이양사무 지원 | 43 | 43 | 43 | 0 |
| |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 1,987 | 1,995 | 1,995 | △7 |
| 비법정전출금 | 교육경비보조 (조례상 전출금) | 27,579 | 51,984 | 51,984 | △24,405 |

○ 서울시가 편성한 '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출 등 6개 사업, 3조 9,587억 6,100만원으로

- **지방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통세의 10%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전년도 최종예산(2조 1,666억 2,800만원)보다 △4,055억 2,000만원 감소한 1조 7,611억 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이는 서울시의 '23년도 보통세 세입예산이 '22년도 본예산(16조 2,681억원)보다 1조 3,907억원 증가한 18조 2,713억원으로 '2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보통세 추가세수분이 반영됨에 따른 것인 바,

■ 지방세 전출금은 서울시교육청의 '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12조 8,915억원)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재원을 이전 받는 기관이 교육재정운영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시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전출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담배소비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에 전출하기 위해 전년도 최종예산(2,812억 100만원)보다 △192억 900만원 감소한 2,619억 9,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교육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세 총액의 100%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으로 전년도 최종예산(2조 2,248억 5,600만원)보다 △2,988억 5,400만원 감소한 1조 9,260억 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전출**은 지난 '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고시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의 4.5%를 지방자치단체(서울시 2.25%, 자치구 2.25%)가 부담하고 있는 바,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총 경비 3,390억 6,800만원중 서울시가 부담하는 76억 2,9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편성요청한 것임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별설명서 p.61)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는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금(보통세의 0.6% 이내)과 특별교육지원금(교육지원금의 10% 이내)을 포함한 비법정 전출금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①초,중·고 입학준비금 172억 6,800만원, ②대안교육기관 지원 70억원 등 총 275억 7,900만원(보통세의 0.15% 수준)을 조례상 전출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중 1/2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진초 외 2개교에 대한 학교용지매입경비중 1/2을 교육청에 전출하고자 19억 8,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이양사무 지원**은 지난 '21년도에 한시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한 지방이양사무지원 예산을 '22년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시·도로 지원하고, 이를 다시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지원분 4,300만원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67〉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내용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 분 | 2022 예산 ㉠ | 2023 예산(안) ㉡ | 증 감 ㉡-㉠ | 추진목표 |
|--------|---------------------------|-----------------|--------------------|----------------|-------|
| 계 | | 51,984 | 27,579 | △24,405 | |
| 일반교육경비 | | 46,786 | 27,304 | △19,482 | |
| 1 |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 600 | 600 | 0 | 80개교 |
| 2 |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 660 | 660 | 0 | 1개원 |
| 3 | 예체능 및 디지털분야 협력강사 및 멘토링 지원 | 1,000 | 1,000 | 0 | 50개교 |
| 4 | 입학준비금 | 17,080 | 17,268 | 188 | 213천명 |
| 5 | 학교 현장체험학습버스 지원 | - | 776 | 순증 | 330개교 |
| 6 | 대안교육기관 지원 | - | 7,000 | 순증 | 70개소 |
| | 학교체육관 건립 | 2,400 | 0 | △2,400 | |
| |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 7,300 | 0 | △7,300 | |
| | 학교CCTV 교체 지원 | 1,535 | 0 | △1,535 | |
| |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 1,346 | 0 | △1,346 | |
| | 뮤지컬, 음악 등 문화예술 특별교실 구축 | 1,080 | 0 | △1,080 | |
| | 미래형 교실 구축 | 940 | 0 | △940 | |
| | 학교 학습공간 시설개선 지원 | 2,000 | 0 | △2,000 | |
| |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 700 | 0 | △700 | |
| | 학교급식 노후조리기구 현대화 사업 | 4,000 | 0 | △4,000 | |
| |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 | 2,100 | 0 | △2,100 | |
| | 지역사회 결합형 학교 지원 | 1,125 | 0 | △1,125 | |
| |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독서진흥 캠페인 | 500 | 0 | △500 | |
| | 유치원 아이놀터 조성 | 2,000 | 0 | △2,000 | |
| |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 420 | 0 | △420 | |
| 특별교육경비 | | 5,198 | 275 | △4,923 | |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313)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초·중·고 학생 등에게 무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관별 분담비율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는 2,033억 4,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금년도 최종예산(2,183억 600만원)보다 △149억 5,600만원 감액편성한 것으로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 인상, 과일급식 추가지원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급식인원을 당초 825,122명에서 809,759명으로 △15,363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대상인 공립학교 무기계약직 급식종사자(조리사·조리실무사) 인건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함에 따라 소요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2-68〉 2023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편성기준

(단위 :명, 일, 원)

| 학교급별 | 변 동 내 역 (' 2 2 년 도 → ' 2 3 년 도) | | | | | | | | |
|-------|-----------------------------------|---------|--------|---------|-------|-----|---------|-------|--------|
| | 급 식 인 원 | | | 급 식 일 수 | | | 급 식 단 가 | | |
| | ' 2 3 | ' 2 2 | 증 감 | ' 2 3 | ' 2 2 | 증 감 | ' 2 3 | ' 2 2 | 증 감 |
| 공립초 | 371,237 | 373,782 | △2,545 | 192 | 192 | - | 3,778 | 3,948 | △170 |
| 국사립초 | 23,054 | 22,400 | 654 | 192 | 192 | - | 5,466 | 5,151 | 315 |
| 공립중 | 154,475 | 213,073 | △5,423 | 180 | 173 | 7 | 4,153 | 5,911 | △1,758 |
| 국사립중 | 53,175 | | | 180 | 173 | 7 | 6,200 | 5,911 | 289 |
| 공립고 | 68,646 | 211,423 | △7,891 | 173 | 173 | - | 4,343 | 6,091 | △1,748 |
| 국사립고 | 134,886 | | | 173 | 173 | - | 6,519 | 6,091 | 428 |
| 공립특수 | 1,644 | 4,444 | △158 | 192 | 192 | - | 4,369 | 5,696 | △1,327 |
| 국사립특수 | 2,642 | | | 192 | 192 | - | 6,057 | 5,696 | 361 |

※ ① 2023년부터 공립학교 급식단가의 인건비는 지자체와 재원 분담하는 급식보조인력 인건비만 계상(공립 각급학교 조리(실무)사 인건비 전액 교특회계로 지원)
 ② 급식인원 '22년도 827,144명 '23년도 809,759명총 △17,385명 감소
 ③ 자료근거 :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평생교육국)」 p.313

□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330)

○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238억 2,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원아 65,378명에 대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794억 1,000만원중 초·중·고 무상급식비 분담비율과 동일한 분담 비율에 따라 서울시가 30%에 해당하는 238억 2,300만원을 편성한 것 인 바,
- 전년대비 13.5%, 28억 5,200만원 증가한 것은 원아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급식단가 인상 및 사업기간이 확대(10개월→12개월)됨에 따라 지원일수도 증가하여 소요예산 증액으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됨

〈표 2-69〉 2023년도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편성기준

(단위 :개원, 명, 일, 백만원)

| 구 분 | 유치원수 | 유 아 수 | 기준일수 | 급 식 비 단 가 (원) | | | | 소 요 액 |
|-----|------|--------|------|-----------------|-----|-------|-------|--------|
| | | | | 식품비 | 관리비 | 인건비 | 합 계 | |
| 합 계 | 767 | 65,378 | - | - | - | - | - | 23,823 |
| 공 립 | 296 | 16,271 | 182 | 3,165 | 162 | 667 | 3,994 | 3,547 |
| 사 립 | 471 | 49,107 | 217 | 3,165 | 162 | 3,018 | 6,345 | 20,275 |

※ 공립유치원 △ 2,259명 감소, 4일 증가, 283원 증가

※ 사립유치원 △ 4,239명 감소, 23일 증가(지원기간 2개월 증가), 773원 증가

※ 자료근거 :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평생교육국)」 p.331

□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별설명서 p.70)
-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별설명서 p.74)
-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사업별설명서 p.77)
-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사업별설명서 p.83)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소요예산(119억 8,100만원) 중 사무관리비 119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①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117억 1,100만원), ②사업진단 및 만족도 조사(5,000만원), ③참석수당, 회의 운영비 등(2,000만원), ④서울런 홍보 및 이용활성화 등(1억 9,000만원)에 지출계획한 것으로

〈표 2-70〉 소요예산안중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11,971 |
| | | ◦ | 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 | | 11,711 |
| | | ◦ | 사업진단 및 만족도 조사 | | 50 |
| | | ◦ | 참석수당, 회의 운영비 등 | | 20 |
| | | ◦ | 서울런 홍보 및 이용활성화 등 | | 190 |

- ②사업진단 및 만족도 조사(5,000만원), ③참석수당, 회의 운영비 등(2,000만원), ④서울런 홍보 및 이용활성화 등(1억 9,000만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가능한 사업내용으로 사료되나

- 117억 1,100만원을 지출계획한 ①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의 경우,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도록 정한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에 준하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①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의 경우, 소요예산의 사업방식을 고려하면,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 소규모 용역과는 차이가 있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기보다는 위탁이나 대행 등의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은 사무관리비 3억원을 편성하여 ①인문·과학·사회 문화 등 소양 분야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등(7,500만원), ②자기계발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등(7,500만원), ③학습법·진학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등 서울권 홍보 및 이용활성화 등(1억 5,000만원)에 지출계획한 것으로

〈표 2-7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300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과학·사회문화 등 소양 분야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등 - 15,000,000원×5개 ◦ 자기계발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등 - 15,000,000원×5개 ◦ 학습법·진학 콘텐츠 제작 및 제공 등 - 15,000,000원×10개 | | | | 75 |
| | | | | | | 75 |
| | | | | | | 150 |

○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의 경우에도 사무관리비 2억원을 편성하여 ①진로·진학 맞춤형 서비스 지원(1억원), ②직업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1억원)에 지출계획한 것이나,

〈표 2-7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200 |
| | | ◦ 진로·진학 맞춤형 서비스 지원 - 15,000,000원×5개 | | | | 100 |
| | | ◦ 직업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 50,000,000원×2개 과정 | | | | 100 |

-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콘텐츠나 프로그램 제작 및 제공 등에 지출하고자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라는 점에서 시민이나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콘텐츠나 프로그램 제공하기 위한 관련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의 적정 편성 및 지출사례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금년도의 경우,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과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실상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어 향후에는 위탁이나 대행 등의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은 소요예산(63억 2,400만원)중 **사무관리비** 53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①멘토링 홍보 및 모니터링 등(2,000만원), ②멘토-멘티 친화프로그램 운영 등(2,600만원)과 멘토단 선발 및 운영·관리 등 멘토 활동비를 위한 ③서울형 멘토링 운영(52억 8,000만원)을 지출계획한 것인 바,

〈표 2-73〉 소요예산안중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5,326 |
| | | ◦ 멘토링 홍보 및 모니터링 등 | | | | 20 |
| | | ◦ 멘토-멘티 친화프로그램 운영 등 | | | | 26 |
| | | ◦ 서울형 멘토링 운영 - 멘토단 선발 및 운영·관리 등 멘토 활동비 | | | | 5,280 |

- 멘토단 선발 및 운영·관리 등 멘토 활동비에 지출계획하고자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③서울형 멘토링 운영비 52억 8,000만원이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적시하고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③서울형 멘토링 운영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에는 '23년 1~2월중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의 규모와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기보다는 위탁이나 대행 등의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15) 시민건강국

□ 감염병 등 대비 건강능력 향상 지원사업 (사업별설명서 p.196)

- **감염병 등 대비 건강능력 향상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감염병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건강정보 제공사업 운영(1억 500만원), 대시민 강좌 및 건강포럼 운영(1,500만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120 |
| ○감염병 등 대비 시민 건강능력 향상 지원사업 운영 | | | | 120 | |

- 사업별설명서에는 '23년 1월부터 2월까지 용역사업을 공모·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방침상 추진 방법도 전문가 단체 등을 선정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사무관리비**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이 **사무관리비**로 지출가능한 것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명시한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라는 점에서 건강포럼 개최 및 감염병 대시민 강좌 등을 운영하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의 적정 편성 및 지출사례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해당 사업은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므로 서울시 출연기관 등을 통해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편성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 (사업별설명서 p.425)

- 동 사업은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전문가를 파견하여 모유수유마사지를 제공하고 교육상담 지원, 신생아 마사지 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한 신규사업임

〈표 2-7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
|---|---|---|---|-----|---|---|---|---|---|-----|
| | 자 | 치 | 단 | 체 | 경 | 상 | 보 | 조 | 금 | 980 |
| | | ◦산모 유방 마사지 지원 등 - 100,000원×2회×4,900명 | | | | | | | | 980 |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의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의 기준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사업별설명서에는 사회보장 제도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관련 방침에도 '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이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 지난 8월 31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23년도 예산안이 제출('22.11. 1)된 이후 지난 11월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완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시범사업 (사업별설명서 p.597)

-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사업(기획제안형)으로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 |
|---|---|---|---|-----|---|---|---|---|---|------------------|-----|
| | 자 | 치 | 단 | 체 | 경 | 상 | 보 | 조 | 금 | 100 | |
| | | | | | | | | | | ○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 100 |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한 사전협의를 사전절차에 해당하여 반드시 해당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사업시행기간이 정해져 있고, 단년도(1년 이하) 사업 시행 후 종료되는 한시적·일회성 사업 및 일회성 성격의 주민(시민) 참여예산”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를 생략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조례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및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고, 예산 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 일부 어르신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보청기 지원금 사업은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으로 사료되는데 한계가 있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관련 조례에 부합하는 사업 예산인지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동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나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사업이 갖는 한시성으로 단년도에 한정되는 사업이라 하여도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어 대상·방법·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예산편성이 추진되는 절차적 요건이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근거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한 이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별설명서 p.916)

○ 동 사업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유도를 위하여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타보상금 8억원을 포함하여 8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계 | | | | 810 |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10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회의, 평가심의 및 홍보 - 10,000,000원 | | | 10 | |
| | 기 | 타 | 보 | 상 | 금 | 800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료서비스 우수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 800,000,000원 | | | 800 | |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예산과목 중 기타보상금을 ①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②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등으로 정하고 있음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추진 근거를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로 기재하고 있으나, 동 법에는 기타보상금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 '22년 10월 17일 시행된 관련조례 제14조에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을 근거로 기타보상금을 편성한 것임에도 사업별 설명서에는 사업 근거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기타보상금(8억원) 편성 근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나, 동 사업의 기타보상금의 사례처럼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별도의 수혜를 받는 부수적 이익 성격으로 포상금이 지출되어서는 안될 것인 바,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동 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에도 사업별 설명서에 해당 사업의 달성 목표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사업별 설명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것으로서 예산의 편성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기준에는 사업별 설명서 작성시 해당 사업의 달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사업 달성목표를 누락하고 있어 예산 편성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6) 행정국

□ 시청어린이집 운영 (사업별설명서 p.213)

- 동 사업은 서울시청 직원들의 육아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17억 6,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편성요청된 민간위탁금중 주방, 실외놀이터 등 노후 시설물 보수비용 등에 대한 소요예산 2억 4,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표 2-78〉 소요 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민 | 간 | 위 | 탁 | 금 | 1,766 |
| | | ○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 | | 1,766 |
| | | - 인건비 | | | 916 |
| | | - 운영비 | | | 609 |
| | | - 시설비, 시설조성비, 자산취득비 | | | 240 |

※ 증감 사유 : 노후 시설물(주방, 실외놀이터 등) 보수비용, 도시가스 공공요금 상승분반영 등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민간위탁금을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기재하고 있는 바,
 - 편성요청된 시설물 보수비용 등은 민간위탁금이 아닌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편성·지출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예산과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적절한 세출과목 편성은 1차적으로 사업부서의 예산과목 숙지미숙으로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편성시 오류나 정정요인에 대해 예산부서가 총괄조정하여 검수하는 과정이 고도화될 필요가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폐고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업별설명서 p.358)

- 동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억 4,700만원이 포함된 12억 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계 | | | | 1,209 |
| 기 간 제 근 로 자 등 보 수 | | | | 747 |
| | ◦ 관리인 인건비 | | | 747 |
| | - 8개소 운영 인건비 | | | 698 |
| | - 피복비 | | | 1 |
| | - 퇴직금 | | | 47 |
| 사 무 관 리 비 | | | | 238 |
| | ◦ 사무관리비 238,377,000원 | | | 238 |
| 공 공 운 영 비 | | | | 169 |
| | ◦ 공공운영비 | | | 169 |
| | - 공공요금(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169,804,000원 | | | |
|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 | | | 3 |
| | ◦ 관련기관 업무협약 3,645,000원 | | | 3 |
| 시 설 비 | | | | 40 |
| | ◦ 노후시설 개보수 | | | 40 |
| | - 캠핑장 시설 개보수 40,000,000원 | | | |
|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 | | | 10 |
| | ◦ 캠핑장 운영 집기구매 10,000,000원 | | | 10 |

-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등으로 정하고 있고, '23년도 생활임금을 11,157원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직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서울시 생활임금(11,157원)이 아닌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하여 소요예산(7억 4,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시가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관련 조례로 정하고 있는 생활임금보다 부족편성 하는 것은 생활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편성 사례일 수밖에 없어 소요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3년도에는 동 사업을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에도 예산안이 제출('22.11. 1)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방침서가 수립되지 않아 '22년도(1억 4,100만원)보다 68% 증액된 사무관리비(2억 3,8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업내용이 확인된 이후 소요예산중 사무관리비에 대한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서울시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으로 확인되어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12억 9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있어 제출안에 대해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7) 재무국

□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사업별설명서 p.97)

- 동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납부한 지방소득세를 같은 법에 따라 그 납세조합에게 지급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2억 4,8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서울시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인납세조합이 포함된 11개 외국기관 근로 납세조합과 노량진농수산물 납세조합이 포함된 2개 수·해산물 납세조합 그리고 가락축산물 납세조합과 한국화훼 납세조합 등 10개구 총 15개 납세조합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를 재교부하고 있음

〈표 2-80〉 기타보상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기 | 타 | 보 | 상 | 금 | 248 |
| | | ◦ 납세조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징수교부금 | | | 248 |

- 동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조합이 징수·수납한 세액중 일부를 재교부하는 법정교부금이라는 점에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표 2-8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기타보상금)

| 그룹 | 편성목 | 설정 (통계목 포함) |
|-----|-----------|---|
| 300 | 301 일반보전금 | 12. 기타 보상금 <hr/>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09

- 다만, 사업별설명서에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한 바, 자치구가 납세조합으로 재원이 전달되는 이동경로 역할만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도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물품’인 “기타보상금”이 자치구로 교부될 수 있는 세출과목으로 사료 되지 않음
- 그러나 사업부서가 지난 '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금년도에는 ‘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자치구가 최종목적지인 민간 납세조합에게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어 기확정된 ‘징수교부금’을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재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의 기준 이 개선되기 전까지 현행과 같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으나, 동 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동 법정교부금을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동 사업이 시행근거인 관련 법령에 맞도록 행정안전부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사업별설명서 p.123)

○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사무관리비로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를 편성하면 아니된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예산의 편성 및 지출과 관련된 기준은 준수한 사안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이 5,000만원의 연찬회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100명)와 자치구(1,400명)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기적 일체성 등을 확립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이나 세무공무원만큼이나 각 실·본부·국별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정보공유, 직무역량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23년도 예산안에 편성요청된 3,912개 세부사업중 동 사업이 유일하게 특정업무를 맡고 있는 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 소요경비를 편성요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 업무 담당 공무원의 연찬회 소요예산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8) 디자인정책관

□ 학술용역사전심사 부적정 결정사업의 우회편성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별설명서 p.85)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기반 조성 (사업별설명서 p.105)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도래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억 9,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198 |
| | | ◦ 용역인건비 109,404,000원*1식 | | | | 109 |
| | | ◦ 경비(유인물, 전산처리, 회의비 등) 46,855,000원*1식 | | | | 46 |
| | | ◦ 기타 운영경비 42,241,000원*1식 | | | | 42 |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기반 조성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사회 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4억 4,200만원)중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1억 7,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442 |
| | | ◦ 제안서평가 참석 수당(디자인거버넌스, 디자인 행정서비스) | | | | 3 |
| | | ◦ 디자인 행정서비스 추진 | | | | 88 |
| | | ◦ 디자인거버넌스 사업기획 및 운영 | | | | 180 |
| | |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 | | | | 170 |

- 관련 조례 및 기준에 따른 학술용역은 예산편성 전 용역 시행의 타당성과 과업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반영여부를 심의하고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학술용역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난 9월, 정기 학술용역 심의결과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서울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부적정”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결과 “부적정” 결정된 사례에 대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학술용역결과를 부정하는 행위인 것은 물론 이른바 ‘우회편성’한 사례로 소요예산 전액에 대한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조례는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에는 학술용역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관련 조례에 따른 심의결과가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만 학술용역예산이 승인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약자동행 디자인 산업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134)

- 동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9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
| 계 | | | | 1,110 | | |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200 | | | | |
| | ○ 제안서평가위, 자문위 참석수당 200,000원*8명*10회 | | | | 16 | | | | |
| | ○ 수요조사용역 60,000,000원*1식 | | | | 60 | | | | |
| | ○ 사업관리 용역 124,000,000원*1식 | | | | 124 | | | | |
| 시 | 책 | 추 | 진 | 업 | 무 | 추 | 진 | 비 | 10 |
| | ○ 시책업무추진비 10,000,000원*1식 | | | | | | | | 10 |
| 민 | 간 | 경 | 상 | 사 | 업 | 보 | 조 | | 900 |
| | ○ 디자인 기획 및 개발 지원 30,000,000원*30개사 | | | | | | | | 900 |

- 동 사업은 디자인 기획 및 개발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으로, 사업별설명서와 계획서에 따르면 사업근거는 관련조례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조항은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조항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닐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사업부서는 사업별설명서와 계획서에 기재된 사업근거 외에도 현재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관련 조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을 사업추진의 근거로 판단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
- 관련 법령은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근거를 관련 조례로 인정한다 하여도 명문상 불명확한 사업 추진 근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신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를 필요하고, 서울시의 기준에도 예산편성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 예산안이 제출('22.11. 1)된 이후 지난 11월 22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협의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은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가 구체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를 대한 결과 또한 확인되어야 소요재원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디자인산업 정책자문단 운영 (사업별설명서 p.131)

- 동 사업은 디자인 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자문단 운영비(1,000만원)와 전문 분과 운영비(900만원)를 사무관리비(1,900만원)로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2-8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19 |
| | | ◦ 전문 분과 운영비 | | | | 10 |
| | | - 2,000,000원×5개 이슈 | | | | 10 |
| | | ◦ 자문단 운영비 | | | | 9 |
| | | - 200,000원×15명×3회 | | | | 9 |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의 경우에는 디자인산업 정책자문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가 없어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한 이후 사무관리비(1,900만원)가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다만, 관련 조례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부서 또한 '22년 8월, 신설되어 조례제정을 통한 사업근거 마련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예산은 관련된 법령과 조례가 사전에 제·개정된 이후 소요예산이 편성의 결되어야 한다는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어 동 편성사례의 경우에도 사업부서 신설,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등임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 (사업별설명서 p.137)

- 동 사업은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 | | 300 |
| | | ○ 지원대상기업(제품·서비스) 선정심사위원회 및 자문회의 운영 | | 4 |
| | | ○ 디자인 컨설팅 제공 및 디자인 개선 지원 | | 110 |
| | | ○ 국내 판로개척 지원(오프라인 전시.매장) | | 150 |
| | | ○ 홍보비 및 기타 사업운영비 | | 35 |

- 사업 방침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추진 근거를 관련 조례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동 사업의 직접적인 근거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만일 동 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신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를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며 예산안 제출('22.11. 1) 시점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를 예산 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사전절차로, '18년 12월에 시행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지침은 협의가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①내수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인프라 조성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②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정보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려는 사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 협의 후 예산을 편성요청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부서가 예산안 제출('22.11. 1) 이후 지난 11월 22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협의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별설명서와 계획서에 기재된 사업근거 외에 동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근거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관련 조례는 '시장은 디자인산업을 진흥 및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서울디자인재단 또는 다른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입법예고의 단계의 조례안의 경우에도 동 사업이 사업부서의 고유사무라는 근거도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탁에 대한 규정 역시 입법이 미비된 상태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소요예산 편성에 앞서 ①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에 대한 결과가 확인되어야 하고 ②사업시행 및 사업위탁을 위한 근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③공기관(서울디자인재단)에 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협약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사업별설명서 p.153)

- 동 사업은 주거취약지구 내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1,610등)으로 교체하고자 자치단체자본보조 15억 7,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
| | 자 | 치 | 단 | 체 | 자 | 본 | 보 | 조 | 1,578 |
| | ○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980,000원*1,610등 | | | | | | | | 1,578 |

- 관련 방침에 따르면 2025년까지 주거안심구역 54개소 전역에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여 1인가구 밀집 안전취약지역의 야간보행 안심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00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20,451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확인됨

〈표 2-88〉 연차별 추진목표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계 | 2022 이전 | 2023 | 2024 | 2025 |
|-------|---------|---------|--------|--------|--------|
| 추진목표 | 20,451등 | 6,441등 | 4,000등 | 4,500등 | 5,510등 |
| 소요재원 | 20,042 | 6,312 | 3,920 | 4,410 | 5,400 |

- 관련 규칙 등은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자체심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투자심사 결과 유사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시·구 사업비 분담을 검토하도록 “조건부” 결정이 통보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원이 확보되는 자치구를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공문을 25개 자치구로 발송하였으나
 -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는 “스마트보안등”에 대한 기준보조율이 명시된 조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서울시는 지난 9월, 관련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관련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동 일부개정규칙안에도 스마트보안등과 관련된 기준보조율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 규칙에 대한 개정을 통해 스마트보안등 관련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고, 시·구 매칭비율에 맞게 소요예산이 편성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사업별설명서 p.206)

- 동 사업은 중랑천, 안양천, 홍제천, 탄천의 4대지천 야간경관 활성화를 통해 시민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야간명소를 개발하고자 시설비 9억 1,000 만원을 포함한 1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계 | | | | 1,000 |
| 시 | 설 | 비 | | 910 |
| | ○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 | | | 910 |
| 감 | 리 | 비 | | 90 |
| | ○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 공사 감리 | | | 90 |

- 동 사업은 지난 '21년 3월 시작한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기반하여 지천 야간경관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22년 11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확인되어, 계획 수립 용역준공 후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 보다 구체화된 소요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어 편성요청된 시설비가 적정한 규모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90〉 4대지천 경관개선 사업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 사업추진절차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추진세부내용 |
|---------------------------|---------------|-------|----------------------------|
| 4대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1 차) | '21. 5~'21.12 | 100 | 종합계획 수립 (1차) |
| 4대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2 차) | '22. 1~'22.12 | 135 | 종합계획 수립 (2차) |
| 사업방침수립 | '23. 1~'23. 3 | - | 사업시행 방침 수립 및 공사계약 |
| 사업시행 | '23. 3~'23.12 | 1,000 | 지천 야간경관 조성공사 시행 (중랑천, 홍제천) |

※ 자료근거 : '21년도~'22년도 도시계획국 사업별설명서
'23년도 디자인정책관 사업별설명서

○ 아울러 동 사업은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으로 확인됨에도 사업별설명서의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전액 국비를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재하여 제출된 바, 동 사업 이외에도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경우에도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연차별 투자계획은 전액 국비로 기재하고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표 2-91〉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 구분 오기 사례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계 | 2021 이전 | 2022 | 2023 | 2024 이후 |
|--------------------|----------|---------|--------|----------|---------|
| 서울 빛의 관문 야간경관 개선사업 | (x2,351) | (x100) | (x91) | (x1,160) | (x-) |
|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 (x1,234) | (x99) | (x135) | (1,000) | (x-) |

※ 자료근거 : 디자인정책관,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203
디자인정책관,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206

19) 안전총괄실

□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재난관리기금) (사업별설명서 p.73)

- 동 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상환하고자 지방채증권이자상환 115억 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서울시는 지난 '20회계연도부터 '22회계연도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6,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첨부서류에도 동 지방채를 '26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확인됨
- '23년도에는 차입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만을 상환하는 것으로 '22년도에 지방채 2,000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직전 회계연도(89억 1,800만원)보다 25억 8,500만원 증가된 115억 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발행 | 150,000 | 300,000 | 200,000 | - | - | - | - |
| 상환 | - | - | - | - | 150,000 | 350,000 | 150,000 |

- 관련 조례는 재난계정에서 재원을 조성하고자 발행한 지방채의 경우,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은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일반회계에서 회계·기금간 경계를 넘어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직접 상환하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으로 전출하여 해당 계정에서 이자가 상환되도록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세부사업에 편성된 **지방채증권이자상환** 115억 300만원은 기금 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그와 연동하여 '23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사업별설명서 p.216)

- 동 사업은 지난 '18년도부터 '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조 9,839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동부간선도로 재정구간(노원구 하계동~성동구 송정동)과 영동대로(강남구 영동대교 남단~학여울역)에 대한 지하화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임

〈표 2-9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계 | | | | 15,200 |
| 시 | 설 | | 비 | 13,600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실시설계비 포함) - 실시설계비 - 공사비 ◦ 각종 영향평가비(지하안전영향평가등) | | | 13,100 |
| | | | | 5,799 |
| | | | | 7,301 |
| | | | | 500 |
| 감 | 리 | | 비 | 1,600 |
| | ◦ 감리비 | | | 1,600 |

- '23년도 소요예산은 15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영동대로 구간(영동대교 남단~학여울역)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등으로 검토되는 바, 사업별설명서에는 영동대로 구간을 “터널 왕복 4차로, 연장 2.1km”로 기재하고 있어 해당 구간이 지하화 구간으로 사료되나,
- 사업부서는 ①동부간선 지하도로 2.1km(영동대교 남단~삼성역사거리)는 지하화 구간으로 추진하고, ②영동대로 연결로 0.88km(삼성역 주변~대치 IC)는 1차로, 2개터널로 계획하고 있으나 ③삼성역 사거리~일원터널까지 3.0km 단절구간에 대해서는 ‘지하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회신 한 바,

- 영동대로 구간중 ③삼성역 사거리~일원터널까지 3.0km 구간을 이른바 ‘단절구간’으로 계획하고 있어 과거 동부간선도로를 지상구간으로만 조성한 결과 상시 도로이용량 폭증에 따른 매연, 분진, 소음 등의 민원은 물론 해당구간 인접지역 주민들로부터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됨
- 동부간선도로 재정구간은 민자구간과는 달리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구간으로 서울시의 재정으로 동부간선도로 구간은 지하화하고, 영동대로 구간중 이른바 ‘단절구간’은 여전히 지상구간으로 조성한다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행정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만일 해당 ‘단절구간’을 차후 지하화할 경우, 교통정체와 발생가능한 매몰비용은 현저히 증가될 수밖에 없어 영동대로 구간 전체에 대한 지하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편성요청된 소요예산(15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해당 단절구간까지 지하화하는 것으로 최종확정된 이후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합리적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포상금 편익적 편성

-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사업별설명서 p.406)
-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사업별설명서 p.438)

○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은 도로 점용료 징수 및 신규 세원 발굴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포 | 상 | | 금 | 22 |
| | ◦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금 | | | 22 |

○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운영자 외 운영 등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3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계 | | | | 104 | |
| 사 | 무 | 관 | 리 | 비 | 1 |
| |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운영 | | | 1 | |
| 포 | 상 | | | 금 | 0.3 |
| | ○ 시민 신고 포상금 | | | 0.3 | |
| 시 | 설 | | | 비 | 102 |
| | ○ 시설물 이전 공사비 | | | 20 | |
| | ○ 시설물 유지 관리비 | | | 30 | |
| | ○ 전기 안전점검 | | | 52 | |

-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포상금”을 ①모범공무원 산업시찰, ②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③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 파견공무원의 학자금, ④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⑤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정하고 있음
- 지출과목인 포상금은 지급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되는 예산과목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이 지출계획하는 포상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에도 일괄하여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포상금)의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중** 포상금의 경우에도 민간인을 포상하기 위한 사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 주택정책실

□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사업별설명서 p.373)

- 동 사업은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기술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4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시 | 설 | | 비 | 400 |
| | ○ 용역비 ※ 추진일정 2023. 3 ~ 2024. 2 | | | 400 |

- 동 사업은 지난 10월 20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당초 사업부서가 요청한 4억원에서 △700만원 감액조정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은 당초 사업부서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의뢰할 당시와 동일한 규모로 확인되어 제출된 예산안에는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제도의 운영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에 따라 용역비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사업별설명서중 “사업내용”과 “2023년도 추진일정”에는 동 용역을 '24년 2월에 준공할 것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월이 전제된 편성 사례로 사료됨

〈표 2-97〉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사업내용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추진방법 : 용역 수행
- 사업의 주요내용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자료근거 : 주택정책실,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375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조정된 △700만원 뿐만 아니라 소요예산중 '23년도에 집행가능한 사업비에 한정하여 소요예산이 재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월세 물량예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417)

- 동 사업은 전월세 물량예측 알고리즘 및 뷰어를 개발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8〉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100 |
| | ○ 물량예측 데이터 분석 | | | | 50 |
| | - 인건비 (30,000천원×1식) | | | | 30 |
| | - 직접경비 (15,000천원×1식) | | | | 15 |
| | - 일반관리비 (5,000천원×1식) | | | | 5 |
| | ○ 물량예측 알고리즘 및 뷰어 개발 | | | | 50 |
| | - 인건비 (30,000천원×1식) | | | | 30 |
| | - 직접경비 (15,000천원×1식) | | | | 15 |
| | - 일반관리비 (5,000천원×1식) | | | | 5 |

- 사업별설명서와 관련 방침에는 동 사업이 전월세 물량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여도 정보화사업에 해당됨

- 서울시의 기준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관련 방침은 물론 사업별설명서에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에 대한 일체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사업부서가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적정예산과목인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우회편성한 사안으로 사료됨

21) 도시계획국

□ 청량리역 新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도시전략계획 수립 (사업별설명서 p.69)

- 동 사업은 청량리역 일대 저이용부지의 고밀화 및 복합화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3억원을 시설비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9〉 소요예산안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300 |
| | ○ 기술용역비 | | | | 300 |
| | - 인건비 | | | | 109 |
| | - 직접경비 | | | | 3 |
| | - 제경비 | | | | 120 |
| | - 기술료 | | | | 39 |
| | - 부가가치세 | | | | 27 |

- 서울시의 기준은 추정가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 서울시의 기준에도 사업계획 수립후 예산편성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통해 용역시행의 타당성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경우, 기술용역 심사결과 “적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사업부서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기 위해 '22년 10월, 기술 심사담당관으로 제출한 심사요청서에는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간 3억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사업별설명서의 “사업내용”과 “2023년도 추진일정”에는 '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3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 소요예산의 증감조정이 없어 10월 19일에 제출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 자료와 11월 1일 제출된 사업별설명서간 열흘 남짓한 시차가 있어 용역기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용역기간이 12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 단축되어 용역의 실제 추진기간이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2) 균형발전본부

□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사업별설명서 p.273)

- 동 사업은 지난 '22년 8월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을 관리·운영하고자 사무관 리비 1억 5,300만원을 포함한 14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계 | | | | 1,474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 | 169 |
|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 | | 169 |
| 사무관리비 | | | | 153 |
| ○ 사무관리비 | | | | 153 |
| - 피복비 | | | | 0.9 |
| - 재설 및 수방자재 | | | | 18 |
| - 재설대책비(급량비 등) | | | | 2 |
| - 일/숙직비 | | | | 30 |
| - 전문가 자문 및 시민의견 수렴 | | | | 45 |
| - 공무원 피복비 | | | | 3 |
| - 공공안전관 피복비 | | | | 2 |
| - 현업근로자 휴게공간 임차료 | | | | 51 |
| 공공운영비 | | | | 1,151 |
| ○ 공공운영비 | | | | 1,151 |
| - 공공요금(수도, 전기, 정화조 등) | | | | 463 |
| - 분수저수조청소 | | | | 117 |
| - 유지보수자재 | | | | 64 |
| - 승강기보수용역, 제설용역, 소방용역 | | | | 84 |
| - 시설수리비 | | | | 360 |
| - 동상 유지보수 | | | | 40 |
| - 영조물배상공제 | | | | 21 |
| 공무원 교육여비 | | | | 0.4 |
| ○ 공무원 교육여비 | | | | 0.4 |
| - 공무원 교육여비 | | | | 0.4 |

23) 푸른도시여가국

□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사업별설명서 p.83)

○ 동 사업은 광진구 능동 소재 어린이대공원을 서울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위탁사업비 160억 7,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어린이대공원은 지난 1986년 1월부터 서울시설공단이 위탁운영 하였으나 '17년 1월 서울시설공단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관리대행중인 바, '23년 도의 경우, 공기관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136억 7,800만원)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23억 9,200만원)를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2〉 소요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계 | | | | 16,070 |
|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 | | | 13,678 |
| | ◦ | 인건비 | | 7,376 |
| | ◦ | 경비 | | 5,434 |
| | ◦ | 간접비 | | 867 |
| 공 기 관 등 에 대 한 자 본 적 위 탁 사 업 비 | | | | 2,392 |
| | ◦ | 어린이대공원 노후 시설물 보수 등 | | 2,392 |
| | - | 구의문주차장 보수 | | 590 |
| | - | 물놀이장 화장실 증축 | | 500 |
| | - | 노후 시설물 보수 | | 500 |
| | - | 놀이동산 유기기구 노후 부품교체 | | 140 |
| | - | 노후 전력설비 정비 | | 242 |
| | - | 위험수목 정비 및 녹지경관 개선 | | 160 |
| | - | 음악분수 노후 설비 개선 | | 110 |
| | - | 노후포장 및 노면 정비 | | 150 |

- 관련 조례는 서울시의 사업을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난 '08년 11월, 조례를 개정하며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통해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관리대행을 제출할 의무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편성여부와는 별개로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7년 1월,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 위탁사무건에 대해 민간위탁 혁신계획('16. 6)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고, 서울시설공단의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대행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대행사무 관리방안을 보완하도록 한 바,
-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는 사업중 교통위원회 소관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 등을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 지난 '08년 11월, 조례를 개정하며 부칙으로써 시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대행사업에 대해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 권한 강화차원에서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해 의회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개선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전 절차(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미이행 사업

- 북악하늘길 교통약자를 위한 산책로 정비(시민참여) (사업별설명서 p.100)
-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무장애 산책로 조성(시민참여) (사업별설명서 p.184)
-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시민참여) (사업별설명서 p.375)
- 시공원 내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별설명서 p.131)

○ 서울시의 기준은 추정가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 서울시의 다른 기준에도 “사업계획 수립후 예산편성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통해 용역시행의 타당성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정하고 있음

○ 「2023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북악하늘길 교통약자를 위한 산책로 정비(시민참여)**,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무장애 산책로 조성(시민참여)**,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시민참여)** 사업의 경우, 시설비를 편성 요청한 사업으로 사업별설명서에는 소요예산이 확정된 이후 '23년도중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할 계획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바,

〈표 2-103〉 시설비를 편성요청한 시민참여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북악하늘길 교통약자를 위한 산책로 정비(시민참여) | | | | 500 |
| | ◦ 시설비 (북악하늘길정비) | | | 500 |
| | | ※ '23.01~04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 |
|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무장애 산책로 조성(시민참여) | | | | 1,000 |
| | ◦ 시설비 (무장애 산책로 조성) | | | 1,000 |
| | | ※ '23.01~04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 |
|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시민 참여) | | | | 2,500 |
| | ◦ 시설비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 | | 2,500 |
| | | ※ '23.01~02 : 세부추진계획수립 '23.03~06 : 실시설계용역 | | |

-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되어야 할 것이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총괄하는 기술심사담당관은 “해당 사업에 설계용역이 포함되어 있어 심사 대상이나, 시민참여 예산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이행 시기는 용역발주 전”으로 회신하였음
 - 그러나 서울시 기준에는 시민참여 예산은 ‘예산편성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한다는 예외적용에 대한 근거가 명시된 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시민참여예산이라 하여도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이 심사되어야 할 것인 바,
- 동 편성사례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특수성이 예외적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권으로 작용될 경우에는 先예산확보 後절차이행 편성사례가 될 수밖에 없어 편성요청 된 시설비에 대한 승인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시공원 내 체육시설 현대화**는 시공원의 노후체육시설을 현대화하고자 시설비 32억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으로 '23년 1월 대상지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3년 1월부터 4월까지 기술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하였음

- 동 사업은 시공원 내 체육시설 15개소(실내 5, 실외 10)에 대해 노후도,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중 우선순위 대상지와 연차별 대상지를 공모하여 '23년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되나
- 예산안 편성 시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한 결과 해당 시설별 소요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시설비를 편성함에 있어 수반되는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검토하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대상인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대상지를 확정된 이후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04〉 시설비를 편성에 따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필요사업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 |
|---|---|---|---|----------------------------------|---|---|---|---|---|---|-------|
| 시 | 공 | 원 | 내 | 체 | 육 | 시 | 설 | 현 | 대 | 화 | 3,200 |
| | | | | ○ 시설비 (공원 내 체육시설 현대화) | | | | | | | 3,200 |
| | | | | ① '23.01~01 : 대상지 선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② '23.01~04 : 기술용역 | | | | | | | |

□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사업별설명서 p.275)

- 동 사업은 문화비축기지 시설을 재정비하고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자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시 | 시설 | 비 | | 300 |
| | ○ 기본계획 용역 | | | 300 |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총 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고, '23년도 4월부터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확인됨

〈표 2-10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기 투 자 (~2021) | 2 0 2 2 | 2 0 2 3 | 2024 이후 |
|-----|--------|------------------|---------|---------|---------|
| 계 | 40,000 | 0 | 0 | 300 | 39,700 |
| 시설비 | 40,000 | 0 | 0 | 300 | 39,700 |

※ 자료근거 : 푸른도시여가국, 2023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276

- 서울시의 기준은 추정가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 및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요청하고 있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제출일('22.11. 1)까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용역시행의 타당성이나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필요시 추경을 통해 소요재원을 편성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유기동물보호 지원** (사업별설명서 p.526)

○ 동 사업은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억 9,500만원을 포함한 10억 5,3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

- 금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원을 편성하여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추진 방식을 용역사업으로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5억 9,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제출하였음
- 사업부서는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용역이 **사무관리비**로 지출가능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지한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안전부는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예시 사례를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로 회신한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도 **사무관리비**는 공공운영비,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즉,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세출과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사무관리비**가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라는 점에서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적정 용도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사업추진방식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를 통한 용역사업으로 변경한 것이라 하나 사실상 예산과목만 변경된 것일 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형태는 동일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소요예산 편성사례가 기준에 부합되는 편성사례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전절차(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미이행한 사업**

- 서서울호수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별설명서 p.813)
- 북서울꿈의숲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별설명서 p.856)

○ **서서울호수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양천구 소재 서서울호수공원에 '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0억원(시비 100%)을 투입하여 가족 중심의 다목적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9억 1,500만원을 포함한 9억 3,7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공사비 27억 3,500만원과 용역비 2억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됨

○ **북서울꿈의숲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은 강북구 소재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에 '22년 11월부터 '25년 6월까지 21억원을 투입하여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6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공사비 19억 1,000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 3,600만원, 건축기획비 5,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됨

○ '19년 12월부터 설계비 1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공고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20년 2월, 관련 규정을 수립하고, 시장방침 제68호,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 관련 법령에는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발주방식의 결정,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준용”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기를 “설계용역 입찰공고(설계공모 포함) 전 (예산편성 전)”으로 기재하고, “법정 시기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 수행”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더욱이 서울시 기준에도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서울호수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북서울꿈의숲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별설명서와 방침에도 '23년 1월 이후 공공건축심의를 이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사업부서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미이행”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 사업의 소요예산은 편성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24) 한강사업본부

□ **독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별설명서 p.28)

- 한강사업본부 소관 사업중 **독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은 소요 예산중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설계 및 공사를 위한 시설비 19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2-107〉 소요예산안중 시설비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시 | 설 | 비 | | 3,704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역사홍보전시관 전시콘텐츠 제작 설치 | | | 1,77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설계 및 공사^{주1)} | | | 1,925 |

※ 주1) 공사비(1,836,500천원)+설계비(88,900천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설계(상반기) 및 공사(하반기)

- 동 시설비의 경우, 공사비 18억 3,600만원과 설계비 8,8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서울시 기준은 추정가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의 관련 기준에는 사업계획 수립후 예산편성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통해 용역시행의 타당성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시설비와 설계비를 편성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설계 및 공사의 경우, 11월 14일, 해당 절차(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지난 11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확인과정이 진행되자 예산안 편성은 물론 예산안 제출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시의회의 확인과정을 통해 예산편성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사후적으로나마 이행하도록 하는 순기능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시의회에 승인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후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임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요청한 사업

- 한강 이색 축제 (사업별설명서 p.193)
-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사업별설명서 p.204)

○ 행정안전부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 신규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안 제출에 앞서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수혜자의 적절성, 예산규모의 적정 등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특히, 행사성 사업중 계속사업은 '22년도중 '21년도 행사성 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23년도 예산안 편성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행사성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에 따른 사후평가는 “시·도 및 시·군·구 공연 축제 등”을 대상으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로 등급화하고 있고, ①‘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②‘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 ③‘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등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2-108〉 사후평가결과에 대한 예산 반영 예시

| 평가결과 | 우수 | 미흡 | 매우 미흡 |
|------|----------|------|-------|
| 예산반영 | 증액 또는 유지 | △10% | 미반영 |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20.11.13), p.3

- 서울시의 경우에도 관련 기준 등을 통해 '21년도에 기 추진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23년도 예산안 편성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강 이색 축제**의 경우, 행사성 사업의 사후평가 결과 '매우미흡'으로 평가되어 사실상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오히려 금년도 (8,000만원)보다 125.0%, 1억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동 사업은 '21년도에는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22년도에도 동일 규모인 8,000만원을 편성하여 '22년 10월 31일 현재 예산현액의 95%를 지출원인행위 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09〉 '23년도 행사운영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 세부사업명 | 평가등급 | '21년 행사운영비 | '22년 행사운영비 (A) | '23년 행사운영비 (B) | 증감 (B-A) |
|--------|-------------|------|---------------|----------------------|----------------------|-------------|
| 한강사업본부 | 한 강 이 색 축 제 | 매우미흡 | 80 | 80 | 180 | 100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28979 ('22.11.15), "2022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 동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축제를 전면 취소하여 집행부진 등을 사유로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하도록 정하고 있고, '매우미흡' 등급의 경우 재평가 후 개선이 없을시 사업 일몰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다만, 서울시의 기준에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일부 예외적인 적용을 하고 있어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편성규모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는 행사운영비 1억 2,000만원이 포함된 2억 1,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금년도 최종 행사운영비(8,000만원)보다 50.0%, 4,0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0〉 '23년도 행사운영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 세부사업명 | 평가등급 | '21년 행사운영비 | '22년 행사운영비 (A) | '23년 행사운영비 (B) | 증감 (B-A) |
|--------|--------------|------|---------------|----------------------|----------------------|-------------|
| 한강사업본부 |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 매우미흡 | 40 | 80 | 120 | 40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28979 ('22.11.15), “2022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 동 사업의 경우에도 '22년도 평가결과, '매우미흡'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재평가하고 개선이 없을 경우 사업에 대한 일몰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서울시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 사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소요 예산 승인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기타 검토의견

□ 사전절차(출자·출연동의)가 필요한 사업

-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재무국 사업별설명서 p.93)
-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270)
- 서울장학사업 **추진**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42)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08)
-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평생교육국 사업별설명서 p.146)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복지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126)
-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홍보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30)

○ 출자 또는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7개 세부사업과 관련된 7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이 금번 제315회 정례회중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23년도 예산안중 출연금 편성을 위해 재무국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은 지난 8월, 관련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였고, 행정국 소관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사업도 지난 8월, 관련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장학사업 추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도 지난 8월, 개별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였고, 복지정책실 소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홍보기획관 소관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의 경우에도 지난 8월, 관련 출연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11〉 출연 동의안 의안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 세부사업 | 출연금 | 출자동의안 제출일 | 심사일 |
|-----------|-------------------|--------|-----------|-------------------|
| 재 무 국 |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2,643 | '22. 8.29 | '22.11.28 |
| 행 정 국 |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 5,330 | '22. 8.29 | '22.11.25 (가결) |
| 평 생 교 육 국 | 서 울 장 학 사 업 추 진 | 9,758 | '22. 8.29 | '22.11.24 (가결) |
| ” |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운 영 | 9,428 | '22. 8.29 | '22.11.24 (가결) |
| ” |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 17,321 | '22. 8.29 | '22.11.24 (가결) |
| 복 지 정 책 실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 16,884 | '22. 8.29 | '22.11.21 (가결) |
| 홍 보 기 획 관 |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 23,217 | '22. 8.29 | '22.11.22 (가결) |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 관련 출연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류 및 미상정 된 바 있으나, 금번 정례회 기간인 11월 28일 상정예정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제외한 6건의 출연 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23년도 예산안중 편성요청된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은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출연금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전절차(민간위탁동의)가 필요한 사업

- **영상산업 지원**(경제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435)
-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경제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573)
-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경제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779)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경제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827)
-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미래청년기획단 사업별설명서 p.80)
-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복지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260)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시민건강국 사업별설명서 p.878)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328)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395)
-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347)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401)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지원**(도시교통실 사업별설명서 p.325)

○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금번 제315회 정례회중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12개 세부사업과 관련된 1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23년도 예산안중 민간위탁금 편성을 위해 경제정책실 소관 **영상산업 지원,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홍릉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은 지난 10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도 지난 10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복지정책실 소관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도 지난 10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도 지난 10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운영,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과 기후환경본부 소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도시교통실 소관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지원**의 경우에도 지난 10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12월 19일 상정 예정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제외한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23년도 예산안중 편성요청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금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민간위탁금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12〉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 세 부 사 업 | 민간위탁금 | 동 의 안 일 제 출 | 심 사 일 |
|---------------|-----------------------|--------|----------------|-------------------|
| 경 제 정 책 실 | 영상산업 지원 | 3,054 | '22.10.17 | '22.11.25 (가결) |
| 경 제 정 책 실 |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 2,450 | '22.10.17 | '22.11.25 (가결) |
| 경 제 정 책 실 |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 777 | '22.10.17 | '22.11.25 (가결) |
| 경 제 정 책 실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 11,201 | '22.10.17 | '22.11.25 (가결) |
| 미 래 청 년 기 획 단 |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 2,203 | '22.10.17 | '22.11.29 |
| 복 지 정 책 실 |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 | 342 | '22.10.17 | '22.11.21 (가결) |
| 시 민 건 강 국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 3,337 | '22.10.17 | '22.11.28 |
| 여 성 가 족 정 책 실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 | 1,188 | '22.10.17 | '22.11.24 (가결) |
| 여 성 가 족 정 책 실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 196 | '22.10.17 | '22.11.24 (가결) |
| 기 후 환 경 본 부 |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 39,497 | '22.10.21 | '22.11.21 (가결) |
| 기 후 환 경 본 부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 4,756 | '22.10.17 | '22.11.21 (가결) |
| 도 시 교 통 실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지원 | 1,491 | '22.10.17 | '22.12.19 |

※ 자료근거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 아울러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은 민간위탁금 22억 9,300만원이 포함된 37억 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편성된 민간위탁금에는 4개소의 서울청년센터중 서울청년센터(금천오랑, 동대문오랑) 운영을 위한 11억 7,4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지난 10월, 시의회에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 금번 정례회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11월 29일 심사할 예정으로 확인되어 동 사업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의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는 '22년 9월 심의결과 “적정”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11월 29일 심의 예정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결과를 “적정”으로 제출한 것은 민간위탁금의 편성여부와 별개로 예산심사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부서의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지원**은 민간위탁금 14억 9,100만원을 포함한 18억 2,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바,
- 소관 상임위원회(교통위원회)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교통위원회는 관련 의안을 12월 19일 상정할 예정으로 확인됨

□ 사업별 설명서 부실 작성 사례

-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별설명서 p.39)
-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전환사업)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별설명서 p.41)
- 지역사회안전진단 및 범죠평화활동(전환사업)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별설명서 p.54)
- 서울 출산육아 만능키 구축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109)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309)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주택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291)

○ 사업별설명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일 수 밖에 없어 다음년도에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준에 따라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3개 세부사업은 사업별설명서중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적인 추진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추진실적”을 누락한 것으로

- 서울시의 기준에는 계속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입력하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실적을 기재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서울 출산육아 만능키 구축은 예산안 편성 전 이행되어야 하는 사전절차인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의 심의일자를 '23년 9월 16일로 작성하고, 심의결과 또한 “예산조정”임에도 “적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 사전절차 임에도 그에 대한 심의일자를 회계연도 개시 이후로 작성한 것은 단순 오기일 수 있으나,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 결과 ‘예산조정’으로 통보받아 3,3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음에도 사실과는 다르게 ‘적정’으로 명시한 것은 사업별설명서를 신뢰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은 신규 민간위탁 사업으로 금번 제315회 정례회중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임에도 의회동의 결과를 '22년 10월 6일로 작성하고, 심의결과 또한 “적정”으로 사실아닌 내용을 임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
- 주택정책실의 경우에는 지난 11월 1일 예산안 제출 이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업별설명서에 대한 수정 요청 공문을 제출하여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지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위탁 관리** 등 9개 세부사업 24건을 수정한 바 있음
- 주택정책실은 사업별설명서중 24건을 수정하였음에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중 품질점검단 운영 예산(사무관리비)은 1,600만원으로 편성요청 하였으나, 실제 사업추진 일정에는 동 점검단 운영 예산을 1,000만원으로 오류 기재 된 상태로 현재까지 오류 인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표 2-113〉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 산 | 출 | 내 | 용 | 예산안 | | |
|---|--|---|---|-----|----|----|
| | 사 | 무 | 관 | 리 | 비 | 16 |
| | ○ 품질점검단 점검수당(분쟁시) 151,510원*11인*9.6회 | | | | 16 | |

〈표 2-114〉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 사업추진절차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추진세부내용 |
|---------------|---------------|------|-------------|
| 품 질 점 검 단 운 영 | '23. 3~'23.12 | 10 | 품질점검단 운영 지원 |

※ 자료근거 : '23년도 주택정책실 사업별설명서

- 의회에 제출되는 사업별설명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되는 법정서류요건으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한정된 심사기간 동안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향후 사업별설명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시켜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주택정책실은 4회에 걸친 공문으로 9개 사업, 24건을 수정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업별설명서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 반영 필요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301)
-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관광체육국 사업별설명서 p.17)

○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은 투자사업 등에 대해 ①'22년도중 '21년도의 추진내역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②'보통' 등급 사업은 예산 유지 또는 제도개선 권고, ③'미흡'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 ④'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등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기후환경본부 소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는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으로 확인되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금년도(시설비 27억 8,800만원)보다 39.8%, 11억 1,200만원 증액된 39억원을 편성요청 하고 있음

〈표 2-115〉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 세 부 사 업 명 | '23년도 예산안 | '22년도 최종예산 | 증감액 | 증감률 |
|--------------------------|-----------|------------|-------|------|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시설비) | 3,900 | 2,788 | 1,112 | 39.8 |

- 관광체육국 소관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의 경우**에도 서울시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보통'으로 확인되나, 금년도(7억 3,400만원) 대비 14.8%, 1억 900만원 증액한 8억 4,300만원 편성요청 하고 있음

〈표 2-116〉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 세 부 사 업 명 | '23년도 예산안 | '22년도 최종예산 | 증감액 | 증감률 |
|-------------|-----------|------------|-----|------|
|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 843 | 734 | 109 | 14.8 |

○ 예산안 편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나,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원칙 또한 준수되어야 예산 편성의 기준이 유지되고, 시민들에게도 이해될 것인바,

- 「주요 재정사업 평가」가 단순히 절차적인 요건이라면 실효성 낮은 행정절차는 폐지되거나 간소화 되어야 할 것이나, 소요 예산의 증·감에 대한 필요성을 가늠하는 측정도구로써 필요하다면 제도의 취지에 따라 평가 결과 또한 적극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공기업특별회계

1) 수도사업특별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1)사업예산은 ①수입 8,686억 5,800만원, ②지출 6,468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2)자본예산은 ①수입 613억 4,200만원 ②지출 2,831억 8,0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9,30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7〉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 입 | 지 출 |
|---------|---------|---------|
| 예 산 총 계 | 930,000 | 930,000 |
| 사 업 예 산 | 868,658 | 646,820 |
| 자 본 예 산 | 61,342 | 283,180 |

※ 자료근거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 P.25 “2023년도 예산총괄” 재구성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 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총규모는 9,300억원으로 '22년도 최종예산 (8,173억 8,099만원)보다 13.8%, 1,126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한 바,
- 수입예산의 경우, 3년('21~'23년) 간 연간 73.5원씩 상수도 요금을 인상 함에 따라 **상수도사용료수익**을 금년도 최종예산(6,410억 5,300만원) 보다 23.2%, 1,484억 7,900만원 증액된 7,895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최종예산(227억 2,980만원) 보다 △1.6%, △3억 6,477만원 감액된 223억 6,503만원으로 편성 하여 제출하였음

〈표 2-118〉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단위 : 백만원, %)

| 구 | 분 | 2023년도 (예산안) | 2022년도 (최종예산) | 증 | 감 | 증 | 감 | 률 |
|---|------------|-----------------|------------------|---------|---|---|---|-------|
| 총 | 계 | 930,000 | 817,381 | 112,619 | | | | 13.8 |
| 상 | 수도사업수익 | 868,658 | 741,718 | 126,940 | | | | 17.1 |
| 영 | 업수익 | 820,909 | 669,430 | 151,479 | | | | 22.6 |
| | 상수도사용료수익 | 789,532 | 641,053 | 148,479 | | | | 23.2 |
| | 급배수공사수익 | 28,101 | 25,193 | 2,908 | | | | 11.5 |
| | 기타영업수익 | 3,276 | 3,184 | 92 | | | | 2.9 |
| 영 | 업외수익 | 47,749 | 72,288 | △24,540 | | | | △33.9 |
| | 이자수익 | 1,504 | 1,167 | 336 | | | | 28.8 |
| | 타회계전입금수입 | 26,847 | 61,619 | △34,772 | | | | △56.4 |
| | 기타영업외수익 | 19,398 | 9,502 | 9,896 | | | | 104.1 |
| 자 | 본적수입 | 61,342 | 75,663 | △14,321 | | | | △18.9 |
| | 유형자산처분 | 8,605 | 10,866 | △2,261 | | | | △20.8 |
| | 재산매각수입 | 8,605 | 10,866 | △2,261 | | | | △20.8 |
| | 자본잉여금수입 | 20,568 | 30,065 | △9,496 | | | | △31.6 |
| | 시설분담금수입 | 19,423 | 27,894 | △8,471 | | | | △30.4 |
|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 1,145 | 2,170 | △1,025 | | | | △47.2 |
| 유 | 보자금 | 32,169 | 34,732 | △2,563 | | | | △7.4 |
| | 순세계잉여금 | 22,365 | 22,730 | △365 | | | | △1.6 |
| | 미수금 | 9,804 | 12,002 | △2,198 | | | | △18.3 |

※ 자료근거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 P.31 “세입예산 목별구성” 재구성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9,300억원으로 '22년도 최종 예산(8,173억 8,099만원)보다 13.8% 1,126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 **영업비용**은 '22년도 최종예산(5,805억 300만원)보다 10.3%, 597억 2,400만원 증액된 6,402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유형자산취득**은 '22년도 최종예산(2,165억 7,000만원)보다 23.6%, 511억 5,800만원 증액된 2,67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1)사업예산은 56억 2,000만원, (2)자본예산은 36억 8,0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119〉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3 | | 2022(최종예산) | | 증 감 | |
|------------------------------|---------|-------|------------|-------|---------|-------|
| | | % | | % | | % |
| 계 | 930,000 | 100.0 | 817,381 | 100.0 | 112,619 | 13.8 |
| 상 수도 사업 비용 | 646,820 | 69.6 | 589,636 | 72.1 | 57,184 | 9.7 |
| 영 업 비 용 | 640,227 | 68.8 | 580,503 | 71.0 | 59,724 | 10.3 |
| 영 업 외 비 용 | 973 | 0.1 | 973 | 0.1 | - | 0.0 |
| 예 비 비 | 5,620 | 0.6 | 8,160 | 1.0 | △2,540 | △31.1 |
| 자 본 적 지 출 | 283,180 | 30.4 | 227,745 | 27.9 | 55,435 | 24.3 |
| 유 형 자 산 취 득 | 267,728 | 28.8 | 216,570 | 26.5 | 51,158 | 23.6 |
| 무 형 자 산 및 기 타 유 동 자 산 취 득 | 747 | 0.1 | 2,388 | 0.3 | △1,641 | △68.7 |
| 비 가 동 설 비 자 산 취 득 | 8,152 | 0.9 | 8,487 | 1.0 | △335 | △3.9 |
| 기 타 자 본 적 지 출 | 2,873 | 0.3 | 300 | 0.0 | 2,573 | 857.7 |
| 예 비 비 | 3,680 | 0.4 | - | 0.0 | 3,680 | - |

※ 자료근거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 P.45~49 “세출예산 목별조서” 재구성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1)사업예산은 ①수입 7,622억 900만원, ②지출 4,713억 4,700만원으로 계획하고, (2)자본예산은 ①수입 1,241억 9,100만원, ②지출 4,150억 5,3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8,864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20〉 2023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수입 | 지출 |
|------|---------|---------|
| 예산총계 | 886,400 | 886,400 |
| 사업예산 | 762,209 | 471,347 |
| 자본예산 | 124,191 | 415,053 |

※ 자료근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 P.15 “예산총괄표” 재구성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 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23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 총규모는 8,864억원으로 '22년도 당초예산액 8,654억 800만원보다 2.4%, 209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한 바,
- 수입예산의 경우,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최근 3년간 결산액('19~'21)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22년도 당초예산(7,080억 1,700만원)보다 △4.5%, 304억 7,700만원이 감액된 6,775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121〉 2023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단위 : 백만원, %)

| 구 | 분 | 2023년도 (예산안) | 2022년도 (본예산 ^{주1)}) | 증 감 | 증 감 률 |
|---|---------------------|-----------------|---------------------------------|---------|-------|
| 총 | 계 | 886,400 | 865,408 | 20,992 | 2.4 |
| 사 | 업 수 익 | 762,209 | 794,786 | △32,577 | △4.3 |
| 영 | 업 수 익 | 727,907 | 763,940 | △36,033 | △5.0 |
| | 사 용 료 수 익 | 677,540 | 708,017 | △30,477 | △4.5 |
| | 기 타 영 업 수 익 | 50,367 | 55,923 | △5,556 | △11.0 |
| 영 | 업 외 수 익 | 34,302 | 30,846 | 3,456 | 10.1 |
| | 이 자 수 익 | 3,500 | 2,341 | 1,159 | 33.1 |
| | 타 회 계 전 입 금 수 입 | 27,545 | 25,619 | 1,926 | 7.0 |
| | 기 타 영 입 외 수 익 | 3,257 | 2,886 | 371 | 11.4 |
| 자 | 본 적 수 입 | 124,191 | 70,622 | 53,569 | 43.1 |
| | 투 자 자 산 처 분 | 43,000 | - | 43,000 | 100.0 |
| | 예 탁 금 원 금 회 수 수 입 | 43,000 | - | 43,000 | 100.0 |
| 자 | 본 잉 여 금 수 입 | 60,063 | 45,664 | 14,399 | 24.0 |
| | 시 설 분 담 금 수 입 | 58,335 | 43,519 | 14,816 | 25.4 |
| | 타 회 계 건 설 보 조 금 수 입 | 147 | 86 | 61 | 41.5 |
| | 공 사 부 담 금 수 입 | 1,581 | 2,059 | △478 | △30.2 |
| 유 | 보 자 금 | 21,128 | 24,958 | △3,830 | △18.1 |
| | 순 세 계 잉 여 금 | - | - | - | - |
| | 미 수 금 | 21,128 | 24,958 | △3,830 | △18.1 |

주1)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은 “’23년도 예산액”과 “전년도당초예산액” 즉, ’22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액”을 표기하여 제출함

※ 자료근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 P.17~18 “수입예산 총괄표” 재구성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8,86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8,654억 800만원)보다 209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5,059억 9,900만원)보다 △7.4%, △346억 5,200만원 감액된 4,713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자본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3,594억 900만원)보다 13.4%, 556억 4,400만원 증액된 4,150억 5,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 공기업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1)사업예산은 10억원, (2)자본예산은 1억 6,7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122〉 2023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3 | | 2022(본예산 ^{주1)}) | | 증 감 | |
|---------------------|---------|-------|---------------------------|-------|---------|-------|
| | | % | | % | | % |
| 계 | 886,400 | 100.0 | 865,408 | 100.0 | 20,992 | 2.4 |
| 사업예산 | 471,347 | 53.2 | 505,999 | 58.5 | △34,652 | △7.4 |
| 깨끗한 물 관리 | 0 | 0.0 | 115 | 0.0 | △115 | - |
| 하수 시설 관리 | 89,565 | 10.1 | 129,048 | 14.9 | △39,483 | △44.1 |
| 물 재생 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 | 173,589 | 19.6 | 168,194 | 19.4 | 5,395 | 3.1 |
| 중량물 재생 센터 운영 관리(사업) | 96,139 | 10.8 | 96,190 | 11.1 | △51 | △0.1 |
| 난지물 재생 센터 운영 관리(사업) | 55,713 | 6.3 | 57,291 | 6.6 | △1,578 | △2.8 |
| 행정 운영 경비(물 재생 계획과) | 5,854 | 0.7 | 5,513 | 0.6 | 341 | 5.8 |
| 행정 운영 경비(물 재생 시설과) | 65 | 0.0 | 65 | 0.0 | 0 | 0.0 |
| 행정 운영 경비(중량물 재생 센터) | 15,463 | 1.7 | 15,952 | 1.8 | △489 | △3.2 |
| 행정 운영 경비(난지물 재생 센터) | 11,959 | 1.3 | 11,431 | 1.3 | 528 | 4.4 |
| 재무 활동 | 22,000 | 2.5 | 21,200 | 2.4 | 800 | 3.6 |
| 예비비(사업) | 1,000 | 0.1 | 1,000 | 0.1 | 0 | 0.0 |
| 자본예산 | 415,053 | 46.8 | 359,409 | 41.5 | 55,644 | 13.4 |
| 깨끗한 물 관리(자본) | 0 | 0.0 | 1,600 | 0.2 | △1,600 | - |
| 하수 시설 관리(자본) | 295,427 | 33.3 | 233,821 | 27.0 | 61,606 | 20.9 |
| 물 재생 시설 개선 및 관리(자본) | 68,431 | 7.7 | 70,923 | 8.2 | △2,492 | △3.6 |
| 중량물 재생 센터 운영 관리(자본) | 13,241 | 1.5 | 11,820 | 1.4 | 1,421 | 10.7 |
| 난지물 재생 센터 운영 관리(자본) | 16,731 | 1.9 | 13,793 | 1.6 | 2,938 | 17.6 |
| 재무 활동 | 21,056 | 2.4 | 27,212 | 3.1 | △6,156 | △29.2 |
| 예비비(자본) | 167 | 0.0 | 240 | 0.0 | △73 | △43.7 |

주1)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은 “’23년도 예산액”과 “전년도당초예산액” 즉, ’22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액”을 표기하여 제출함

※ 자료근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서(안)」, P.19~64 “지출예산 총괄표” 재구성